발행일 : 2019년 9월
발행처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TEL) 032-835-2135, 2235, 2335
(FAX) 032-835-2935

※「인사실무 길라잡이」와「인사 법령」등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발간위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경찰

발 간 등 록 번 호
11-1532000-000023-10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발간 위원

담당자	분 야	연락처
총경 이영호	총 괄	032-835-2034
경정 우채명	인사기획	032-835-2135
경정 김주영	인사운영	032-835-2134
경감 이희철	인사제도	032-835-2235
경감 남병욱	경감 이상 인사	032-835-2234
경위 채수용	경위 이하 인사	032-835-2434
경위 장재호	포 상	032-835-2334
경위 김영규	인사법령	032-835-2335
경위 진수환	일반직 인사	032-835-2534
경사 이창민	인사제도	032-835-2435
경장 한상호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032-835-2734
7급 김혜정	호 봉	032-835-2834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경찰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발 간 사

백락일고(伯樂一顧) 라는 주(周)나라 때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명마(名馬)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AI, IoT, 드론, 로봇 등 스마트 기기의 일상화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혁이 일어나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고 전략적 인사관리(S-HRM)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 파출소, 구조대, 항공대 등 임무수행 현장중심의 전략적 인사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해양경찰의 핵심가치인 존중, 정의, 소통, 공감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함께 구성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존중·정의·소통·공감 실현

이번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임용, 전보, 승진, 신분보장 등 인사관리의 흐름과 해양경찰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인사 담당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개념과 절차, 최신 법령, 사례와 판례 및 Q&A까지 풍부하게 수록하여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만 활용하여도 인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인사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인사실무 길라잡이'를 발전 ·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로 인사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인사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로운 해양경찰 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조현배

해양경찰 인사실무 길라잡이

CONTENTS

1장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7

제1절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구분 • 9
제2절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 11

2장 | 임 용 • 15

제1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 17
제2절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 29

3장 | 보직관리 및 전보 • 55

제1절 보직관리 일반 • 57
제2절 특정 직위 및 기관별 보직관리 • 60
제3절 원소속 교류인사 • 65
제4절 원소속 복귀 • 75
제5절 소속기관 내 전보 • 78
제6절 경력경쟁채용자 전보 • 81
제7절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 83
제8절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 • 88

4장 | 인사관리 • 97

제1절 인력관리계획 • 99
제2절 파 견 • 101
제3절 직무대리 • 105
제4절 시간선택제공무원 • 110
제5절 결원보충 및 업무대행 • 112
제6절 대우공무원 • 116
제7절 직위공모 • 121
제8절 인사감사 • 123

5장 | 평 정 • 151

제1절 근무성적 평정 • 153
제2절 경력 평정 • 161
제3절 가점 평정 • 167
제4절 총경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 172

6장 | 승 진 • 203

제1절 승진제도 일반 • 205
제2절 심사승진 • 214
제3절 시험승진 • 220
제4절 특별승진 • 224
제5절 근속승진 • 229

7장 | 포 상 • 251

제1절 공무원 포상 • 253
제2절 퇴직공무원 포상(정부포상) • 265
제3절 모범공무원 • 270
제4절 기 장 • 272
제5절 특별승급 • 274
제6절 상벌상계(발령) • 278

8장 | 보 수 • 303

제1절 보수제도 • 305
제2절 호 봉 • 307
제3절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 324

9장 | 신분 및 권익보장 • 345

제1절 휴 직 • 347
제2절 직위해제 • 355
제3절 면 직 • 360
제4절 명예퇴직 • 368
제5절 고충처리 • 376

제 1 장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1절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구분 • 9
제2절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 11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구분

01 국가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

경력직	일반직(행정·기술·관리운영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전문직)
	특정직(경찰, 검사, 소방, 군인, 법관, 국가정보원직원 등)
특수경력직	정무직(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별정직(국회 수석전문위원, 장관정책보좌관 등)

-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다만,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및 별정직
  - 정무직공무원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으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0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행정·기술·관리운영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각 직군·직별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1급 ~ 9급 다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및 3급 ~ 9급으로 구분

직군	직렬	직류	계급 ·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일반 행정	부 이사관	서기관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기술	해양 수산	일반 해양		기술 서기관	해양 수산 사무관	해양 수산 주사	해양 수산 주사보	해양 수산 서기	해양 수산 서기보
관리 운영	전화 상담 운영	전화 상담 운영	-	-	-	전화상담 운영주사	전화상담 운영 주사보	전화상담 운영서기	전화상담 운영 서기보

▸ 우정직

-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해 계급·직군·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2에 따라 우정1급 ~ 우정9급으로 구분

▸ 연구직

- 기록연구 · 해양수산연구 · 환경연구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구관 · 연구사)

▸ 지도직

- 농촌 · 어촌지도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도관 · 지도사)

▸ 전문직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수석전문관 · 전문관)

▸ 전문경력관

-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하고,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 나군 · 다군으로 구분

임기제공무원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 2013. 12월 폐지된 계약직공무원이 대부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

▸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직위 명칭 사용 가능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외부에서 임용되는 경우) 또는 책임운영기관장(해양경찰정비창장)이 임기직공무원에 해당

관련 Q & A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양자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02 특정직 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 신분보장 ·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 직원·경호공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 계급,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국가공무원법의 특례법)으로 규정

• 단, 개별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파견근무, 제7장 복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직공무원의 분류 및 개별법

구 분	분 류	개별법
법 관	•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법원조직법제4조, 제5조
검 사	• 검찰총장-검사	검찰청법 제6조
외 무 공무원	• 고위외무공무원(공사급 이상 직위) • 외무공무원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로 구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 직위는 직렬 미구분	외무공무원법 제2조
경 찰 공무원	•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경찰공무원법 제2조
소 방 공무원	•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법 제2조
교 육 공무원	• 교 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장(원장), 교감(원감), 수석교사, 교사 - 대학: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 장학관, 장학사 •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군 인	• 장 교: 장성(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 • 준사관: 준위 • 부사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인사법 제3조
군무원	• 일반군무원: 1~9급	군무원인사법 제3조
국가정보원 직 원	• 특정직 직원: 1~9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경 호 공무원	• 경호공무원: 1~9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2 장

임 용

제1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 17
제2절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 29

경찰공무원의 임용

01 임용권자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임용권의 위임)

임용의 의의

-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전보 · 겸임 · 파견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말함

용어의 정의

- "임용"이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전보 · 겸임 · 파견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
- "전보"란 동일한 직급 · 직렬 내에서의 보직 변경, 즉 직무의 성격이 같은 동일한 직급 내의 인사이동
- "복직"이란 휴직 ·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임용권자

- 총경 이상 : 대통령
  - 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다만, 총경의 전보 · 휴직 · 직위해제 · 강등 · 정직 및 복직은 해양경찰청장
- 경정 이하 : 해양경찰청장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함

▶ 임용(효력발생) 시기

-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 단,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간주
-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특례가 인정됨

임용시기의 특례

-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로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에,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는 퇴직일 전 날에 임용된 것으로 봄
-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에 복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봄
-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 시보임용된 것으로 봄

임용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교육원장

- 경정의 전보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경감 이하 임용권

▶ 해양경찰서장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경감 이하 전보에 관한 권한
- 경사 이하 승진임용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해양경찰정비창장

- 경정의 전보에 관한 권한
- 경감 이하 임용권

▶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경감 이하 전보에 관한 권한

유의사항

▶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청장, 교육원장, 중특단장 및 정비창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서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02 임용결격사유

목적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자질에 흠결이 있거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담임의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정한 사유를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의 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후견등기된 사람을 의미(「민법」 제9조)
  -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후견등기된 사람을 의미(「민법」 제12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하여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종료 심판을 하며, 후견 종료 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소멸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법 제60조) 공무원 임용자격을 회복함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03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 계획수립 목적
  - 매년 말 다음 연도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년, 명예퇴직 및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적기 충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기본방침
  - 공개경쟁채용 원칙
  - 특수기술보유자, 직무 관련 자격증소지자 등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
  - 신규인력 충원은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범위 내에서 성적순 임용
- 충원수요판단(기준일 12. 31)

결원요소	+	충원요소	=	총 소요인원
- 12.31 현재 결원 - 명예퇴직(월평균) - 정년퇴직 - 자연감소(월평균) - 정원증원요소		- 선발예정인원 - 現교육인원 (전년도 충원계획)		※ 결원·충원요소 고려기간 : 해당 연도 1.1~ 다음 연도12.31

공개경쟁채용

-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장 채용시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시험 과목)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5장 채용시험

➤ 공개경쟁채용 구분

- 일반순경

– 채용인원 : 인력충원계획 의거 결정
– 모집시기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분할 모집·입교
– 임용시기 : 결원시 성적순 임용
– 배　　치 : 임용과 동시에 순환근무(3년 이내 함정 및 육상 각 1년 이상)

- 간부후보생

– 채용인원 : 인력충원계획 의거 결정
– 임용시기 : 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
– 배　　치 : 임용과 동시에 순환근무(함정 1년, 파출소 1년 포함 육상 2년)

경력경쟁채용

➤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경력경쟁채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38조(경력경쟁채용등)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및 시험방법(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

경력경쟁채용요건		시험방법	채용분야
퇴직자 재임용	1호	서류전형·면접시험, (필기·실기 병과 가능)	모든 분야
임용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2호	서류전형·면접시험, (필기·실기 병과 가능)	변호사, 해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등,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연구실적 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3호	서류전형·필기 또는 실기·면접시험	특수기술부문, 해양경찰학과 등
5급 공채시험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	4호	서류전형·필기·면접	고시출신
외국어에 능통한 자	7호	서류전형·필기 또는 실기·면접시험	영어, 중국어, 일어, 노어, 베트남어

▶ 채용절차

① 충원계획 수립시 경채인원·분야반영	② 경력경쟁 채용시험실시	③ 신임교육	④ 임용
기능별 소요인력 파악	본청 인재선발	교육원	인사부서

채용후보자 명부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9조(채용후보자명부 등)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채용후보자 등록)

▶ 작성대상

-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경찰간부후보생 포함)

▶ 작성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유효기간

- 2년(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9조제4항)

작성방법

- 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관련 Q & A

채용시험에 요구되는 자격증을 허위로 변조 제출한 자의 인사처리는?

-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인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원인무효인 행정행위로서 임용을 취소하여야 함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의 인사처리는?

- 응시자가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 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대판 '92.12.24, 92누6112)

공무원 임용결격자의 임용취소는?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임용당시 시행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 또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음(대판 '87. 4.14, 86누 459)

▶ 채용후보자 등록절차

-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 2-1)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

〈첨부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명부(서식 2-2)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등록필증(서식 2-3, 교육훈련통지서로 갈음 가능)을 본인에게 송부
- 채용후보자가 경찰공무원법 제7조 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

04 시보임용 및 정규임용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정규임용심사)

▶ 인사담당관-7939(2018.12.26)호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시보임용제도

▶ 채용후보자로 하여금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 실무를 익히게 하는 한편 직무담당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채용후보자를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하는 것

▶ 따라서 시보기간에 근무하는 채용후보자는 아직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

시보임용 대상 및 기간

- 대 상 : 경정 이하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예 외〉

-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 기 간 : 1년

- 시보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 단,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미 산입

시보임용 기간 중의 신분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 가능
  - 면직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분보장 규정 일부 적용(휴직·직위해제·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가능
- 승진임용제한 :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승진 제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가능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관리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 심사 강화

1차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2차 지방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근무실적·직무수행 태도 평가표 상사·동료평가표, 임용제청 조서 작성	면직권한이 있는 지방청에서 정규임용여부 최종 결정

- 경찰서는 ①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표, ②소속상사 및 동료평가표 ③시보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자료에 대한 1차 심의
- 지방청은 2차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서에서 제출한 심사자료 및 징계사유 등 정규임용의 적부를 심사한 후 정규임용여부를 최종 결정
- 본청 소속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경우 해당 국에서 1차 정규임용심사자료 심의회 개최 후 인사부서에 자료 제출(시보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조서 등)

정규임용 절차

① 시보임용 및 배치	② 정규임용심사 자료심의회	③ 정규임용심사 위원회	④ 정규임용 또는 직권면직
대상 : 경정 이하 신규채용자 (간후보 제외) 시보기간 : 1년	근무실적·직무 수행태도 평가 상사·동료평가표 임용제청 조서	임용권자 소속에 설치 정규임용여부 최종 결정	정규임용심사위 심사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 또는 면직

▶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심사자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이 배치된 경찰기관장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를 둠
- 위원장(과장급)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심의회 위원(위원장 포함)에는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정규임용의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둠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함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규임용심사 시 고려사항

-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표(서식 2-6)
- 시보경찰공무원 동료의 평가표(서식 2-7) 및 소속상사의 소견서(서식 2-8)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해당여부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갑질,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해당여부

  -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정규임용의 시기

- 시보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임용

시보면직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직권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면직제청이 가능
- 면직 시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 준용

관련 Q & A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도 「경찰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보제도는 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그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특칙이며, 시보 공무원이라 하여 경찰공무원법상 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05 관련 서식

- (서식 2-1) 채용후보자등록원서
- (서식 2-2) 채용후보자명부
- (서식 2-3) 채용후보자등록필증
- (서식 2-4)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서식 2-5)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조서
- (서식 2-6)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표
- (서식 2-7)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동료평가표
- (서식 2-8)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소속상사 소견서
- (서식 2-9) 시보임용경찰공무원 감찰조사서
- (서식 2-10)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계획
- (서식 2-11)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서식 2-12)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 의결서
- (서식 2-13) 정규임용 발령(을)
- (서식 2-14) 정규임용 심사조서

제 2 절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01 임용권자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 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자

-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 대통령
  - 해양경찰청장(추천) → 해양수산부장관(제청) → 인사혁신처장 협의 → 국무총리 → 대통령
  - 단, 전보 · 휴직 · 직위해제 · 강등 · 정직 및 복직은 해양경찰청장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임용

임용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다만,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장관 상호간 · 보조기관 상호간 ·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임용의 원칙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 임용(효력발생) 시기
  - 임용장 및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됨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까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

임용시기의 특례

-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로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에,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는 퇴직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봄
-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에 복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직권면직시키는 경우
-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 시보임용된 것으로 봄

관련 Q & A

임기제공무원 임용일의 소급변경이 가능한지?

「공무원임용령」 제6조에서는 공무원 임용일자의 소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이는 공무원 관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공무원 임용일자의 소급을 인정하는 경우 소급 임용일자를 언제로 지정할지 여부, 근무여부를 증빙하는 방법, 수익적 임용행위의 소급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음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시기 소급여부?

- 시보기간 단축사항이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될 경우 시보공무원의 임용기간을 단축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 ▸ 정규공무원 발령 후 시보임용 단축기간을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단축 기간을 반영하여 정규임용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공무원임용령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함(대판 '85.12.24, 85누531)

02
임용결격사유

결격사유의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등기된 사람을 의미(민법 제9조)
  -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등기된 사람을 의미(민법 제12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하여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종료 심판을 하며, 후견 종료 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소멸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형법 제60조) 공무원 임용자격을 회복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9.4.17. 시행)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 Q & A

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 또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다만,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 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봄)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이 경우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자을 말함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일반사면 된 경우에 응시가 가능한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자가 응시제한 기간 중에 일반사면을 받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자격정지 선고유예" 판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보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란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유예된 경우라면 설사 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볼 수 없음

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 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 중 제5호 규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받은 경우"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판결의 확정시기는 상소제기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하급심의 판결은 상소기간 등이 도과된 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 따라서, 1심에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상고기간(항소심 판결이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고기간 도과일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선고일이 각각 그 선고유예 기간의 기산점이 됨

관련 판례

공무원 임용결격자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관계는 법 제38조, 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 국가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
-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음 (대판 '87.4.14, 86누459)

충원계획 수립

계획수립 목적

- 매년 말 다음 연도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년, 명예퇴직 및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적기 충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기본방침

- 공개경쟁채용 원칙
- 특수기술보유자, 직무 관련 자격증소지자 등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
- 신규인력 충원은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범위 내에서 성적순 임용

충원수요판단(기준일 12. 31)

결원요소	−	충원요소	=	총 소요인원
- 12.31 현재 결원 - 명예퇴직(월평균) - 정년퇴직 - 자연감소(월평균) - 정원증원요소		- 선발예정인원 - 現교육인원 (전년도 충원계획)		※ 결원·충원요소 고려기간 : 해당 연도 1.1~ 다음 연도12.31

공개경쟁채용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5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25조

시험의 종류

- 5급 공채 : 행정, 해양수산 등 주요 직렬
- 7·9급 공채 : 행정, 해양수산 등 주요 직렬

경력경쟁채용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신규채용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요건

경력경쟁채용등시험 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또는 장기요양 후 휴직기간만료로 퇴직한 자를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5년 이내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호
- 임용예정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2호
㉮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호
- 특수학교 졸업자	4호
-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임용	5호
-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근무 근무예정자	6호
- 지방직→국가직	7호
- 외국어능통자	8호
- 전문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9호
-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 국비장학생 ㉯ 지역인재추천채용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	11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限地)채용	12호
㉮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중 2호·3호·10호 요건자 채용	13호

※ 2호·6호·8호·9호·10호 내지 12호 및 13호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다수인 경쟁) 실시

채용절차

① 충원계획 수립시 경채인원·분야반영	② 경력경쟁 채용시험실시	③ 신임교육	④ 임용
기능별 소요인력 파악	본청 인재선발	교육원	인사부서

채용후보자명부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 공무원임용령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등록

-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채용후보자 등록절차

-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 2-1)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

〈첨부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명부(서식 2-2)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등록필증(서식 2-3, 교육훈련통지서로 갈음 가능)을 본인에게 송부
-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

유효기간

-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 2년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시 명부 유효기간을 1년 연장 가능(연장시 공고)

공채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이수자 포함)의 의무복무 기간은 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작성방법

- 임용예정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 교육훈련 불응, 교육훈련 수료 점수 미달,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유 이외로 퇴교처분, 채용후보자 품위 크게 손상

※ 채용후보자 품위 손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의결 필요

관련 Q & A

채용시험에 요구되는 자격증을 허위로 변조 제출한 자의 인사처리는?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인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응시작격을 갖춘 후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원인무효인 행정행위로서 임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증 위조행위는 임용취소와는 별도로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04 시보임용 및 정규임용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보임용)
- 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시보임용)

대상 및 기간

- 5급 : 1년
-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2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 1년
- 전문경력관 가군 : 1년
-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6월

- 시보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 단,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미 산입

시보임용기간 중의 신분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및 제70조(직권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가능
- 면직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의결을 거쳐야 함
- 신분보장규정 일부 적용(휴직·직위해제·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가능
- 승진임용제한: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승진 제한

정규임용심사 등

-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 임용권자가 정한 공무원 5~8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실시
-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면직(제청) 가능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국가공무원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정규임용의 시기는 시보임용 기간이 경과한 날. 즉,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단 축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 면 제
  - 시보임용기간(연구·지도직공무원에 한함)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 정규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자(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 수습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서식 2-1

채용후보자등록원서

※등록번호	채용후보자등록원서	④응시횟수	제 회
제 회 번		응시번호	번
		응시계급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성별	※입교통지연월일	※등록유효기간	※등록정리		
(한글) (한자)	19 . . . (만 세)	남□ 여□	1. 2.	20 . . .	심사	대조	등재
				※연장기간			
			※임명연월일	20 . .~20 . . .	(인)	(인)	(인)
			20 . . .	20 . .~20 . . .			

⑤ 현주소			
			30㎜ / 40㎜ (사진)
⑥병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⑦학력			
부터	까지	학교	전공·부분·과목

⑧자격·면허		⑨상벌	
연월일	종별	연월일	사항

⑩특기	⑪취미	⑫운동	⑬종교

⑭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⑮재산사항	〈가〉부동산	원	〈나〉동산	원

〈16〉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명	직업	현주소

〈17〉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최종학력	비고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해양경찰청장 확인사항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신체검사서 4.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의 해양경찰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2

채용후보자명부

등록번호	성 명	현 주 소	최종학교명	병역관계		입교여부	임명연월일	임용부서
				군 별	전역구분			

서식 2-3

채용후보자등록필증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번호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0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구성) ① 시보경찰공무원이 소속된 경찰기관장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심사자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 위원(위원장 포함)에는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평가서류를 근거로 정규임용 적격여부 등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보경찰공무원임용제청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근무실적 평가는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속상사가 한다.

② 소속상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객관적인 직무수행 태도 평가를 위해 시보경찰공무원과 실제 접촉이 많은 상사·동료로 5인 이상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상사의 소견 작성)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소속 상사의 소견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과장, 파출소장, 함·정장)이 작성한다.

② 소속상사는 제5조 평가서류와 동료의 여론·사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보경찰관의 정규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소견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정비창에 둔다.

② 시보경찰관 정규임용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조서
2. 시보경찰공무원이 소속된 경찰기관 감찰부서에서 작성한 감찰조사서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에는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정규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직권면직사유의 적용)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임용령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등 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시보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하거나 면직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2-5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조서

소 속		계 급		성 명	
임용일		생년월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 관련					
※신임교육훈련성적		제2평정요소 평정점			
징계사유해당여부					
경찰공무원법 제22조·임용령 제47조·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임용령 제47조 제1항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 여부				
	성실성 결여 및 직무수행 기피·포기 여부				
임용령 제47조 제2항	인격장애 및 정신장애 여부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 여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호	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				
시행규칙 제10조제 1항제4호	소속상사의 소견				
임용적부 의 견					
별첨서류	1.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표 2. 동료평가표 3. 상사소견서 4. 감찰조사서 5. 기타 관련 서류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위원회 위원장 경○ 홍 길 동(확인) 년 월 일 ○ ○ 해 양 경 찰 서 장(확인)					

서식 2-6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표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 등급		
			상	중	하
근무실적	기본근무 이행실태				
	구조 실적				
	단속 실적				
직무수행 태도 ※동료평가 결과참고	도 덕 성 (청 렴 성)				
	성 실 성 (친 절 도)				
	협 동 성				
	책 임 감				
종합의견		※ 판단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견을 명확히 표시			

작성자 ○○과장(파출소장, 함·정장) 경○ 성명 ○ ○ ○ (확인)

서식 2-7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동료평가표

평 가 자	
소 속	
계 급	
성 명	

피 평 가 자	
소 속	
계 급	
성 명	

항 목	질 문	평가등급		
		상	중	하
도덕성 (청렴성)	피평가자는 업무수행 중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않고 경찰관으로서 청렴한 도덕성을 견지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성실성	업무수행 중 국민·직원에게 친절하며 국민·조직을 위한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가?			
협동성	함께 근무하면서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동료나 조직전체의 업무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책임감	직무상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회피┌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가?			
종합의견	※ 평가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 구체적으로 적시			

서식 2-8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소속상사 소견서

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임용일			생년월일			
업무수행 능　　력	1.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2.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해하고 해결하며 판단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뛰어난가 3. 맡겨진 업무를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하는가 4.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기계발 노력을 하는가 5. 비난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며 자기감정을 절제하는가					
업무수행 태　　도	1.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않는 등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가 2. 정직하고 친절한 태도로 국민과 직원을 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가 3. 상사·동료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는가 4. 조직의 비전·발전방향·정책 등을 수용하고 지지하는가 5. 맡은 직무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가					
기　　타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등 정신장애나 성격적 결함은 없는가 2.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으로 타인의 비난을 받는가 (기타 불법다단계, 경마·경륜 등 사행성 도박, 사이비 종교 심취 등) 3. 기타 사생활의 문제는 없는가(가정불화, 이성문제, 건강 등)					
종합소견	※ 임용적격 여부를 명확히 기재					

작성자 ○○과장(파출소장, 함·정장) 경○　　성명 ○ ○ ○ (확인)

※ 소견서 각 항목에 탁월·우수·보통·불량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항목별 제시 문항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례 및 사실위주로 작성할 것

서식 2-9

시보임용경찰공무원 감찰조사서

●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연 령		시보임용일	

● 평가항목

징계처분 내역	- 징 계 : - 처 분 일 : - 처분기간 : - 직위해제 기간 :
징계사유 및 내용 (상세히 기술)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소견	
평 가 자 (감찰담당)	소속 계급 성명 (인)

서식 2-10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계획

'00. 00. 00자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년 동안 근무실적 · 직무수행 태도 · 근무성적 · 교육성적 · 징계 처분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00.0.00자)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정규임용심사』

심사대상 : 1명

소속	계급	성명	교육성적	근무성적	징계	휴직	비고

심사내용

-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 시보임용기간 중 휴직 ·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사유 해당여부 확인
- 교육훈련성적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인 경우
- 근무성적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
- 지능 저하, 판단력 부족, 책임감 결여 등 직권면직사유 해당여부
- 소속 상사의 소견, 동료평가 및 감찰조사내용

위원회 구성 개최

- 일시 및 장소 : 0000.0.00( ) 00:00~ ,위원장실
- 심사위원 구성 : 위원장 등 5명『위원장1(총경급), 위원4(경정급)』

서식 2-11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수 신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제 목 :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시보임용 경찰관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 0000.0.00( ) 00:00 ~ 00:00

2. 장 소 : 위원장실

3. 참 석 : 위원장 00 0 0 0 등 6명

4. 심의대상 : 경찰관 0명(순경)

소속	계급	성명	교육성적	근무성적	징계	휴직	비고

5. 심의결과

● 가결 : 0명『경찰공무원 정규임용 결격사유 없으므로 정규임용 의결』

서식 1.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의결서 1부

2.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기준 1부. 끝.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위원장 총경 0 0 0 (인)

서식 2-12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계획

일 시	0000.0.0( ) 00:00 ~ 00:00	장 소	위원장실
의 안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개최		
토의내용 요 지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소속 상사 의견 등 정규임용 심사조사서 종합 검토 정규임용 여부 결정		
의결내용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사대상 : 0명 ● 심의결과 - 가결 : 0명(00서 순경 000 등 00명)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결격사유 없으므로 정규임용 의결함』 ● 임용일자 : 0000.0.00자.		
이견내용	없 음		

참석대상	명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서 명
참 석 자	명					
불 참 자	명					
불참내역						

서식 2-13

정규임용 발령(을)

연번	소 속	계급	성 명	발령일자

서식 2-14

정규임용 심사조서

연번	소속	계급	직별	성 명	경찰 배명	교육 성적	근무성적 제2평정 요 소	징계	종 합 평 가 의 견 요 약			심사 결과	비 고
									상 사 · 동 료 평 가 서	현장지도 책 임 자 관찰지도 카 드	감 찰 조 사 서		

제 3 장

보직관리 및 전보

제1절 보직관리 일반 • 57
제2절 특정 직위 및 기관별 보직관리 • 60
제3절 원소속 교류인사 • 65
제4절 원소속 복귀 • 75
제5절 소속기관 내 전보 • 78
제6절 경력경쟁채용자 전보 • 81
제7절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 83
제8절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 • 88

제 1 절

보직관리 일반

01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장 보직관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장 보직관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3장 보직 등

02 기본 원칙

-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채용분야 · 경과 · 특기 · 적성 · 교육훈련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직 없이 근무 가능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이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 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 · 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직제의 신설 · 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상위 계급의 직위에 하위 계급인 사람을 보직 가능
-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의 상위 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함

▶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 · 직별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음

03 전보 일반

전보의 원칙

▶ 안정적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을 유지하고,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승진 후 정기전보 실시
- 다만, 신규임용 경찰공무원의 배치, 결원 보충 및 직제 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 실시 가능

▶ 전보의 제한

▶ (원 칙)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 감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수 없고, 이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예 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 가능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2.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등 또는 소속기관 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
5.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품위손상 비위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 진행 중 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
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1. 고충처리를 위한 경우
2.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 례) 다음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보 금지

-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은 현재 관서 전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같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양육하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음

※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인희망·고충처리에 의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 및 원소속 내 순환전보는 가능함

특정 직위 및 기관별 보직관리

01 해양경찰서장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해양경찰서장 보직기준)

보직 기준

- 업무성과, 조직 기여도 및 서장 보직 이외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청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
  - 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는 해당 서장 보직에 대한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단,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서장으로 보직할 수 없음
- 서장의 보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조정 가능
  - 해상에서의 재난 등 특수한 치안상황 발생한 경우
  - 서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해당 관서 관리역량이 특별히 우수하여 보직 연장이 필요한 경우

02 함장 · 정장 보직기준

(원 칙) 자격조건 + 경력조건 모두 충족

- 자격조건
  - 대형함 : 해기사 4급 이상 보유자
  - 대형함 이외의 함정 : 해기사 5급 이상 보유자

- 경력조건
  - 대형함 : 소형정(100톤)의 정장, 중형함의 함장 또는 대형함의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형함 : 소형정의 정장 또는 중형함 이상의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형정 : 함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예 외)

- 경력기준 미달로 해당자가 없거나, 소속기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장 또는 정장 보직 가능

03 교육원 교수요원 보직기준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

- 추천권자 : 해양경찰교육원장
- 추천대상(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제1항)
  -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사격 · 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 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미경과자
- 보직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단, 기구의 개편, 직제 · 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 교수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된 자를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

보직 절차

-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함
- 교수요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정분야에 경력채용자를 우선 보직
- 교육원장이 발령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 보직

04 본청 보직기준

경정의 보직기준

- 본청의 경정 직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
  - 경정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경감 이하의 계급으로 본청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서 2년 이상 해당 본청 직위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함정 또는 파출소에서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사람

    ※ 단, 경정으로 신규임용된 자가 함정 순환보직을 마친 경우 본청 직위에 보직 가능
- 본청 경정 직위에 연속하여 6년 이상 근무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

  ※ 국외훈련·파견 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
- 본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경정 승후 포함)은 본청 외로 전보

  ※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청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05 소속기관 보직기준

경정의 보직기준

- 소속기관의 경정 전보·보직은 각 지방청 주관으로 시행
  - 지방청 간 전보 대상자는 본청에서 각 지방청에 배정
- 함장·지방청 계장 및 경찰서 과장에 교차로 보직(순차 보직은 아님)
  - 경찰서 과장은 경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보직
  - 정년이 임박(1년 이내)한 자는 지방청 소속 수사정보, 장비사업 분야 및 경찰서 수사·정보 직위에 보직할 수 없음

- 지방청 내 선호·비선호 관서간 순환근무 실시
  - 선호·비선호 관서 근무기간과 희망지 등을 감안하여 순환보직 실시
  - 現 소속기관 2년 연속 근무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타 기관으로 전보 원칙

    ※ 보직기간 산정 시 現 관서 내에서의 과·계장 또는 함장 등 근무기간은 합산
- 경력 및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경정' 기간 중 경비 (함정 포함) · 상황 · 구조안전 분야 직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직

경감의 보직기준

- 소속기관 경감 이하의 전보·보직은 각 지방청 주관으로 시행

  ※ 지방청 간 전보대상자는 본청에서 총괄하여 파악 및 각 지방청에 배정
- 지방청 내 관서별 순환전보는 장기근무자, 승진자 등을 고려하여 순환전보
- 분야별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 실시
  - (감사/감찰반장 · 청문감사계장) 타의 모범이 되는 역량 있는자 배치
  - (중형함장) 자격 충족자 및 각 해역별 경험자 우선 보직
  - (상황부서) 함정 또는 파출장소 등 현장부서 2년 이상 경험자 우선 보직
  - (수사부서)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

경위 이하의 보직기준

- 기관별 인사운영 여건을 감안한 순환보직·전보 원칙 마련 및 시행
  - 파·출장소–함정–사무실 간, 선호–비선호부서 간 원활한 순환전보를 통해 인사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 부서별 연속 근무기간(사무실 4년, 파·출장소 2년, 함정 2년) 초과 금지

    ※ 해·육상 인력불균형 등으로 순환보직 곤란 시,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 규정 가능

    ※ 신임경찰관은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을 위해 순환근무 준수하되, 순환보직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경력채용된 경우는 예외 가능
  -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채용분야에 적합하게 보직
- 원칙적으로 내근(사무실) 부서 과원 금지 및 현장부서 결원 최소화
- 지방청장은 과·결원 및 인력균형 유지를 위해 소속기관 내 자체 교류인사

- 분야별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 실시
  - (소형정장) 자격 충족자 및 각 해역별 경험자 우선 보직
  - (상황부서) 함정 또는 파·출장소 등 현장부서 2년 이상 근무경험자를 보직
  - (특임경과) 원칙적으로 해양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 파출소,함정 등 우선 배치

    ※사무실 배치 시 업무 관련성을 고려 보직
  - (구조요원)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자체 구조대원 양성과정수료자를 파출소, 소형정 등 구조현장에 최우선 배치
  - (수사부서) 수사경과자 우선 배치
-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전보기준에 적합한 자체 인사 기준을 수립 · 시행

  ※ 특히, 파·출장소-함정-사무실 간 및 선호-비선호부서 간 순환전보 기준 마련

원소속 교류인사

01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교류인사 실시)

02 신규임용 경찰공무원 원소속 지정

- 원소속 지정 시 고려사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
- 원소속서 지정 인력의 규모
- 본인의 근무희망지
-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소속 署	지원 署	원소속 署	지원 署
속 초	중부 · 서해지방청	여 수	중부 · 제주지방청
동 해		완 도	
울 진		목 포	
포 항		부 안	
울 산	중부 · 제주지방청	군 산	
부 산		인 천	동해 · 서해지방청
창 원		평 택	
통 영		태 안	
제 주	서해 · 남해지방청	보 령	

※ 충원 받은 지방청장은 소속 관서별 정 · 현원, 연령, 직무 등 감안 배치 운영

관련 Q & A

임용시 신임 경찰관에게 모두 원하는 원소속을 주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원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안 되는지?

'명목상 원소속'을 부여하는 것은 교류인사 신청 후 TO 발생시 원소속에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근무지 원소속과 대기 원소속 등 2개 원소속 관리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

신임순경 원소속 강제배분은 기존 직원에 비해 불공평하고, 한번 부여받은 원소속에서 평생 근무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지?

원소속 시행 이전에도 신임순경은 주로 결원서에 배치하였고, 교류인사 등을 통해 원소속을 원하는 署로 변경하여 근무 가능하며, 과거 대비 관서별 장기 근무가 가능함

03 원소속 변경

원소속 교류인사를 통하여 원소속 변경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방제분야)을 대상

원소속 변경 가능 사유

- 본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
  ※ 다만, 본청 근무로 원소속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1회로 제한
-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입하는 사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음

관련 Q & A

A경찰서 소속 대형함정이 B경찰서로 편제발령된 경우, 함정승조원 전원의 원소속이 B경찰서로 변경되는 것인지?

- '함정편제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자'란 경비함정 소속 변경 등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때를 말함
- A경찰서 경비함정이 B경찰서로 소속이 변동된 경우, A경찰서 정원은 그 만큼 줄고 B경찰서 정원은 늘게 되어 인력 변동이 생기게 되며, 이 때 B경찰서 근무희망자에 한하여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음

신조함정이 '갑'지방청 A경찰서로 배치될 경우, '을'지방청 B경찰서 원소속 직원이 신조함정에 근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신조함정은 해당 경찰서 원소속 자원이 배치되고, 부족할 경우 관할 지방청 인력으로 충원됨
- 단, A경찰서가 과원서가 아닌 경우 B경찰서 직원의 원소속을 A경찰서로 변경하여 신조함정에 근무하는 것은 가능

교류인사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언제 원소속이 변경되는지?

- 교류인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희망한 관서로 발령된 시점에 원소속 변경

과원서 원소속 경찰관이 결원서에 장기 근무할 경우 원소속으로 강제 복귀되는지?

- 원소속 복귀가 가능함에도 5년 동안 결원서에 잔류할 경우 사실상 2곳의 원소속을 가지게 되어 인사질서 확립 필요
- ①현재 근무 중인 결원서로 원소속을 변경하거나, ②원소속 경찰서로 강제 복귀하는 것 중 개인 의견을 반영하여 택일

원소속서 복귀가 가능한 시점에도 복귀를 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강제로 변경되나요?

- 인사규칙 25조제2항에 따라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권으로 현재 근무지로 원소속을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음
- 원소속이 도입된 '09년 6월부터 원소속서가 아닌 타 관서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 복귀 가능 시점을 '11. 1월 정기인사로 보고 5년이 경과된 '16년 1월 정기인사 시 직권 조정이 가능함

A결원서 원소속을 가진 경찰관이 B과원서에 5년 이상 잔류 시 B과원서로 원소속이 변경될 수 있는지?

- 현재 근무 경찰서가 과원서인 경우, 원소속인 A경찰서로 강제 복귀 조치됨

교류인사 종류

▸ 정기 교류인사

- 매년 연말 작성하는 순위명부를 기준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전출·입 희망자에 따라 기관별 인력 사정을 감안하여 교류인사 실시

▸ 특별 교류인사

- 정기 교류인사 이외에 징계처분자 및 조직의 침체, 대국민 부정적 여론, 특수한 치안수요 발생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

교류인사 절차

① 교류인사 수요조사 → ② 순위명부 작성 → ③ 자료 검증 →
④ 교류인사위원회 개최 → ⑤ 교류인사 대상자 확정 → ⑥ 전환 배치

순위명부 작성

▸ 시 기

- 매년 연말 기준,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류인사 순위 명부(서식 3-1) 작성

▸ 작성권자

- 지방청 간 교류인사 대상자 → 본청(인사운영팀)
- 지방청 내 경찰서 간 교류인사 대상자 → 각 지방청(기획운영계)

▸ 명부 순위

- 교류인사 전입배점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다만,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순위 변경 가능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 전입배점 = 제1평정요소(80점 ±10점) + 제2평정요소(20점)

- 제1평정요소(80점 ±10점)
  - 現 관서 근무기간(40점) : 현 근무 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 '09년 7월 이후 임용된 경찰관은 초임 배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원소속을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 신청 후 대기기간(40점) : 교류인사 신청 후 교류대상자 확정 시까지 대기월수에 따라 매월 1.0점씩 누적 가산

- 제2평정요소(20점)
  - 연 령(10점) : 조사기준일 현재 연령에 따라 점수 부여
    ※ 51세 이상 10점 / 50~41세 8점 / 40~31세 6점 / 30세 이하 4점
  - 재직기간(5점) : 조사기준일 현재 재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21년 이상 5점 / 16~20년 4점 / 11~15년 3점 / 6~10년 2점 / 5년 이하 1점
  - 부양가족(5점) : 조사기준일 현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6인 이상 5점 / 5인 4점 / 4인 3점 / 3인 2점 / 2인 1점

- 가·감점(±10점)
  - '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공무원 중 속초, 동해, 태안, 완도, 제주권 근무자(+5점) → 다만, 원소속을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의 교류인사 지원 시(+5점)
  - 원소속 변경 횟수에 따라 감점(1회 -5점, 2회 -7점, 3회 -10점)

관련 Q & A

'09. 6월 이후 임용 일부 경찰관은 초임지가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로 배치되었다가 최근에 원소속서로 복귀되었음. 이 경우 현재 관서 근무기간 산정 방식은?

- '09. 6월 이후 임용경찰관 중 원소속서가 아닌 곳으로 전환배치된 자는 강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전환 배치된 경찰서 근무기간도 현재 관서 경찰서 근무기간으로 모두 인정

경찰서 근무 중 정직 2월의 징계를 받고 2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는데, 현재 경찰서 근무기간 산정 시 이 기간은 포함되는지?

- 근무기간 산정 기준 시점은 現관서 전입 시이며 정직기간, 직위해제, 육아휴직, 병가,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예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발령과 함께 A경찰서로 2. 1일 발령받았으나, 실제 근무를 5. 1일부터 시작한 경우라 하더라고 현 경찰서 근무기간 산정은 2. 1일부터 계산

관련 Q & A

본청, 지방청, 교육원 및 정비창 근무자는 교류인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한 현 근무지가 원소속이 아니므로 현재 경찰서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본청, 지방청, 교육원 및 정비창 근무자는 원소속서와 동일지역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교류인사 전입배점 산정 시 원소속서 근무기간에는 포함됨

대기기간 산정 시 단위가 되는 '월(月)'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 해양경찰청 인사기록상 '근무 월(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15일 기준으로 절삭 또는 반올림 됨. 대기기간과 재직기간도 동일기준 적용
- 예를 들어, 근무 일수가 15일 이하는 '0개월'로, 16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하며, 일수에 상관없이 모든 월(月)을 동일하게 적용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이 교류인사를 신청할 경우 가점을 준다는데, 다자녀의 범위는?

- '19년도 기준,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인 자

부부경찰관의 경우 교류인사 시 혜택이 있는지?

- 다른 경찰관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원칙
- 따라서 각자의 전입배점, 희망관서의 대기자 등을 감안하여 교류인사를 신청해야 함

교류인사를 많이 할수록 감점을 준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 교류인사 전입배점표의 '원소속 변경 횟수'는 교류인사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원소속을 변경한 횟수를 의미하며, 교류인사를 신청했으나 교류인사 대상자 선정 전에 취소한 경우는 제외
- 단, 원소속을 최초로 부여받은 때는 1회로 산정하지 않음

연령을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조사기준일'이란?

- 교류인사 실시 전년도 12월 31일이 기준임

  예) '20년도 정기 교류인사는 기준일이 '19. 12. 31임

재직기간은 '년(年)' 단위로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 재직기간은 '월(月)'단위로 절사 원칙. 단, 11개월 16일 이상은 반올림하여 1년으로 산정
-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20년 11개월인 경우에는 '20년으로 산정하되, '20년 11개월 16일부터는 21년으로 계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기준일' 기준,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한하여 인정

교류인사 전입배점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①현 경찰서 근무기간 ②신청 후 대기기간, ③연령, ④ 재직기간, ⑤ 부양가족 순으로 순위 결정

관련 Q & A

부부공무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데 점수 계산 시 중복으로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부양가족을 1/2하여 점수를 산정하는지?

- 부부공무원 각자의 점수 계산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각각 인정

A결원서 원적지 신임순경이 결원인 B경찰서에 전환 배치된 경우, 원소속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근무지에서 교류인사 신청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원소속 근무자만 교류인사 신청 가능하나, 관서별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결원서인 경우 원소속 변경도 가능 → 원소속 현행화

외국어 경채자, 응급구조사, 함정정비, VTS요원 등도 교류인사 가능한지?

- 교류인사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교류인사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어 경채자는 해당 외국어 소요 관서로의 교류인사를 원칙으로 함. 즉 중국어는 서해·제주권, 일어는 동·남해권 등 관서별 인력수요 고려
- 또한 응급구조사, 함정정비, VTS요원 등 특수 직별·특기자는 특수 목적으로 채용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능의 의견을 들어 실시

정기 교류인사

- 인원 산정 : 관서별 과·결원율을 감안하여 인원 책정
- 대　상 : 최초 임용 후 3년 이상 원소속 근무 중인 자
- 제외 대상

교류인사 제외 대상

1.「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2. 휴직 중에 있는 사람(단, 정기전보 시 복직 예정자는 신청 가능)
3. 다른 부처 파견 또는 국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4.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단, 동일 지역 근무자는 신청 가능)
   본청-중부청 ⇒ 인천 / 동해청-동해특구대 ⇒ 동해 / 서해청-서해특구대 ⇒ 목포남해청-중특단(본단)-정비창 ⇒ 부산 / 제주청-서귀포 ⇒ 제주 / 교육원 ⇒ 여수
5. '17년 이후 채용 경찰관 중, 응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중인 사람

▶ 교류인사 방법(서식 3-3 참조)

-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의한 전출·입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동수 교류 원칙
- 지방청을 달리하는 교류인사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

'19년 본청 교류인사 선발기준

① 각 지방청 상호간 교류인사 희망인원 동수 교류, 지방청별 고득점 順 선발

② 선호관서에 결원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류인사 대기기간 및 감안 추가 선발

※ '19년 정기 교류인사시 창원(3년), 부산·울산(2년), 여수·통영(1년) 이상 대기자 중·고득점 順 선발(동일관서 교류인사 배점 순위 준수)

- 지방청 내 소속기관 간 교류인사는 '지방청장'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 교류인사 결과는 정기전보 시 반영
- 현 근무관서 기준 교류희망 관서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시행

관련 Q & A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1:1 원소속 변경이 가능한지?

- 불가함. 교류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

교류인사는 1:1 동수교류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선호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원적지 변경 가능성이 적어 교류인사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 1:1 동수라고 하여 반드시 같은 수만 교류인사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 승진, 퇴직 등 자연 감소분과 직제 개정에 의해서도 교류인사 실시 가능
- 또한, 후임 경찰관이 결원서로 계속 배치되면 선임 경찰관들은 희망관서로 교류인사 가능

원소속 경찰서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 원소속 변경없이 잠깐 다른 署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 불가함. 원소속 이외 경찰서 근무를 원할 경우 교류인사 등을 통하여 원소속을 변경한 후 가능
- 다만, 신조함정 배치 등 갑작스런 정원 증가로 인력수요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무 가능

교류인사 시 100명 결원서에서 50명 결원서로 교류인사가 되는지?

- 교류인사는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 단, 과원서의 경우에 결원서보다 진입 시기가 늦어질 것임

관련 Q & A

교류인사 대상자에 선정되면 원소속 변경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한 원소속 경찰서로 발령이 나는 건지?

- 교류인사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한 경찰서로 원소속이 변경되며, 실제 해당 경찰서로 전보발령됨

원소속 지정 후, 향후 4~5년 생활여건의 변화시 원소속 변경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 교류인사를 통하여 원소속을 변경한 후 원하는 경찰서에서 근무 가능

결원서 → 결원서, 과원서 → 결원서, 결원서 → 과원서로의 교류인사가 가능한지?

- 가능함. 단, 과원서 → 결원서는 단기간 내, 결원서 → 과원서는 교류인사 배점 순위에 의해 연차별로 가능

특별 교류인사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교류인사 실시
  - 징계처분자 발생
  - 조직 분위기 침체
  - 대국민 부정적 여론 형성
  - 특수한 치안수요 발생 등
- 인원산정
  - 관서별 과원율 및 결원율을 감안하여 인원 책정
- 대 상
  - 특별 교류인사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의 규정은 고려되지 않으며, 특별 교류인사 사유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
- 순위명부
  -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정기 교류인사 순위명부 활용. 단, 정기 교류인사 순위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용
- 교류인사 방법
  - 정기 교류인사에 준하여 실시

관련 Q & A

특별 교류인사를 반드시 정기 교류인사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 특별 교류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정기 교류인사에 준하여 실시하되, 별도의 기준을 추가 마련하여 실시 가능

05 관련 서식

- (서식 3-1) 교류인사 순위 명부
- (서식 3-2)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 (서식 3-3) 원소속 제도 개선 운영〈'20년 정기인사부터 적용〉

원소속 복귀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인사교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원소속서 전보기준 등)

02 복귀 기준

원소속 복귀 대상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방제분야)을 대상으로 원소속 관서 외 근무자 중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

원소속 복귀 조사

- 조사 시기 : 매년 연말 기준
- 조사 주체 : 소속기관의 장(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 보고)
- 조사 내용 : 복귀희망 여부 및 전입배점
- 공개 내용 : 전입배점 순위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전입배점 = 제1평정요소(75점) + 제2평정요소(25점)
- 제1평정요소
  - 전입조건 충족여부(40점) : 원소속 외 근무지에서 2년을 경과한 경우
    ※ 다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근무는 제외
  - 복귀 초과시간(35점) : 원소속서 외 근무지에서 2년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가산

- 제2평정요소
  - 연 령(10점) : 조사기준일 현재 연령에 따라 점수 부여
    ※ 51세 이상 10점 / 50~41세 8점 / 40~31세 6점 / 30세 이하 4점
  - 재직기간(10점) : 조사기준일 현재 재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21년 이상 10점 / 16~20년 8점 / 11~15년 6점 / 6~10년 4점 / 5년 이하 2점
  - 부양가족(5점) : 조사기준일 현재 부양가족 수(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배점
    ※ 6인 이상 5점 / 5인 4점 / 4인 3점 / 3인 2점 / 2인 1점
-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의한 현 근무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작성하고, 각 요소별 점수 산정은 매년 12. 31일 기준으로 함
  - 전입배점 총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전입조건 충족여부 ②복귀초과기간 ③선 자원전출기간 ④연령 ⑤재직기간 ⑥부양가족 ⑦연고관계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함

기타 전보기준

- 원소속 현행화
  - 원소속 관서 외 근무자 중 現 관서로의 원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관서 교류인사를 우선 실시한 후 충원율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대부분 비선호관서 위주 시행하고, 교류인사로 간주하여 감점 적용
  - 공통부서* 및 지방청 근무자는 동일한 지역 관서로의 현행화 신청 가능
    ※ 원소속과 무관하게 누구나 근무가능한 관서(본청, 교육원, 정비창, 중특단)
- 결원서 근무희망
  - 강제차출 최소화를 위하여 근무희망 인원이 극히 소수인 관서에서 원소속 변경 없이 2년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 지원서로의 전출대상자 선발은 현재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자순
-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가결 된 사람은 근무희망지에 우선 전보
- 징계에 따른 전보로 원소속서가 아닌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소속서로 전보할 수 있음

- 정년이 임박한 사람은 '전보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지에 잔류하도록 하거나 원소속서 우선 전보
- 경력경쟁채용 경찰공무원은 소속기관 간 소요인력 대비 인력충원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전보

관련 Q & A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로 배치된 신임 경찰관은 3년 근무하면 원소속으로 복귀되는 것인지?

- 반드시 3년 근무하여야 원소속으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며, 1년 미만의 단기 발령자가 아니면 누구나 원소속 복귀를 신청할 수 있음

인사고충심사 처리 부적절

- 과원서 원소속 직원이 지원서인 △△경찰서 근무 중 '처의 우울증'을 이유로 원소속 복귀 목적으로 고충심사를 신청함
- 해당 ◇◇지방청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인사 고충상담 및 처리 지침」의 심사기준(제9장 제5절 고충처리 참조) 해당 여부를 확대 해석하여 고충을 가결하고, 해당 직원이 원소속 전입배점 순위에 미달함에도 원소속 OO경찰서로 발령 조치함으로써 인사규정을 위반

03 관련 서식

- (서식 3-4)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서식 3-5)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 (서식 3-6) 인사 고충처리 증빙자료

소속기관 내 전보

01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장 보직관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3장 보직 등

02 순환 전보

전보 대상

- 신임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
  - 경　　정 : 함정 1년, 육상부서 1년
  - 경감·경위 :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
  - 경사 이하 :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함정 및 육상부서에서 각 1년 이상

    ※ 특수임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별도로 정함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
  - 본청에서의 연속 근무 가능 기간 : 7년

    ※ 국외훈련·파견 기간은 본청 근무기간에서 제외
  - 소속기관에서의 연속 근무 가능 기간
    - 파 출 소 : 2년
    - 함　　정 : 2년
    - 사 무 실 : 4년
  - 경찰서 수사과 및 정보과는 해당 과장의 요구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함정·파출소·사무실의 연속 근무의 경우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기간 산정

선발 절차

- 인사추천위원회는 소요인원의 2~3배수를 선발하여 부서장에게 보고
- 인사추천위원회는 보직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제출
- 인사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최종 전보대상자를 선발 및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인사추천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5~7인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추천인원 : 소요인력의 2~3배수
-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부서의 장은 보직후보자 명부를 작성, 인사부서에 통보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빈번한 수시 전보 실시

- 「공무원임용령」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전보)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업무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은 3년(3·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2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기간을 둠으로써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1년 이내 빈번한 수시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문성 및 능률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어 공직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운영이 요구됨

육상부서 장기 근무자 순환보직 부적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순환전보 실시)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 희망 부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호·비선호 부서간 순환전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경찰서 내 동일부서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사무실 4년, 파출소 2년, 함정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사무실·파출소 또는 함정 근무의 연속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 ○○경찰서는 '19. ○. ○○자 전보 시 육상 장기근무자 순으로 순환보직을 할 경우 발령규모가 커지고, 본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경찰서 내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산정하여 인사 조치함으로써 사무실 근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찰관을 전보하지 않음

과도한 근무지원 등 보직관리 부적정

-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일상업무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무지원이 아닌 기관·부서 간 정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근무지원은 업무폭주·새로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에 의한 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기간 예외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 '06. 6월에 경력채용된 △△지방청 소속 순경 ○○○을 '06.11.1부터 '08.02.27까지 함정 건조감독 사유로 1년 3개월간 본청 신조감독관에 근무지원 시키고, 다시 '09. 7월부터 '11. 1월까지 1년 7개월간 같은 사유로 함정 건조 감독관으로 근무 지원을 하도록 함
- 해양경찰연구센터 환경서기보 ○○○에 대하여 '09.10.12부터 '11.2.14까지 과학수사센터 인력보강을 위하여 총 1년 4월여 기간을 구 해양과학수사센터에 근무지원
- △△서 경사 ○○○은 당시 필수보직기간 1년 미만으로 정식 전보가 불가하자 우측 눈 결막염으로 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09.07.22일 △△서 306함에 지원근무형태로 사실상 전보하였다가 약 6개월 후 '10.02.02 해당 직원을 정기 전보하는 등 근무지원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하여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경력경쟁채용자 전보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전보의 제한)
- 인사담당관-3012(2019.04.23.) "전문분야 경력채용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02 전담기능

- 전문분야별 "본청 전담기능"에서 역량강화 방안 수립 등 전문성 관리

전문 분야	외 국 어	조선기술	함정정비	건 축	VTS
전담 부서	국제협력관실 〈협조:경비·상황〉	장비기획과	장비관리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해상교통관제과

전문분야	경비작전·특공	수 사	항 공	정보통신	구조·구급
전담 부서	경비과	수사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03 보직 기준

- 경력경쟁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전문성 유지와 상위직 업무 수행능력 개발을 위해 채용분야에 적합하게 보직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규임용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미 포함)
  - 경감 이상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자격을 갖춘 경우

▶ 전문성을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야별 근무가능 부서"로 보직

경력채용 분 야	근무가능 분야		
	본 청	소속기관	현장 부서
외 국 어	국제·외사·경비·수색·정보통신분야, 상황센터	경비·구조안전·외사분야, 상황실	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국제항만 인근)
조선기술	장비기획·장비관리분야	장비관리분야	건조감독관, 함정
함정정비	장비관리·장비기획분야	장비관리분야	함정
건 축	국유재산·운영지원분야	기획운영·국유재산분야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분야 상황센터	해상교통관제분야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함정
경비작전	경비작전·수색구조분야	경비·구조안전분야	함정
수 사	수사·형사·외사·보안분야	수사·형사·외사·보안분야	함정, 파출소
항 공	항공·장비기획·경비·수색구조분야	경비·구조안전분야	항공단
정보통신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구조·구급	수색구조·경비·상황분야	경비·구조안전·상황분야	중특단, 구조대, 항공단, 함정, 파출소
특 공	경비작전분야	경비·구조안전분야	특공대, 특수진압대 함정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01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 공무원 임용규칙 제9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02 보직 관리

원 칙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 (직무요건)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직위의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직무수행요건
  - (인적요건) 직렬 및 직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보유 역량의 수준, 경력·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그 밖의 특이사항

예 외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해당 직급·직위의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인정)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2월 이내의 준비기간
-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기관의 신설 준비를 위한 2월 이내의 기간

적재적소 배치

▶ 공무원 보직 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자원을 고려, 적재적소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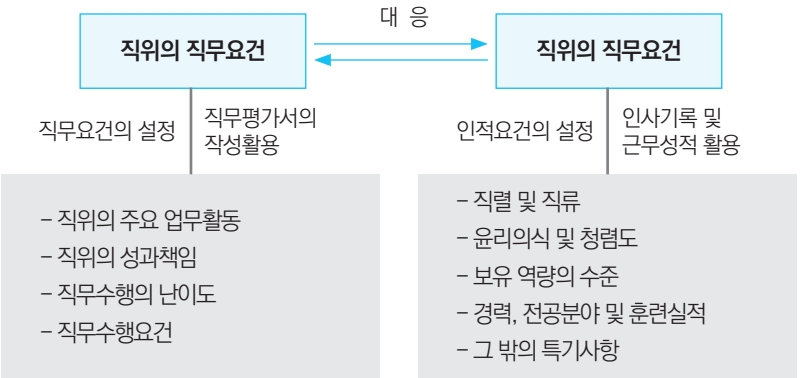

03
일반직 전보

특별요건 소지자

대 상	보 직
- 교육훈련 이수자 • 해외훈련·국내위탁교육 이수자 •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자 - 특수자격소지자	- 관련 직위에 우선보직 ※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의무복무 확보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 - 관련 직위에 보직

필수보직기간

▶ 필수보직기간 준수(공무원임용령 제45조)

- 3년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2년 또는 1년으로 운영하려면 소속장관이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1년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필요
- 경력쟁쟁채용자 관련 규정(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은 최초 임용된 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의미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
- 공채 지역·구분모집 합격자의 해당 지역·기관 임용일로부터의 필수보직기간 계산 시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제외

※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는 2년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
- '15.9.25 공무원임용령 시행 전 보직된 직위에서의 전보 제한 및 시행 전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구분	적용 대상	원칙	예외 (유사직무 수행 직위로 전보)	임용령 관련조항
경력 경쟁 채용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근무 예정자(6호), 외국어능통자(8호), 연고자(12호)	5년		§45⑥ 1호
	자격증(2호), 근무·연구경력자(3호), 전문계·사학계 등 졸업자(9호), 학위(10호), 귀화자·북한이탈주민 중 2호·3호·10호 요건자 채용(13호)	타 부처 5년 부처 내 4년		§45⑥ 2호, 3호
	지방직의 국가직 채용(7호) ※교육부·행안부 소속으로 경채된 경우 제외	타 부처 3년		§45⑥ 2의2호
	귀화자·북한이탈주민을 특수근무 예정하여 채용(13호)	5년		§45⑥ 4호

➤ 필수보직기간 준수 시 인사상 우대(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1항)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가능

➤ 필수보직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 필수보직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 적용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함, 인사교류 등을 위한 자의적인 예외 적용은 불가
- 경력채용자의 최초 임용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할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 제2호 :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 제3호 :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제4호 :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직급(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제5호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호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7호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9호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하는 경우
- 제13호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4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관련 Q & A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반영 여부

- 경력경쟁채용의 특성상 보다 장기의 전보제한을 두는 이유는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맞는 이를 채용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공직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간은 해당 직위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필수보직기간 산정 시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없음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전보의 기준은?

-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전보라 함은 부서 단위 이동을 의미함, 따라서 동일부서 내 보직 변경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전문직위의 경우에는 동일부서라 하더라도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보직)으로의 이동은 전보에 해당함

관련 Q & A

기구개편으로 A행정기관이 B행정기관을 흡수 · 통합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당초 A행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부처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 임용령 제45조제3항제2호(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한지?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라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 기구의 개편이 없더라도 기관간의 전출 · 전입 동의가 있으면 타 부처로의 전출은 언제든지 가능
-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필수보직기간 내의 전보는 기구의 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당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기구 개편으로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다른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중인 사실을 인지한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 · 출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동 공무원을 전출시킬 수 있는지?

- 현행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기관 간 전 · 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 ·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계획(안)만 해당부처 장관의 결재로 내부 확정된 상태이나, 이에 대한 정원 조정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처 간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또는 동일기관내 타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서는 필수보직기간 적용의 예외사유로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적용함이 타당하며,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변경'에 의한 필수보직기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시기는 직제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해당 직급의 공무원이 감원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0(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02 교류의 종류

계획인사교류

-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일정기간 교차근무 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

※ 유형 : 중앙부처간 교류, 중앙·지자체간 교류, 정부·공공기관 또는 대학간 교류 등
※ 방법 : 상호파견 원칙(5년 이내)이나, 4급 이상 등 직위 부여 필요시 전출입 가능

수시인사교류

-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상호 부처를 옮기는 교류

※ 방법 : 전출·입 형식(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간 경력경쟁채용)

- 교류대상
  -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중앙부처 상호간 : 해양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 중앙 · 지방간 : 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6급 이하 임용권의 위임으로 소속기관에서 교류인사 절차 진행

교류신청 제한자(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0제3항)

-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수시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교류절차

① 수시교류 신청	② 교류대상자 심사·통보	③ 교류절차진행	④ 결과 통보
나라일터	월2회, 인사처 →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 → 인사처, 교류대상자

- 각 소속기관은 통보된 교류대상자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 시행
-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10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함
-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11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인사교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교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03 교류자 선정기준

- 계획인사교류 : 업무연관성, 상호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기관 상호간 우수인력을 선발 · 파견
- 수시인사교류 : 교류신청자 중 직급, 희망기관, 지역 등 교류조건이 동일한 자 사이에 교류

관련 Q & A

경력경쟁채용등이 되어 현재 전보제한 중인 공무원도 타 부처 공무원과 동의가 되면 수시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 부처를 달리하는 공무원간 수시인사교류는 부처간 전보(전 · 출입)에 따라 실시되므로, 법령에 의해 타 부처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교류가 성립될 수 없음
- 국가 ↔ 지방간 교류 시에는 면직 후 경력경쟁채용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으로 법령상 필수보직기간은 없는 경우이며, 개인의 고충해소와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단,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의 전출 · 입동의 시 기관의 인력운영 사항과 인사관련 규정(필수보직기간 포함)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의 인사교류

- 복직과 동시에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서식 3-1

교류인사 순위 명부

작성자 : OOO (인)

확인자 : 기획운영과장 OOO (인)

작성 예시

연번	현소속	계급	성 명	제1평정요소			제2평정요소			총 평정점	교류 희망서	대기 순위
				현기관	대기 기간	가감점	연령	재직 기간	부양 가족			
1	속초	경사	박우리	30	25	10	6	4	3	78	인천	1
2	속초	순경	정다운	24	14	7.2	6	4	2	57.2	인천	2
3	동해	경장	이누리	28	18	5.4	4	3	3	61.4	인천	1
4	포항	경사	강나리	20	20	10	8	4	2	64	인천	1
5	동해	순경	김예운	30	20	10	8	5	3	76	부산	1
6	동해	경장	이세상	28	15	8.5	6	4	1	62.5	부산	2
7	동해	경위	홍길동	20	20	7.2	8	4	2	61.2	부산	3
8	포항	경장	김길동	25	15	6.5	6	4	2	58.5	부산	1
9	포항	경사	신나라	20	15	7.2	4	2	1	49.2	부산	2

※ 작성시 유의사항

- 현 근무관서 및 교류희망 관서별로 순위를 산정하되, 순위명부는 통합 관리
- 각 요소별 점수산정은 매년 12. 31일을 기준으로 함
- 전국 단위 교류인사는 본청에서, 지방청 소속기관 간 교류인사는 지방청에서 각각 작성 · 관리
- 전입배점 총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현 경찰서 근무기간 ②신청 후 대기기간 ③연령 ④재직기간 ⑤부양가족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서식 3-2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요소(80 ±10)

항 목	배점	배 점 내 용
現 관서 근무기간	40	- 현 근무 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신청 후 대기기간	40	- 교류인사 신청 후 조사기준일까지 대기월수에 매월 1.0점씩 누적가산
가·감점	±10	- '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관 중 결원서(속초·동해·태안·완도·제주권) 근무자(+5점) ※ 단, 원소속을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제외 -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의 교류인사 지원 시(+5점) - 원소속 변경 횟수가 1회(-5점), 2회(-7점), 3회(-10점)에 따라 감점 적용

● 제2평정요소(20점)

항 목	배점	배 점 내 용
연 령	10	- 조사기준일 현재 51세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으로 배점
재직기간	5	- 조사기준일 현재 21년 이상(5점), 16~20년(4점), 11~15년(3점), 6~10년(2점), 5년 이하(1점)으로 배점
부양가족	5	- 조사기준일 현재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으로 배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 기준으로 산정, 부부 공무원의 경우 2명 모두 배점

원소속 제도 개선 운영

('20년 정기인사부터 적용)

(관리방식 변경) 기존 : 본청에서 署 단위까지 원소속 관리
➡ 개선 : 지방청 단위까지만 관리

● 지방청은 소속 서 원소속 관리 → 본청 주관 교류인사로 지방청으로 전입 된 경우, 희망 원소속 署로의 교류인사는 지방청 주관 시행

* 現 대기자(170명) 까지만 기존 방식 적용, 향후 신청자부터는 지방청 단위로 관리

제주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 창원서로 교류인사를 희망한 경우

- 본청은 남해청까지 교류 인사 시행, 창원서로의 교류인사는 남해청 주관으로 소속 他 경찰서에서 창원서로 교류인사를 신청한 자와 배점을 비교하여 처리
- 창원서로의 교류인사 배점이 남해청 소속 他 서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보다 낮을 경우, 관내 결원관서에서 교류인사 가결 시(점수가 될 때까지)까지 대기

※ 창원서로의 교류인사 가결 시까지 교류인사 배점은 지속 유지

(기타 변경사항) 본청 2년 이상 근무자 원소속 변경 1회로 제한, 교육원 교수요원 및 지방청 3년 이상 근무자 원소속 변경 가능 규정* 폐지

변경 前		변경 後
- 본청 2년 이상 근무 시 횟수 제한 없이 원소속 변경 가능 - 교육원 교수요원 3년 이상 근무 시 원소속 변경 가능 - 지방청 3년 이상 근무시 소속 지방청내 원소속 署로 변경 가능	➡	- 원소속 변경 횟수 1회로 한정 - 폐지(現 교육원 교수요원 중 원소속 변경 희망자까지는 가능, 소급적용 불가) - 폐지(각 지방청별 자율적 시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제1항
2호 지방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그 지방청 소속의 해경서로 전출하는 사람
3호 교육원의 교수 요원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

서식 3-4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요소(75점)

항 목	배점	배 점 내 용
전입조건 충족여부	40	- 원소속 외 근무지에서 2년을 경과한 경우(동일지역 제외)
복귀 초과기간	35	- 원소속 외 근무지에서 2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가산

● 제2평정요소(25점)

항 목	배점	배 점 내 용
연 령	10	- 조사기준일 현재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으로 배점
재직기간	10	- 조사기준일 현재 21년 이상(10점), 16~20년(8점), 11~15년(6점), 6~10년(4점), 5년 이하(2점)으로 배점
부양가족	5	- 조사기준일 현재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으로 배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소명(2명 모두 배점)

서식 3-5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작성자 : OOO (인)

확인자 : 기획운영과장 OOO (인)

작성 예시

순위	현소속	계급계급	성 명	제1평정요소			제2평정요소				총평정점	복귀희망
				전입충족	복귀초과	자원전출	연령	재직기간	부양가족	연고관계		
1	목포	경사	박우리	18	12	3.0	8	5	3	4	53.0	군산
2	목포	순경	정다운	12	0	2.2	10	5	3	7	39.2	군산
3	목포	경장	이누리	12	0	-	6	4	2	9	33.0	군산
4	태안	경위	최고봉	18	12	-	8	5	3	10	56.0	인천
5	태안	순경	강한별	12	0	-	10	5	3	3	33.0	인천
6	완도	경사	한국인	18	12	-	8	5	3	6	52.0	여수
7	완도	순경	장보고	12	0	-	10	5	3	5	35.0	여수
8	완도	경위	김길동	12	0	1.0	6	4	2	7	32.0	여수
9												
10												

※ 작성시 유의사항

- 복귀희망 기관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구분 작성
- 각 요소별 점수산정은 매년 12. 31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전입배점 총점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은 ①전입조건 충족여부 ②복귀초과기간 ③선 자원전출기간 ④연령 ⑤재직기간 ⑥부양가족 ⑦연고관계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서식 3-6

인사 고충처리 증빙자료

구 분		고 충 내 용	증빙자료
질병질병	본인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중증질환	- 국(공)립 병원장 명의 진단서 및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 신체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 국(공)립 병원장 명의 진단서 및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노부모 부양		- 치매, 거동장애 등 요부조자	- 가족관계 증명서 - 노부모 봉양 증빙서류
자 녀 양육		- 지체장애 특수학교 등 전학 불가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양육 곤란	- 가족관계 증명서 - 재학증명서
부부 공무원		- 비선호지 근무 희망 시	- 가족관계 증명서

제 4 장

인사관리

제1절 인력관리계획 • 99
제2절 파 견 • 101
제3절 직무대리 • 105
제4절 시간선택제공무원 • 110
제5절 결원보충 및 업무대행 • 112
제6절 대우공무원 • 116
제7절 직위공모 • 121
제8절 인사감사 • 123

인력관리계획

01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 공무원 임용규칙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02 개 요

개 념

-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 현재 보유인력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인력을 예측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단기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필요성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성 제고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우수인재를 충원하거나 육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목표를 세워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체계 구축 필요
  - 각 기관은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예측에 기초하여 공개경쟁채용·승진·경력경쟁채용 등 균형 잡힌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03
인력관리계획 수립

인력관리계획

▶ 주요내용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관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의 "소속장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명시된 기관 중 대통령비서실·경호처를 제외한 48개 기관

▶ 구성체계

-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의 중장기 비전·목표, 인력현황, 인력관리계획의 목표와 실천계획 등을 포함하되 목차 단위는 달리 할 수 있음
- 인력관리계획의 목차구성(예시)

Ⅰ. 개요

Ⅱ. 중장기 비전과 목표
  1. 환경분석 및 예측
  2. 중장기 비전과 미션
  3. 주요 목표와 추진전략

Ⅲ. 인력현황·분석
  1. 인력규모와 구조(직위, 직종, 연령, 성별 등)
  2. 인력운영(채용, 승진, 전보 등)
  3. 필요역량과 보유역량(기본역량,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자역량 등)

Ⅳ. 인력관리 5개년 계획의 목표

Ⅴ. 실천계획 20××－20××예측가능성이 높은 향후 1~2년 간 구체적인 충원·육성·배치계획

파 견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 파견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파견근무)

02 목적 및 파견사유 등

- 한시적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

관련조항	사 유	기 간	대상기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제1호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 수행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제2호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		국가기관
〃 제3호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		
〃 제4호	교육훈련	필요한 기간	교육훈련기관
〃 제5호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교수요원	1년 이내 (총 파견기간 2년 이내 연장 가능)	
〃 제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필요한 기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
〃 제7호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업무수행·능력개발 등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국내의 연구·민간기관 및 단체

파견 발령권자

- 원 칙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예 외 : 소속기관의 장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훈련파견
  -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발령

파견업무절차

- "파견직위 신설",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파견업무절차 진행

① 파견 요청	② 파견자 선정	③ 파견자 추천·동의	④ 인사혁신처 협의	⑤ 파견자 발령
파견 받을 기관장 → 파견 보내는 기관장	내부 공모 → 직무파견심의 위원회 심의 (해당 기능)	(추천)파견 보내는 기관장 (동의)파견 받을 기관장	파견보내는기관장 → 인사혁신처장 (협의)파견 및 결원보충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

- 파견공무원의 선정
  - 내부 공모 등을 거쳐 파견공무원 선정

〈파견공무원의 요건〉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국외파견의 경우)

  - 국외파견의 경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한 파견공무원 선발이 필수

- 파견공무원의 추천 및 동의
  -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 협의

파견 및 결원보충 협의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인사혁신처장)

- 파견협의 요청 : 파견 보낼 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 받을 기관의 동의 공문, 파견계획서, 파견자 약력카드 등을 첨부하여 협의 요청

구 분	별도정원(직제상 파견정원 포함) 파견	비별도 파견
1년 이상	행안부와 별도정원 협의를 거친 후, 인사처와 파견대상자 적합성 협의	인사처와 파견 필요성, 기간 및 대상자 적합성 등 파견 협의
	파견자 교체 및 파견기간 연장 시(별도정원 승인기간 내) 인사처와 협의	
1년 미만	(해당 없음)	부처 자율 실시

- 파견협의 통보 : 인사혁신처장은 파견의 목적·필요성·파견 적격자 검증 등 파견 협의 및 결원보충 여부를 파견 보낼 기관장에게 통보

파견자 발령

- 파견협의 후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전보제청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파견자 발령

관련 Q & A

파견 및 파견해제 인사발령 공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파견발령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 파견근무를 명함
(20××. ××. ××. ~ 20××. ××. ××.)

파견해제발령의 경우〉
○○○ 파견근무를 해제함

부정적한 인사운영 사례

- 00처에서는 국장 등 9명에 대하여 파견기간 종료 후 연속하여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00과장은 총 5년 6월 동안 4회에 걸쳐 연속 파견하였으며, 00과장은 6년 1월 동안 3회에 걸쳐 연속 파견하는 등 파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 00부에서는 소속기관인 00사업소 신설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향후 정원을 증원 요구할 계획임을 이유로 6급이하 공무원 총 20명을 해당 부처의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2년간 파견 받아 근무하도록 함

파견자의 복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 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파견자의 성과평가 및 승진임용

- 파견성과평가 :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서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 → 근무성적평정 전에 실시하여 반영
- 승진임용 : 원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는 경우 별도정원의 범위 내에서 파견된 공무원 승진임용 가능

파견자의 보수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2항)

- 원소속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파견기간 중의 보수 지급
  -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에서 지급 가능
-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 국내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급
  -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지급

직무대리

01 관련 근거

-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2015. 9. 25)
-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훈령 제59호, 2018. 3. 12)

02 직무대리 의의

-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토록 하여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원칙적으로 직무대리업무 외에 본인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함
- 직무대리는 일시적으로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인사상 임용행위와는 다름
  ※ 직무대리는 전보 또는 승진임용이 아님
- 따라서 직무대리 명령은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위의 바로 위 상위자가 바로 아래 하위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사전에 직무대리 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무대리는 별도의 직무대리자 지정행위 필요

관련 Q & A

직무대리에서 말하는 '사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 휴가, 출장, 교육훈련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 직위에 보직이 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전보, 퇴직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03 직무대리 지정

청장 · 차장의 직무대리

-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직무대리
-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또는 국장이 직무대리
- 청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및 국장이 순차적으로 청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리

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총괄부장이 직무대리
- 안전총괄부장을 두지 않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이 직무대리
- 안전총괄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이 직무대리

관 · 국장 · 과장 등의 직무대리

- 기획조정관·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담당관 · 과장이 대리
- 담당관 · 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자가 대리

직할단장 · 직할대장 등의 직무대리

- 직할단장 및 직할대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특수구조대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시행규칙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자가 대리

직무대리의 지정

- 원 칙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자 중에서 직무의 비중 · 능력 ·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 직무대리 지정권자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자를 말함

- 특 례
  -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직무대리자의 업무수행 원칙

-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 동안 직무대리
  -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함
-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직무대리자는 자신의 직무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 없음
  - 직무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지정권자를 통하여 새로운 직무대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04 직무대리 명령서 교부

-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직무대리 명령서(서식 4-1) 교부
  -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직위가 있는 경우)에 통보
  -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사담당자가 관리(인사기록카드에 기재, 예산부서에 통보)
- 직무대리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 발급을 생략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나 내부통신망(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 지정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다만, 공석인 경우 직무대리 기간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인사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

05 직무대리의 범위

-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
  - 직무대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 할 수 있고, 직무대리하는 직위에 상당하는 월정직책급을 받음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 동안 대리하되, 본래 담당한 직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이 원칙이므로,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조속히 결원을 보충하여야 함에도
- 총경 ○○○에 대하여 '08.12.22 경무관으로 승진심사 후 '08.12.31 국제협력관으로 직무대리 발령하여 '10.1.25 경무관으로 승진임용 될 때까지 총 1년 1개월 동안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방청 소속 경위 ○○○을 '08.2.27부터 '10.1.26까지 △△항공대장으로 총 1년 11개월 간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 해당 직위를 장기간 직무대리로 운영하면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

06 관련 서식

➤ (서식 4-1) 직무대리명령서 서식

시간선택제공무원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장 시간선택제공무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시간선택제 전환경찰공무원 지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의2(시간제근무 등)

02 개 념

- 시간선택제공무원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하여 근무

03 근무기간(시간) 및 유형

- 근무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
  ※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
- 근무시간 :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함
  ※ 1일 근무시간 최소 3시간 이상
- 근무유형
  -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과 유형은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오후로 지정하고,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
    ※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은 가능

- 근로시간 및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지만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04 지정 및 해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 가능
  - 시간선택제근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적극 활용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 해제

- 당연 해제사유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지정기간 만료, 전환공무원의 퇴직
- 직권 해제사유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소멸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해제 사유 외에는 해제 불가.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해제 방법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제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해제

    ※ 해제 신청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참조

결원보충 및 업무대행

01 결원보충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 · 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의 의

- 휴직 ·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직제상)의 예외 인정

인정구분

- 법령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 질병, 군복무, 법정의무 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국제기구 · 외국기관 · 민간기업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 · 교육기관 연수, 육아,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으로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가 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또는 휴가 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출산휴가(3개월)와 연속하여 3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부터 결원보충이 가능

    ※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가능

  - 파면 · 해임 · 면직 · 강등처분에 대해 소청 · 법원에서 무효 · 취소되면 해당 처분에 따른 결원보충이 있었던 때부터 파면 · 해임 · 면직 · 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전 직급 ·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퇴직하려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어 직위해제한 경우 해당자의 직급 · 직위 ·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파견

※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 불가능

별도정원의 소멸(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5항)

➤ 휴직자 · 파견자의 복귀, 파면 · 해임 · 면직자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계급 회복 후

➤ 해당 계급 · 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된 것으로 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정원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관련 Q & A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가 전·후에 3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결원충원 시기는?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음 *2011.5.23.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제43조제1항)
-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처음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이 사전예고된 경우에 한함)

02
업무대행 공무원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의3(업무대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업무대행 공무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및 병가, 유 ·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적용범위

- 출산휴가 및 병가, 유 · 사산 휴가자 · (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 담당 또는 업무 대행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정 및 해제

- 지정방법
  - 해당 기관 내 직원 중 출산휴가 및 병가, 유 · 사산 휴가자 · (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대행 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인 이하 지정 가능(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 3인 이하)

-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음

업무대행수당 지급(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육아휴직, 30일 이상의 병가 · 출산휴가 · 유산휴가 · 사산휴가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대행공무원이 1명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N명)인 경우 각각 월 20/N만원의 업무대행수당 지급
- 단,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인원수를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수당 지급

$$\text{월 지급금액} = \text{20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text{40시간 업무대행}} \times \frac{1}{\text{지정 인원 수}}$$

관련 Q & A

결원보충 및 정원에 따른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 출산휴가 및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부서 내 소속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을 하였다면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또한, 부서 내 소속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과원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소속공무원 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과원인 상태에서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은 적절하지 않음

대우공무원

01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7장 대우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02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 대우공무원제도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및 경력요건 * 승진소요연수 경과자로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

구 분	대 상	근 무 경 력	비 고
특정직	총경 및 경정 (경무관 및 총경대우)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매월 1일)
	경감 이하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기간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따라 산정

03 선발절차

① 대상자 명단 취합	➡	② 선발계획	➡	③ 대상자 결정
본청 및 각 소속기관 추천 공문(필요시)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보고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선발요건 충족여부 검토
④ 인사발령	➡	⑤ 후속조치	➡	⑥ 수당 지급
매월 1일에 일괄 발령		e-사람에 입력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월봉급액(기본급)의 4.1% ※ 급여담당부서에 사전 통보

선발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해양경찰청장
  - 총경, 경정 및 본청 소속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 중앙특수구조단 소속 경감 ·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 지방청장, 교육원장, 정비창장
  -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
  - 소속 경찰서 경감 ·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 경찰서장, 중앙특수구조단장
  -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대상자 결정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근무
기간</td><td>
[근무기간 산정 1]·····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및 제6조제1항제2호 기간은 미 포함
<table>
<tr><td colspan="6">다만, 다음 내용(휴직, 직위해제, 강등)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6">〈1〉 휴직·····(국가공무원법)</td></tr>
<tr><td colspan="3">직권휴직 (법 제71조제1항)</td><td colspan="3">청원휴직 (법 제71조제2항)</td></tr>
<tr><td>공무상질병</td><td>병역</td><td>법정의무수행</td><td>고용</td><td>유학</td><td>육아휴직</td></tr>
<tr><td colspan="3">전부 산입</td><td colspan="2">50%산입</td><td>자녀1명 최초1년
둘째부터 전부산입</td></tr>
<tr><td colspan="6">※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인정
〈2〉 직위해제 기간
–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형사 사건 기소된 자) 무죄확정된 경우</td></tr>
</table>
〈3〉 강등
–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직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포함한다.
–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포함

[근무기간 산정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퇴직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퇴직전 재임용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 재직연수와 합하여 산정(단, 기준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 기간)
</td></tr>
</table>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제한
사유</td><td>
[임용 제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기간 중인 사람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항2호)
<table>
<tr><th>강등·정직</th><th>감봉</th><th>견책</th></tr>
<tr><td>18개월</td><td>12개월</td><td>6개월</td></tr>
</table>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관련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table>
<tr><th>강등</th><th>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th></tr>
<tr><td>18개월</td><td>6개월</td></tr>
</table>
- 승진임용 제한 중인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前 처분이 끝난 날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계산한다.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복직일부터 징계처분의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계산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 표창,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받은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td></tr>
</table>

인사발령

▸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

▸ 지원근무 또는 파견된 대우공무원 대상자는 원(源)소속기관에서 발령

후속조치

▸ 대우공무원 선발사항을 인사발령 공문 하달로 공지

▸ ‘e-사람’(임용발령사항 란)에 입력, ‘인사기록카드’(경찰경력 란)에 기재 수당지급을 위해 급여담당부서에 통보

〈 인사기록카드 기재 예시 〉

경위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경우 → '경감 대우에 명함'으로 기재

경 찰 경 력						
발령연월일	계급	지휘관또는 직무대리	부서 및 직책	경과	단기전보및 직무대리사유	기록자인
2019.3.1	경위		경감 대우에 명함			담당(인)

04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 (수당지급) 기본급의 4.1%를 매월 지급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이 상위계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급 월봉급액과 상위계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

- (감액지급)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 시에도 계속 지급하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등 감액지급구분표(서식 4-4) 참조

- (소급지급)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 발생 시 정정 발령을 하거나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가능

05 인사 관리

- 대우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조치 없이 현부서 및 직책에 근무

  ※ 수당지급이 대우공무원제도의 취지이며, 보직 등 인사 및 호칭에는 영향 없음

-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 시 승진임용일자에 대우자격은 당연 상실

-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자에 상위계급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

  ※ 단, 강등된 경우 하위계급에의 근무기간 산정결과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 선발 가능

06 해당계급 근무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제외

관련 Q & A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① '12.11.01 경사 임용 경찰관이 '13년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기간은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기간이 5년인 경우이므로 정직 1월과 승진제한기간 18개월이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예정일인 '17.11.01보다 19개월 지연된 '19.06.01.에 선발될 수 있을 것임

② '12.12.5일 경사 임용 경찰관이 '14년에 6월간 질병휴직(공무상 질병이 아님) 후 복직하였으며, '15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현계급 근무기간에서 12월(휴직 6월+승진 제한기간 6월)을 제외,
'18.12.05일부터 대우공무원 자격이 되어(현계급 5년 근무)
'19.01.01일 대우공무원으로 발령

③ '12.12.06일 경위 임용 경찰관이 '17.12.2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감봉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므로,
'19. 1. 28. 대우공무원 자격이 되어 '19. 2. 1. 대우공무원으로 발령

④ '12.12.07일 경정 임용 경찰관이 '17년에 1년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19.12.07일 대우공무원 자격이 되어 '20.01.01일 대우공무원으로 발령
※ 각 예시의 경우 다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 징계처분 기간 + 승진임용 제한기간 + 직위해제 기간(사면된 징계 요구와 관련된 것에 한함)을 모두 현계급 근무기간에 산입

07 관련 서식

- (서식 4-2) 대우공무원 선발현황 보고
- (서식 4-3) 대우공무원 선발자 명단
- (서식 4-4) 대우공무원 결격자 명단
- (서식 4-5) 대우공무원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직위공모

01 관련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직위공모)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2 대상직위 및 선정기준

직위 및 주관

- 본청 과장, 지정 계 · 팀장 – (주관) 해양경찰청장(인사담당관)
- 본청 경감 ~ 경위 – (주관) 국 · 관
- 소속기관 경정~경위 – (주관) 소속기관장

  ※ 경찰서장, 정비창장은 경정 직위공모 제외

선정 기본요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의 계급 · 직위별 전보기준 준수
- 전보기준 외에 직무수행요건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

03 운영시기 및 절차

운영시기 : 보직 예정일 2주 전

직위공모 절차

- 공 고
  - 내 용 : 공모직위명, 지원요건(능력 · 경력 등), 지원기간 등
  - 기 간 : 7일 이상

- 접 수 : 업무포탈(메모) 또는 직접 접수

- 인사추천위원회 선발
  - 주 관 : 직위공모를 주관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위 원 : 3 ~ 5인
  - 인사추천위원회는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기관장에게 추천하되,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자 1명을 추천 가능
  -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 생략 가능

- 임 용
  - 소속기관장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
  - 직위공모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선발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가능

-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직위공모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직위공모 절차 흐름도

공모직위 선정	→	선발공고	→	대상자 선발	→	임용
직무수행요건 설정 (각 기관장)		자체 게시판 (7일 이상 공고)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3~5인), 임용예정 직위별 2~3배수 선발		소속기관장이 임용

유의사항

- 다수 응모 직위도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직위별 응모현황 등 관련 내용의 보안유지

04 관련 서식

- (서식 4-6) 공모직위 신청서

인사감사

0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인사 감사 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6장 인사 감사

02 자체 인사감사

점검시기 및 대상

-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청 · 경찰서 · 교육원 · 연구센터 · 정비창 · 중특단 등 소속기관을 감사대상(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함)으로 점검 실시

점검관 편성

- 총괄지휘 : 인사담당관
- 인사 · 채용, 경비 · 수색, 해양안전, 감사 등 기능별로 점검반 구성

중점 점검항목

- 점검대상 : 점검 전년도 1. 1 ~ 현재까지 추진한 인사운영 전반
- 점검내용
  - 전보, 교류인사 및 고충처리 등 임용 관련 사항
  - 근무성적평정, 심사승진, 상훈 및 교육훈련 등 승진업무 관련 사항
  - 신규채용, 징계, 호봉 및 그 밖의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정 · 현원 관리 및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인사행정의 실태파악 및 인사 관련 직원 의견수렴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 해양경찰청장은 사전에 작성양식 · 요구목록 등을 정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이하 "감사자료"라 함) 제출 요구
-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감사결과의 처리

-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자체 시정 후 결과보고
- 신임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에 관하여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인사담당 실무자 · 계장 · 과장 및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전보 또는 성과등급 하향 조치를 할 수 있음

03 외부 인사감사

감사의 종류와 시기

- 정기감사 :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 1회 시행 원칙
  ※ 통상적으로 해양경찰청은 2년 6개월의 간격으로 외부 인사감사 수감
- 수시감사 :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

감사의 범위

- 임용, 시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보수, 징계, 신분보장,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감사절차

감사일정 통보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

- 정기감사는 시행 10일 전까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감사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감사의 실시

증거서류 징구	- 감사관은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경우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 - 서류 및 자료는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
확인서 징구	-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문답서 작성	-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업무처리의 배경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음
질문서 발부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 중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음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요구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
- 인사혁신처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양정 결정 후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

이의 신청

-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
- 인사혁신처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치결과 통보

- 피감사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그 조치결과를 1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우선 중간통보를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통보하여야 함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

▸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처분양정	위법·부당의 정도
기관경고	-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 해당 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경고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관주의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 전체차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위법·부당성이 치유된 사항
시 정	- 취소 또는 철회로 조속한 원상회복이 요구되는 사항 → 문제점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 선	- 자체 인사제도 또는 인사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해당 기관 자체 인사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해당 기관의 불합리한 인사관행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신분상 조치보다는 인사운영상 개선을 요구함이 더 효과적인 경우
통 보	-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인사운영에 대한 계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양정	위법·부당의 정도
징 계	-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중대하고 명백한 인사법규 위반이나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기관장 및 상급자 지시 등에 대해 실무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관행적인 인사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감사시에 개선 요구를 받고도 개선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경고 및 인사조치	- 징계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니나 경고처분보다 더 높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경미한 인사법규 위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하였으나 인사질서의 문란정도가 심한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주의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른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직전 감사 시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징계책임을 물을 대상이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경 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주의(또는 훈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적을 받은 경우 →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정부의 인사정책 또는 제도개선 내용의 이행에 극히 소극적인 경우
주 의	-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법규 해석상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경우 → 인사담당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04 관련 자료

▸ (서식 4-7) 인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례

▸ (서식 4-8) 인사혁신처 인사 감사 결과 사례별 지적사항

▸ (서식 4-9) 정기 인사업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점검자료)

서식 4-1

직무대리 명령서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계급)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2

대우공무원 선발현황 보고

. . 현재

구 분	총대상인원	선발인원	결 격 인 원					
			소 계	징계의결 요 구 중	징 계 처분중	직 위 해제중	휴직중	징계·휴직 등에 의한 기간미달
총 계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서식 4-3

대우공무원 선발자 명단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 배명일	근속기간 (연,월)	비 고
1						
2						
3						

※ 계급별로 구분 작성

서식 4-4

대우공무원 결격자 명단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 배명일	근속기간 (연,월)	결격사유
1						
2						
3						

※ 계급별로 구분 작성

서식 4-5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구분표

구 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 (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 (연봉월액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 (연봉월액의 20%)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수당액의 60%	수당액의 70%

서식 4-6

공모직위 신청서

소속 :	계급 : 경정	성 명 :
희망보직 :		
지원사유		
지원 직위와 관련된 업무실적	○ - ○ - ○ -	
향후 업무계획	○ - - - ○ - - -	

서식 4-7

2019년 인사 지도점검 지적사례

● 총 10건 (시정 9건 / 개선 1건)

연 번	지적 사항	시정 사항	처리 기한	비 고
1 (시정)	사무실 과원 운영	- 신임 부서 배치 시, 과원인력 현장 배치	'19.4월	
		- 건조감독관 배치기준 마련 및 정원 확보	즉시	
2 (시정)	파출소 충원율 상향 조정	- 신임경찰 임용시 충원율 92% 이상 상향	'19.5월	
		- 파출장소 적정 정원 검토 및 조정	'20. 정기	
3 (시정)	함 • 정장 보직기준 미준수	- 적정 보직자 배치 운영 - 적정 보직자 배치 운영	즉시	
			'20. 정기	
4 (시정)	승진임용 결격사유 미조회	- 임용결격사유 확인 철저	즉시	
5 (시정)	1년 미만 단기 전보	- 전보 前 인사자료 확인 철저	'20. 정기	
6 (시정)	순환전보 미실시 (3년 이상 장기근무)	- 전보 前 인사자료 확인 철저	'20. 정기	
7 (시정)	수사부서 수사경과자 미배치 운영	- 수사부서, 수사경과자 전원 배치	'20. 정기	
		- 수사과장 겸직 해제, 경과자 배치	보직소요 발생 시	
		- 수사경과 인력 확보 및 운영지침 마련	즉시	
8 (시정)	상황실 현장경력 2년 미만자 배치 운영	- 적정 보직자 배치 운영	'20. 정기	
9 (시정)	순환근무 미종료자 지방청 배치 운영	- 적정 보직자 배치 운영	'20. 정기	
10 (개선)	파출소 경력 1년 미만자 교육훈련지원팀 배치 운영	- 경력 및 자격기준 등 보직기준 마련	'20. 정기	

1	사무실 과원 운영 부적정

관련근거

● 2019년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
- 본청 인사담당관-237호(2019.1.10.)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 『2019년도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근(사무실) 부서는 정원에 맞게 현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19년 정기전보 시 본청 각 기능별 소속기관 초과현원 소요를 검토하여 총 65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속기관에서는 사무실 정원보다 현원을 초과 운영하여 지침을 미준수하였다.

〈사무실 과원 운영 현황(명)〉

□□청		□□청		□□청		□□청	
소계	4	소계	1	소계	1	소계	3
○○서	2	○○서	1	○○서	1	○○서	3
○○서	2						

● 특히, 정기전보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청 상황기획팀 인력 증원(과원 인정) 등 상황기능 강화를 지시하였으나,
- ○○서에서는 상황실 현원 2명을 경비구조과 자체조정으로 경비계 인력으로 활용하였으며,
- ○○서에서는 상황실 현원 3명을 사무실(기획·경비·안전) 인력으로 활용하여 상황기능 강화지침 또한 미준수하였다.

● 또한, 함정건조 감독관의 경우 정원 미반영에 따라 관서별 배치부서가 상이하고, 부서배치에 따라 사무실 과원 또는 함정 충원율의 허수로 작용하고 있어, 정원 확보시까지 署 장비관리과로의 통일 된 부서배치(과원 인정)가 요구되었다.

조 치

● '19. 4월 신임경찰 배치 시, 사무실 과원인력 현장 배치(해당관서)

● 함정건조 감독관 배치기준 마련 및 정원 확보(장비기획과)

2 파출소 충원율 상향 조정

관련근거

● 2019년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
- 본청 인사담당관-237호(2019.1.10.)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 『2019년도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에 따라 현장부서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충원율을 적의 조정 배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속기관에서는 대민 접점부서인 파출소의 충원율을 관서 전체 충원율 및 함정 충원율 보다 낮게 운영하여 지침을 미준수하였다.

〈기관별 부서 충원율 현황(%)〉

관서명	전체 충원율	함정 충원율	파출소 충원율
○○서	91	90	76
○○서	93.8	91	73
○○서	87.2	96	66
○○서	92.9	86	74
○○서	95.2	86	78
○○서	94.6	97	70
○○서	93.3	97	85
○○서	94.7	101	80
○○서	99.6	103	94
○○서	96.0	93	80
○○서	97.1	93	90

● 더불어, 최근 3년간 파출소 인력운영 분석 결과 ○○서 도서지역 파출소 지속적 결원 운영, ◇◇파출소 과원(정원6, 현원12) 운영 중으로 파출소 적정 정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조 치

● '19. 4~5월 신임경찰 배치 시, 파출소 충원율 상향(해당관서)

● 파출소 적정 정원 검토 및 조정(해양안전과, 행정법무담당관실)

3	함·정장 보직기준 미준수
관련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 함정장은 자격과 경력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 하여야 함 ▶대형함 : (자격) 해기사 4급 이상 (경력) 소형정 정장·중형함 함장·대형함 부장 1년 이상 ▶중형함 : (자격) 해기사 5급 이상 (경력) 소형정 정장·중형함 부장 1년 이상 ▶소형정 : (자격) 해기사 5급 이상 (경력) 함정근무경력 3년 이상 ※ 경력기준 미달로 해당자가 없거나,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가능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 인사규칙에 따라 함·정장 보직 시, 자격조건(해기사) 및 경력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하여야하나, - ○○서는 500톤급 경비함정에 경력조건이 미달된 경감 2명을 함장으로, - ○○서는 소형정(P정)에 자격조건이 미달(6급 해기사)된 경감 1명을 정장으로, - ○○서는 500톤급 경비함정에 경력조건이 미달된 경감 1명을 함장으로 각각 보직하여 함·정장 보직 기준을 미준수하였다.
조 치	● 자격 미충족은 즉시 시정, 경력은 차기 정기전보 시

4	승진임용 결격사유 미조회
관련근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 -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확인
지적내용	●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시 각 법령*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와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일반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이후~현재까지 ○○서에서는 전체 승진임용 인원 93명 중 2명을, ○○서에서는 99명 중 38명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미실시하였다.
조 치	● 승진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확인 철저(해당관서)

5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1년 미만 단기전보)

관련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 필수보직기간 1년(감사·인사업무 2년)

※ 예외 : 고충,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 승진임용, 전문직위, 징계처분, 주요 국정과제, 긴급 현안 업무 수행 등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 인사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 된 날부터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으나,

- ○○서는 기관직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서 7개월 근무 한 경위 1명을 P정 기관장으로 전보(필수보직기간 경과 한 보직가능자 有)
- ○○서는 함장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서 7개월 근무한 경감 1명을 500톤급 함장으로 전보(필수보직기간 경과 한 보직가능자 有) 하는 등

● 15개 소속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 1년 미경과자 53명을 전보하여 규칙을 미준수 하였다.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현황(명)〉

□□청		□□청		□□청		□□청		□□청	
소계	23	소계	11	소계	13	소계	5	소계	1
○○서	2	○○서	5	○○서	1	○○서	1	○○서	1
○○서	1	○○서	3	○○서	8	○○서	2		
○○서	6	○○서	3	○○서	4	○○서	2		
○○서	12								
○○서	2								

조 치

● 차기 정기전보시 개선(해당관서)

6	순환전보 미실시 (함정·파출소 3년 이상 장기근무)

관련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순환전보 실시)

- 근무지별 연속하여 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함정·파출소 2년, 사무실 4년임

※ 예외 :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 인사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함정 및 파출소에서 각각 2년 이상 근무 한 경우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소속기관에서는 함정 및 파출소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전보를 미실시하였다.

〈 순환전보 미실시 현황(명)〉

□□청		□□청		□□청		□□청		□□청	
소계	50	소계	17	소계	29	소계	3	소계	14
○○서	28	○○서	7	○○서	6	○○서	1	○○서	12
○○서	19	○○서	10	○○서	21	○○서	2	○○서	2
○○서	1			○○서	2				
○○서	2								

● 특히, □□청에서는 ○○서 육상 및 해상 정원을 감안하여 ○○서 간 인사교류시 순환근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시 고려하지 않아,

- 현재, ○○서 경찰관 중 함정 3년 이상 연속 근무자가 28명(5년 이상 7명)으로 향후 정기인사 시 해·육상 순환전보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 치

● 차기 정기전보 시 개선(해당관서)

● ○○서↔○○서 인사교류시 함정 연속근무 기간 고려 조정(□□청)

7 수사부서 수사경과자 미배치 운영 등

관련근거

● 2019년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
- 본청 인사담당관-237호(2019.1.10.)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2019년도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에 의거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하여야하나,
- 상당수 소속기관에서는 개인 미희망·겸직 등의 이유로 수사부서에 수사경과 이외 다른 경과자를 배치하여 지침을 미준수하였다.

※제주청 경정 직위인 수사정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이 겸직(수사 경과 경정 1명은 홍보계장 보직)

〈수사부서 非수사경과자 배치 현황(명)〉

□□청		□□청		□□청		□□청		□□청	
소계	35	소계	24	소계	31	소계	11	소계	4
□□청	2	□□청	1	□□청	1	□□청	2	□□청	1
○○서	5	○○서	6	○○서	1	○○서	3	○○서	1
○○서	8	○○서	4	○○서	19	○○서	4	○○서	2
○○서	7	○○서	13	○○서	10	○○서	2		
○○서	13								

● 이와 관련, 지방청에서는 수사경과 인원을 소속 경찰서에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 치

● 차기 정기전보 시 개선(해당 관서)

● 수사경과 인력 확보 및 운영지침 마련(수사과)

8	상황부서 보직기준 미준수 등

관련근거

● 2019년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
- 본청 인사담당관-237호(2019.1.10.)

지적내용

● 소속기관의 장은 『2019년도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에 따라 상황기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황부서에 함정, 파·출장소 등 현장부서 2년 이상 근무경험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속기관에서는 보직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공무원이 있었음에도 현장부서 근무경험 2년 미만인 경찰공무원(17개 관서 32명)을 상황부서에 배치하여 지침을 미준수하였다.

〈기관별 미준수(2년 미만) 현황(명)〉

□□청		□□청		□□청		□□청		□□청	
소계	14	소계	7	소계	4	소계	5	소계	2
□□청	2	○○서	2	○○서	1	□□청	2	○○서	2
○○서	5	○○서	1	○○서	2	○○서	2		
○○서	1	○○서	1	○○서	1	○○서	1		
○○서	3	○○서	2						
○○서	3	○○서	1						

조 치

● 차기 정기전보 시 개선(해당 관서)

9	신임경찰 순환전보 미종료자 지방청 배치
관련근거	● 2019년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 - 본청 인사담당관-237호(2019.1.10.)
지적내용	● 소속기관장은 『2019년도 경찰공무원 전보 지침』에 의거 지방청(사무실)은 신임경찰관 현장경험 축척과 전문분야 개발을 위해 순환근무 종료자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지방청은 신임경찰 순환근무가 종료 되지 않은 4명을 배치하여 지침을 미준수하였다. 〈기관별 미준수(2년 미만) 현황(명)〉
조 치	● 차기 정기전보 시 개선(해당 관서)

관서명	인원	세부내용
□□청	1	'16. 7. 15. 신규임용 경찰관 1명 배치 (육상 순환근무 미실시)
□□청	1	'18. 6. 8. 신규임용 경찰관 1명 배치 (해 · 육상 순환근무 미실시)
□□청	2	'17. 11. 24. 신규임용 경찰관 2명 배치 (육상 순환근무 미실시)

10	파출소 교육훈련지원팀 근무자 보직기준 마련 필요 (개선)
개선사항	**현 황** ● '16. 4월부터 파출소 구조역량 및 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지원팀 비직제(정원 미반영) 신설 운영 중 - 19개서 총 75명의 교육훈련지원팀 운영(서별 2~5명) * 팀장, 교육·훈련 담당, 행정지원 담당으로 구성 - 파출소에서 필요한 4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실시 중 * 연안사고(6종), 구조장비운용(4종), 시스템 교육(10종), 수사교육(3종) **문제점** ● 현재 교육훈련팀 보직기준 부재로 대부분 署 해양안전과장 추천 반영 배치 - 9개서 파출소 경력 1년 미만자 16명 배치 운영 ● 경력 및 자격 미달자*에 의한 교육훈련 진행에 따른 훈련의 실효성 저하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불만 발생 * 임용 2년 미만자, 파출소 미경력자, 인명구조자격증 미취득자 등 **개선방안** ● 파출소 교육훈련지원팀 근무자에 대한 경력 및 자격기준 등 보직기준 마련 필요('20년 정기인사 시 반영) ※ '19년 정기전보 시 홍보, 상황, 특임경과 등 전문성 감안한 보직 실시 完
조 치	● 교육훈련지원팀 근무자 보직기준(경력·자격) 마련(해양안전과)

서식 4-8

인사혁신처 인사감사 사례별 지적사항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인사감사규정(대통령령 제29695호, 2019. 4.17)

감사기간 : '19. 5. 29 ~ 6. 12 (10일간)

수감기관 : 본청 및 소속기관

감 사 관 : 인사혁신처 소속 감사관 0명

감사내용

-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 보수, 징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신분보장, 복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확인서 징구 (8건)

분야	지적내용
채용	①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부적정 - '○○.○.○○. 공고한 중국어분야(여자) 채용을 실시하면서, 실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문에 명시한 2배수가 아닌 3배수 선발
	②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험위원 구성방법 개선 필요 - 의경 복무자가 다수 채용시험에 응시 중이고 경정이상 직원의 자녀가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합격하고 있으나, 응시자와 시험위원의 제척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등을 고려한 회피제도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 - 채용시험의 공정성 ·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 필요
승진 · 근평	③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도달자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등 - '17.4.27. 실시한 ○○○ 7급 근속승진심사에서 견책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6개월)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미제외하여 8급 ○○○을 3개월 2일 빠른 '17.5.1자 승진임용 - '17.11.13. 실시한 ○○서 경장 근속승진심사에서 감봉1월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13개월)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순경 ○○○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임용제한기간에서 미제외하여 2개월 빠른 '17.12.1.자로 승진임용
	④ 결원을 초과한 경무관 승진심사 부적정 - '17.10.17. 경무관 승진심사를 통해 ○○○, ○○○을 선발, '17.11.2.자 승진임용 하였는데, 당시 결원 2명(8/6) 중 1명은 국내훈련 파견 종료시점이 2개월 이내이므로 승진을 위한 결원은 1명이었음 - 파견복귀 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승진을 실시한 결과, '17.11.2.기준 경무관 1명의 과원(8/9)이 발생('18.1.24.자 치안감 ○○○ 의원면직시까지 2개월 22일간 유지 됨)
	⑤ 경감 근속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는 임용권 위임에 따라 소속기관별 심사가 가능함에도 본청에서 통합 운영
	⑥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18년 상반기 일반직 근무평정시 원평가자가 평가한 서열을 평가단위에서 변경, 평가대상자간 상대적 서열 미결정, 동일 평가단위 내 평가점수가 평가단위 서열 순에 따라 부여, 평가자 및 확인자 서명 누락
휴직	⑦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동반 없이 19일 해외 체류(○○서 경사 ○○○), 유학휴직자의 국내 장기 체류(전체 8개월 중 48일, ○○○ 경사 ○○○)

분야	지적내용
수당	⑧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부적정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오류*로 4명은 선발 가능시점보다 빨리, 4명은 늦게 선발하였음 * 징계처분 기간 미제외 / 둘째 자녀대상 육아휴직 기간 미산입 - 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복직 시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9명에 대해 과소지급(2,374,060원), 8명에 대해 과다지급(6,011,850원) 하였음 -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미지급 하여야 함에도 ○○청은 '18.1월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제외 대상인 경위 ○○○(견책, '17.12.27.)에게 1,986,300원을 과오지급함 - 육아휴직수당은 자녀별 육아휴직기간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 4개월부터는 50%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1명에 대해 1,583,070원 과다지급, 2명에 대해 1,741,930원 과소지급 - 연가보상비 지급시 직위해제 및 징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정직1월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254,780원을 과오지급 - 특수업무수당내 중요직무급과 전문직위수당은 병급할 수 없음에도 ○○○ 7급 ○○○에 대해 중요직무급 1000,000원과 전문직위수당 114,330원을 함께 지급

현지시정 목록 (14건)

분야	지적내용
채용	① 경찰공무원(경위)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적정 - 항공조종사와 같은 특수기술부분 종사자에 대한 응시자격, 서류전형절차 등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기준과 시험관리절차 확립 필요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부적정 등 - '○○.○.○. 전산 7급(정보보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당한 절차없이 경력기준 3년을 임의로 단축 - '17.12.15. ○○청 함정조리사 경력정쟁채용시험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험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시험 주관부서인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계 직원을 서류전형 위원으로 위촉

분야	지적내용
승진 · 근평	③ 승진심사 시 부적정한 승진임용제한사유 확인 및 활용 - '19.1.11.자 일반직 4 · 5급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감찰부서에 조회 요청하였고 감찰부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도과한 징계처분자,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심사대상자 9명을 승진제한사유 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인사 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근거 · 활용범위 · 한계 등을 자체 인사기준에 마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승진심사에 활용(승진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진 않음)
	④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직전 승진심사 부적정 - '19.1.11.자 일반직 4 · 5급 승진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점이('19.1.31.) 임박한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 실적에 기반한 임용원칙상 최근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후에 심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1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만 반영 된 승진후보자명부로 심사를 실시하여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위배
보직 관리	⑤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 - '19. 5월 현재 총 17개 직위를 전문직위 운영중으로 3개 직위에 전문관 미선발(2개 직위는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 배치) 운영 및 '16년 선발 된 전문관 4명을 필수보직기간내 전보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 누락 - 전문직위에 적합한 대상자를 보직하거나 직무수행요건 정비 필요
	⑥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 직무대리는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하나 '18년도 지방청 상황실장(경정 직위) 직위에 총 3명의 총경을 보직
	⑦ 질병휴직제도 운영 부적정 - 질병휴직자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확인 후 복직 처리하여야 함에도 제출서류 없이 복직조치 및 의사 소견서 확인 후 복직 조치 등 총 10건

분야	지적내용
교육	⑧ 장기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자 관리 부적정 -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함 - 6개월 이상의 국내 · 외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한 경우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 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16.8.4. ~ '18.7.18. 장기국외훈련(영국) 과정을 이수한 경감 ○○○에 대해 '18.7.19. 육아휴직을 승인하면서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 미수립 등 총 4명에 대한 의무복무계획 미수립 및 인사혁신처 통보 불이행
	⑨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출관리 부적정 - 교육훈련 이수자는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경사 ○○○은 90일 지연, 경사 ○○○는 54일 지연 제출 함
	⑩ 장기교육훈련 이수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부적정 -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함(6월 이상의 경우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고 훈련 이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 - 최근 3년간 장기교육훈련 이수자 총 25명중 15명을 사전 예정보직과 다른 부서에 보직
징계	⑪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지연 -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그 밖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나, 공판지연 및 감찰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총 9건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30일 이상 지연함
복무	⑫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및 복무관리 등 부적정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의 취지 상 초과근무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월평균 초과근무일이 근무일의 40% 이상인 직원이 총 5명(전체 11명)으로,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
	⑬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 공무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여야 함에도, '16. 11월부터 '19. 5월까지 국내 · 외 출장에 따른 항공편 이용 총 5,307건 중 89건(1.7%)에 대해 항공사 회원 미가입 및 단순누락 등의 사유로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 누락, 관리에 적정 필요
기타	⑭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기록관리 부적정 - 임용시험정보누락, 자격증 소지 경력경쟁채용자 자격사항 입력 누락,육아휴직자의 자녀 등록 누락, 징계자 비위유형 입력 누락 등

서식 4-9

정기 인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 인사위원회 운영사항

- 승진, 포상 및 정기전보 운영 실태

2. 보직관리

- 채용분야, 경과, 특기, 직별, 적성 등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 여부
- 소속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의 적정성 여부

3. 함·정장 보직관리 적정여부

- 대형함 : 해기사 4급 이상 및 소형정(100톤)의 정장, 중형함장 또는 대형함정 부장 1년 이상
- 중형함 : 해기사 5급이상 및 소형정장 또는 중형함 이상의 부장 1년 이상
- 소형장 : 해기사 5급이상 및 함정경력 3년 이상

※ 소속기관 인력 운영상 불가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장·정장 보직 가능

4. 신임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 경 정 : 함정 1년, 육상부서 1년
- 경감·경위 : 경비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
- 경사 이하 : 3년 이내에 경비함정 및 육상부서에서 각 1년 이상 근무

5. 전보의 원칙 및 제한

- 정기정보 및 수시전보* 실시 여부

※ 신규임용자의 배치, 결원보충 및 직제개정 등 필요한 경우

- 현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 이내 전보 여부

※ 단, 고충처리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순환보직 가능

- 경력경쟁채용자의 보직관리 상태의 적정성 여부

6.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7. 모성보호 등

- 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의 적정성 여부

8. 해당연도 정기전보 기준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전보지침 준수 여부

9.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

- 평정권자별 평정의 적정성 여부
- 경력 및 가점 평정의 적정성 여부
- 파견자(VTS 등) 근평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여부

10. 승진심사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의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 여부
- 승진심사 절차 및 규정이행 준수 여부
- 위원회 단계별 심사결과 및 서류 일체 확인
- 승진예정자 관리 상태(사전 신원조회 여부)

11. 호봉관리

-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호봉획정 등 관리 상태
- 공무직근로자 호봉관리 상태

12. e-사람시스템 관리

- e-사람시스템 자료점검 확인 여부(분기 이상)

※ e-사람시스템 : 인사기록⇒기록관리⇒인사기록변동관리⇒자료점검

- e-사람시스템 관리자 현황 확인

※ e-사람시스템 :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운영 ⇒ 사용자관리

13. 상훈관리

- 연간 표창계획 수립 여부(지방청, 경찰서, 함정)
- 포상 지급 및 부상품 관리 상태
- 포상 심의위원회 적정성 여부

14.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관리

- 근속승진의 적정성 여부(근속기간, 다자녀·정년임박자 등 반영)
- 대우공무원 선발의 적정성 여부(근속기간, 임용제한기간 등)

15. 고충자 관리

- 고충자 처리 여부
- 허위로 판정시 고충처리 취소 및 6개월 이내 사후검증 여부(감찰)
- 자체 고충심사 기준 적정 여부

16. 휴장 및 전자공무원증 관리

- 휴장 관리 상태(퇴직자 등)

※ e-사람시스템 : 인사기록⇒기록관리⇒기타기록관리⇒휴장관리 입력 여부

- 전자공무원증 관리 상태

17. 시간제선택제 공무원 관리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여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평정 서류 확인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시 후보자 명부 작성 했는지 여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일자 준수 여부

18. 현장부서 충원율 관리

- 함정·상황실·구조대·특공대·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파출소 인력운영 현황

19. 기 타

- 휴직, 복직 발령시 증빙자료 확인 여부
- 징계처분자에 대한 발령장 통지여부(발령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의결서)
- 신규 임용자 정규임용 누락자 및 심사 절차 이행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인력관리 실태 점검
- 타 부처 파견자 및 휴직자 관리 점검

제 5 장

평 정

제1절 근무성적 평정 • 153
제2절 경력 평정 • 161
제3절 가점 평정 • 167
제4절 총경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 172

근무성적 평정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02 평정대상 및 평정권자

대상 및 시기

-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 연 1회(매년 10월 31일 기준)

근무성적 평정의 근무기간

-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연도의 기간은 전년도 11. 1일부터 평정연도 10. 31일까지이므로, 평정기준일 10. 31을 기준으로 6월 이상 근무 시 평정대상

    ※ '18.11.20~'19.5.10까지 휴직한 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여 평정 대상

근무기간 제외	근무기간 산입
- 휴직기간 - 강등·정직·직위해제 처분기간 - 교육훈련 파견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기간 합산이 30일 이상 시 그 기간 전부 - 평정기준일 현재 계급보다 하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기간 합산이 30일 미만 시 그 기간 전부 - 평정기준일 현재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

- 6개월 이상의 국외파견, 육아휴직, 기타 교육훈련으로 평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해당 연도의 평정으로 갈음
  - 직무에 복귀하여 2월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평정일에 평정

    ※ '19년 9월1일 복귀시 : '19년 10월 31일 평정

    ※ '19년 9월2일 복귀시 : '20년 10월 31일 평정

- 파견근무자 평가
  -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지자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 :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
  - 다른 부처 파견자 및 해외주재관 : 원소속 부서에서 분포비율 적용 평정

- 업무지원 근무자 평가
  - 대 상 : 업무지원자(10월 31일 기준 지원근무자)
  - 평 가 : 지원근무 기간에 따라 평가
    - 2개월 이상 지원근무한 사람 : 업무지원 관서에서 평정
    - 2개월 미만 지원근무한 사람 : 원소속에서 평정
  - 단, 해당 경찰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개월 경과 후에는 평정 대상

    ※ 평정기간 내 근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전출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정
  -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

- 전년도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평정
  - 근무평정일 기준 2개월 이내('19.9.2~'19.10.31)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강등된 사람은 근무평정 미실시
  -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을 경우에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전년도 및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하되,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 평정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년도 또는 다음연도의 평정점을 37.5점으로 함

관련 Q & A

'14. 4월에 임용한 甲 경사가 '16.11.1 ~ '17.10.31(1년간) 육아휴직으로2017년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

- 경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3년간('16~'18년) 근무성적을 반영하여야 하나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17년도 근무성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음
- 따라서 ①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인 '16년 평정점(41.50)과 ②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16년) 및 다음연도 평정점의 평균점 중 높은 점수를 '17년 근무성적 평정점수로 부여함

구 분	'16년	'17년	'18년
근무성적	41.50	없음	45.50
평 정 점	41.50	43.50	45.50

※'17년도 근평점수(이월된 점수) 41.50점에서 43.50으로 변경, 이후 확정 근평이 됨

평정권자 ※ 근무성적 평정권자 지정 현황(서식 5-3) 참조

- 제1차 평정자 : 평정 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
- 제2차 평정자 : 제1차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
- 제3차 평정자 : 제2차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
- 근무성적 평정자 지정
  - 평정권자와 피평정자가 동일한 계급인 경우, 평정권자가 공석인 경우, 부서의 특성상 상위 감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 기타 실정으로 "승진업무 처리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승인 후,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03
총경 평정

평정요소 및 배점

구 분	1차 평정자(15점)			2차 평정자(15점)			3차 평정자(20점)		
평정요소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배 점	3.5점	6.5점	5점	3.5점	6.5점	5점	6점	8점	6점

평정권자별 평정점

- 총 평정점 : 50점 만점
  - 제1차 평정자 : 15점
  - 제2차 평정자 : 15점
  - 제3차 평정자 : 20점

- 평정권자별 평정점 분포 (등급간 점수차 : 0.25점)

구 분	1차 2차 평정점	3차 평정점
수 (20%)	15.00, 14.75, 14.50, 14.25	20.00, 19.75, 19.50, 19.25, 19.00
우 (40%)	14.00, 13.75, 13.50, 13.25, 13.00, 12.75, 12.50, 12.25, 12.00, 11.75	18.75, 18.50, 18.25, 18.00, 17.75,17.50, 17.25, 17.00
양 (30%)	11.50, 11.25, 11.00, 10.75, 10.50, 10.25, 10.00, 9.75, 9.50, 9.25, 9.00, 8.75, 8.50, 8.25, 8.00, 7.75	16.75, 16.50, 16.25, 16.00, 15.75,15.50, 15.25, 15.00, 14.75, 14.50,14.25, 14.00, 13.75, 13.50, 13.25,13.00, 12.75, 12.50, 12.25, 12.00,11.75, 11.50, 11.25, 11.00, 10.75,10.50, 10.25, 10.00
가 (10%)	7.50 이하	9.75 이하

평정절차

- 각 1·2·3차 평정권자는 평정대상 인원에 따라 등급별 분포비율을 준수하여 평정
  - 등급별 분포비율(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수	우	양	가
분포 비율	20%	40%	30%	10%

  - 단, “가”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에 가산

- 1·2·3차 평정점수의 합계점수 순에 따라 "서열명부(서식 5-9)" 작성
  - 평정점수 동점자의 서열명부상 순위결정 기준
    ① 제1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② 해당 계급 장기간 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④ ③항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3차 평정자가 최종 순위 결정
- 서열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에 따라 개인별 최종 평정점 부여

관련 Q & A

- 본청 ○○국 소속 총경이 2명인 경우에 1차 평정자인 소속국장은 우 1명, 양 1명으로 평정 가능
- ○○지방청 소속 총경이 6명인 경우에 1차 평정자인 지방청장은 수 1명, 우 2명, 양 2명, 가 1명으로 평정 가능

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되는가?

- 평가대상 공무원들의 평가는 해당 공무원의 정기평가일 현재의 상급·하급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되, 새로 지정된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전 상급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04 경정 이하 평정

평점요소 및 배점

- 총 평정점 : 50점
- 제1평정요소 : 20점
  -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 5점
  - 포상 : 5점
  - 직장훈련 : 5점
  - 첩보 : 3점
  - 근무수행태도 : 2점
- 제2평정요소 : 30점
  - 제1차 평정자 : 11점
  - 제2차 평정자 : 11점
  - 제3차 평정자 : 8점

▶ 평정권자별 평정점 분포 (등급간 점수차 : 0.125점)

구 분	1차 2차 평정점	3차 평정점
수 (20%)	11.000, 10.875, 10.750, 10.625	8.000
우 (40%)	10.500, 10.375, 10.250, 10.125 10.000, 9.875, 9.750, 9.625 9.500, 9.375	7.875, 7.750, 7.625, 7.500
양 (30%)	9.250, 9.125, 9.000, 8.875 8.750, 8.625, 8.500, 8.375 8.250, 8.125, 8.000, 7.875 7.750, 7.625, 7.500, 7.375	7.375, 7.250, 7.125, 7.000 6.875, 6.750, 6.625, 6.500 6.375, 6.250, 6.125, 6.000 5.875, 5.750, 5.625, 5.500
가 (10%)	7.250 이하	5.375 이하

평정 절차

▶ 각 1·2·3차 평정권자는 계급별 평정대상 인원에 따라 등급별 분포비율을 준수하여 평정

- 등급별 분포비율(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수	우	양	가
분포 비율	20%	40%	30%	10%

- 단, “가”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에 가산

▶ 각 1·2·3차 평정점수 합계점수 순에 따라 경정이하 계급별 “서열명부(서식 5-9)” 작성

- 평정점수 동점자의 서열명부상 순위결정 기준
  ① 제1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② 해당 계급 장기간 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④ ③항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3차 평정자가 최종 순위 결정

- 서열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에 따라 개인별 최종 평정점 부여

- 소수인원 평가 예외
  - 적용대상 : 평정 대상자가 1명 또는 2명일 때
  - 적용범위 : 1차 평정권에 한함
  - 적용방법

    ① 대상자 1명 : "수 · 우 · 양 · 가"모두 평정 가능

    ※ 단, 평가기준일(10.31)에 현 계급 근무경력 2년 이상일 때 "수" 평가 가능

    ② 대상자 2명 : 1명"수"나머지 1명"우 · 양 · 가"중 평정 가능

    ③ 대상자 3명 이상 :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

〈 평정방법(예시) 〉

등급 / 인원	수	우	양	가
1명	1			
2명	1	1		
3명	1	1	1	
4명	1	2	1	
5명	1	2	2	

등급 / 인원	수	우	양	가
6명	1	2	2	1
7명	1	3	2	1
8명	2	3	2	1
9명	2	3	3	1
10명	2	4	3	1

관련 Q & A

총경 甲, 乙, 丙, 丁의 1·2·3차 평정점수 합계가
甲 : 50.00점, 乙 : 49.50점, 丙 : 43.75점, 丁 : 38.25점이라고 가정할 때,

- 서열명부상 순위는 甲 1위, 乙 2위, 丙 3위, 丁 4위에 해당하고
-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표'에 의할 경우, 수 1명, 우 1명, 양 1명, 가 1명으로 평정하여야 하므로 甲은 수 1번, 乙은 우 1번, 丙은 양 1번, 丁은 가 1번에 해당함
- 따라서 위 4명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甲 50.00점, 乙 46.75점, 丙 39.75점, 丁 24.75점(양으로 평정할 경우는 39.50점)이 됨

甲부장(경감) 내 경사 3명, 乙함장 내 경사 10명, 丙경찰서장 내 경사 20명인 경우,

- 甲은 평정대상 경사가 3명이므로,『"수" 1, "우" 1, "양" 1』로 분포비율 적용
- 乙은 평정대상 경사가 10명이므로,『 "수" 2, "우" 4, "양" 3, "가" 1』로 분포비율 적용 ("가" 해당자가 없을 경우 "양" 평정 가능)
- 丙은 평정대상 경사가 20명이므로,『"수" 4, "우" 8, "양" 6, "가" 2』로 분포비율 적용 ("가" 해당자가 없을 경우 "양" 평정 가능)

관련 Q & A

甲계에 경사가 3명, 乙과에 경사 10명, 丙서에 경사가 20명인 경우

- 甲은 평정대상 경사가 3명이므로, 『"수" 1, "우" 1, "양" 1』로 분포비율 적용
- 乙은 평정대상 경사가 10명이므로,『 "수" 2, "우" 4, "양" 3, "가" 1』로 분포비율 적용 ("가" 해당자가 없을 경우 "양" 평정 가능)
- 丙은 평정대상 경사가 20명이므로, 『"수" 4, "우" 8, "양" 6, "가" 2』로 분포비율 적용 ("가" 해당자가 없을 경우 "양" 평정 가능)

경정 甲, 乙, 丙, 丁의 1·2·3차 평정점수 합계가
甲 : 30.00점, 乙 : 30.00점, 丙 : 29.875점, 丁 : 29.875점이라고 가정할 때,

- 제2평정요소 평정점수 동점자의 순위결정에 따른 순위가 甲 1위, 乙 2위, 丙 3위, 丁 4위에 해당할 시에
-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표'에 의할 경우, 수 1명, 우 2명, 양 1명으로 평정하여야 하므로 甲은 수 1번, 乙은 우 1번, 丙은 우 2번, 丁은 양 1번에 해당함
- 따라서 위 4명의 제2평정요소 평정점은 甲 30.00점, 乙 28.875점, 丙 28.75점, 丁 25.875점이 됨

05 관련 서식

- (서식 5-1) 강등처분자 업무처리 지침
- (서식 5-2) 근무성적평정표(총경, 경정이하)
- (서식 5-3) 근무성적 평정권자 지정
- (서식 5-4)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
- (서식 5-5) 포상 평가기준
- (서식 5-6) 직장훈련 평가기준
- (서식 5-7) 근무수행태도 평가기준
- (서식 5-8) 견문제출 평가기준
- (서식 5-9) 서열명부(총경, 경정이하)

경력 평정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평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0조(경력의 기간 계산)

02 경력 평정 개요

평정시기 및 횟수

- 총경·경정 : 10월말 기준 ····· 연 1회
- 경감 이하 : 12월말 기준 ····· 연 1회

대상자, 평정자 및 확인자

- 대상자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총경 이하
- 평정자 : 평정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인사담당자
- 확인자 :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은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의 직무정지 기간)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
- 단,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 중 다음의 기간을 산입함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

    ※ '08.1.1.이후 휴직자부터 적용(시간선택제공무원 포함)

    ※ 자녀 1명당 최초 1년에 한해 인정하되,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체,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 인정

- 병역휴직 기간
- 고용휴직 기간
- 법정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기간
- 유학휴직 기간 중 5할의 기간(단, 산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보임용 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사유가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 및 처분기간
-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 시 퇴직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
- 행정·외무고시에 합격하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의 2할에 해당하는 기간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재직 중에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 강등된 자가 강등되기 전 계급에서 재직한 근무기간
- 징계처분 중 감봉처분 기간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기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이 원칙. 다만, 해당 계급 1년의 범위에서 그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

관련 사례

- 순경으로 채용되어 3년 후 경장 승진, 경장에서 2년 간 재직 후 퇴직한 자가 순경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순경부터 경장까지의 5년 기간 인정
- 일반경찰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가 해양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반경찰에서 근무한 경력 전부 인정. 단, 퇴직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자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함
  ※ 이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도 全 기간 반영

03
경력 구분

경력 구분 :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

기본경력

- 총경·경정·경감 : 평정기준 일부터 최근 4년간
- 경위·경사 : 평정기준 일부터 최근 3년간
- 경장·순경 : 평정기준 일부터 최근 2년간

초과경력

- 총 경 : 기본경력 전 3년간
- 경정·경감 : 기본경력 전 5년간
- 경 위 : 기본경력 전 4년간
- 경 사 : 기본경력 전 2년 6개월간
- 경 장 :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 순 경 : 기본경력 전 1년간

계급별 평정기간 및 배점

구 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7년	9년	9년	7년	5년 6월	3년 6월	3년
기본경력 (32점)	최근 4년 (월 0.667점)			최근 3년 (월 0.889점)		최근 2년 (월 1.333점)	
초과경력 (3점)	기본경력전 3년 (월 0.084점)	기본경력전 5년 (월 0.05점)		기본경력전 4년 (월 0.063 점)	기본경력전 2년 6월 (월 0.100 점)	기본경력전 1년 6월 (월 0.167 점)	기본경력전 1년 (월 0.250 점)

평정 방법 원칙

- 평정대상 기간은 월 단위로 산출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1개월은 30일로 계산)

관련 사례

① 2017.3.17 ~ 2018.10.31까지의 경력월수 계산

```
    18. 10. 31
-)  17.  3. 17
-------------------------------------------
=  1년 7월 14일 + 1일(초일산입) → 20개월로 계산
```

② 2016. 2. 17 ~ 2018. 10. 31 까지의 경력월수 계산

```
    18. 10. 31
-)  16.  2. 17
-------------------------------------------
=  2년 8월 14일 + 1일(초일산입) → 33개월로 계산영
```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근무월수에 각각 해당 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기본경력점수 총점 32점과 초과경력점수 총점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

- 기본경력 기간 및 초과경력 기간에 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이 있는 경우, 그 처분기간을 제외

관련 사례

'08.1월 경감 임명된 甲이 '11. 4월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경력점수는? ('19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으로)

- 임용기간만으로는 12년이지만, 초과경력 기간 중에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므로 甲의 경력점수는 기본경력 32 + 초과경력 2.9 = 총 34.9점

'08.1월 경감 임명된 乙이 '17. 4월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경력점수는? ('19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으로)

- 임용기간만으로는 12년이지만, 기본경력 기간 중에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므로 乙의 경력점수는 기본경력 30.666 + 초과경력 3 = 총 33.666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사면·말소된 경우

- 사면일 이후로 기존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사면된 정직 및 사면된 징계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 강등·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말소 되었더라도 그 처분기간은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력평정대상기간에 미 산입

기타 사항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 합격자
  -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포함)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의 경력에 포함
-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생 수습한 기간을 경력에 포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전부 인정
  -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
  -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인정
-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
-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
- 경창청 전입자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찰청 전입자는 경찰청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관련 사례

사법시험 경채자의 경우

① '15.6.20 경채, 사법연수원 '14.3.1 ~ '15.2.1, 평정기준일 '19.10.31
- 기본경력 : '15.11.1 ~ '19.10.31
- 초과경력 : ('14.3.1 ~ '15.2.1) + ('15.6.20 ~ '15.10.31)

② '17.6.20 경채, 사법연수원 '16.3.1 ~ '17.2.1, 평정기준일 '19.10.31
- 기본경력 : ('16.11.1 ~ '17.2.1) + ('17.6.20 ~ '19.10.31)
- 초과경력 : '16.3.1 ~ '16.10.31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경채자의 경우

'16.11.1 경채, 행정사무관 '10.11.1 ~ '15.10.31. 평정기준일 '19.10.31
- 경정 기본경력 만점 도달기간 : 48개월, 초과경력 만점도달기간 : 60개월
- 5급 경력의 20%(12개월)
- 기본경력 : 36개월('16.11.1~'19.10.31) + 12개월 가산
- 초과경력 : 12개월 가산

가점 평정

01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가점평정)

02 가점 평정 개요

평정대상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평정시기

- 총경·경정 : 10월말 기준 ····· 연 1회
- 경감 이하 : 12월말 기준 ····· 연 1회

평정권자

- 평정자 ····· 평정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인사담당자
- 확인자 ·····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

평정기준

- 가점 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시점 〉

〈심사〉 :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자 〈시험〉 : 합격자 발표일자

총 괄(총 1.5점 만점)

구 분	계	언어능력 등		자격증	전문교육
		국어능력	외국어능력		학위취득
배 점	1.5점	0.3	0.5	0.5	0.5
배점상한	1.5점	0.5		0.5	0.5

언어능력 가점 …… 최고점 0.5점

▶ 가점평정 : 국어능력 + 외국어능력 → 두 항목 합산 0.5점 초과금지

구 분	국어능력(0.3)			외국어능력(0.5)		
	1급	2급	3급	·토익 870점 이상 ·토플 PBT 590점 이상 CBT 247점 이상 ·텝스 447점 이상 기존 798점 이상 ·LATT 68점 이상 ·일어(JLPT) 1급 이상, (JPT) 71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 H.S.K) 6급 이상 ·서울대·외대 90점 이상	·토익 790점 이상 ·토플 PBT 567점 이상 CBT 223점 이상 ·텝스 387점 이상 기존 701점 이상 ·LATT 64점 이상 ·일어(JLPT) 2급 이상, (JPT) 54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5급 이상 ·서울대·외대 80점 이상	·토익 730점 이상 ·토플 PBT 547점 이상, CBT 210점 이상 ·텝스 346점 이상 기존 634점 이상 ·LATT 60점 이상 ·일어(JLPT) 3급 이상, (JPT) 41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 H.S.K)4급 이상 ·서울대·외대 70점 이상
평정점	0.3	0.2	0.1	0.5	0.3	0.2

- 서울대 · 외대 어학검정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 환산하여 반영

  ※ 외대 어학검정 : 한국외대 FLEX(정기시험), 부산외대 FLAT(수시시험 포함)

▶ 국어능력

- 「국어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 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가점

  ※ 인증시험(성적표 발행일로부터 2년 유효) 및 시행기관

구분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시행	KBS한국어진흥원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한국국어능력 평가협회

- 외 국 어
  - 영어(TOEIC, TOEFL, TEPS, FLEX),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 외국어 가점은 등급별 배점기준에 의하고, 점수 인정 유효기간은 성적표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단, 강등된 경우 강등 이후 검정한 것만 인정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평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함
- 등급별 배점 : 국어 0.3점 + 외국어 0.5점 = 상한 0.5점

  ※ "언어능력 및 자격증별 배점 기준(서식 5-12, 5-13)" 참조

자격증 가점 …… 최고점 0.5점

- 가점평정 : 최고 0.5점 초과금지
- 평가대상
  - 임용 전 신임교육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임용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아래에서 규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점평가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 자격증별 배점

자 격 증				
기계·전기·해양·안전관리·통신·전자·환경·항공·조선·화공·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기능장, 해기사 2급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해기사 3급,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기계·전기·해양·안전관리·통신·전자·환경·항공·조선·화공·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해기사 4급, 응급구조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급 생활체육지도사	기계·전기·해양·안전관리·통신·전자·환경·항공·조선·화공·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해기사 5급, 응급구조사 2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2급 생활체육지도사	선박교통관제사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평가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자격증 중 1개만 인정
-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 포함)에서 취득한 것
- 동종의 상위등급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 인정하나, 상위등급 자격증으로 가점을 받은 자가 승진 후 동종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점 불인정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경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경위)

전문교육 가점 …… 최고점 0.5점

▶ 가점평정 : 학위 취득

▶ 평가대상

- 학위취득 :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국내·외 학위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교육 및 학위 취득한 경우도 인정

▶ 전문교육 등 가점

구 분	학위취득		
	박사	석사	학사
평정점	0.5	0.3	0.2

04 법령개정 전 가점평정 산정방법

2011. 4. 1 이전 취득 또는 국외연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부칙"(2010. 12. 29 개정)

▶ 전산능력 가점(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 1급 : 0.5점, 2급 : 0.3점, 3급 : 0.2점

▶ 6시그마 가점

- 6시그마MBB : 0.5점, 6시그마BB : 0.4점, 6시그마GB : 0.2점

▶ 국외연수(외국대학 및 대학원이수, 해외주재관, 국제기관 파견 등) 가점

- 2년 이상(0.5점), 1년 이상(0.3점), 6월 이상(0.2점), 3월 이상(0.1점)

※ 개정 전 국외연수 가점과 현행 언어능력 가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13. 4. 30 이전 취득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부칙"(2013. 4. 5 개정)

▸ 자격증 가점

구 분	평정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교통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0.5
법무사, 행정사, 워드프로세서 1급, 6시그마MBB	0.3
공인중개사, 교통분야의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급, 6시그마BB	0.2
6시그마GB	0.1

05 평정 절차

평정기술서 작 성	➡	평정기술서 제 출	➡	가점확인	➡	가점평정
피평정자		피평정자→인사부서		인사부서		인사부서

▸ 유의사항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미경과자는 가점평정표를 작성하지 않고, 가점은 승진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음을 사전 설명
- 가점평정대상기술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전년도에 제출한 증빙서류 미 인정

06 관련 서식

▸ (서식 5-10) 경력·가점 평정표

▸ (서식 5-11) 가점평정대상 기술서

▸ (서식 5-12) 언어능력 가산점

▸ (서식 5-13) 자격증 등 가산점

총경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
- 인사담당관-1172(2019.02.14)호 "총경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기본계획"

02 평가 절차 (총괄)

1 단 계 · · · **역량평가서(직무성과기술서 및 Vision 추진계획서) 제출**

- 대 상 : 승진심사 대상 6배수 이내 예정자
- 직무성과 : 경정 업무성과 중 대표적 추진업무(3개) 기술
- 비전계획 : 승진 시 이루고자 하는 Vision과 추진계획 기술

↓

2 단 계 · · · **역량평가서 온라인 검증(필요시 현장·서면검증)**

- 대 상 : 역량평가서 제출자
- 검증내용 : 작성자료의 정확성·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 검증방법 : 온라인 공개를 통한 동료의견 평가

↓

3 단 계 · · · **역량평가서(직무성과 · Vision 추진계획서) 서면평가**

- 대 상 : 역량평가서 제출자
- 평가위원 : 별도 구성(내·외부 5~7인)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 내에서 정성평가

↓

4 단 계 · · · **면접(인터뷰) 평가**

- 대 상 : 승진심사 대상 5배수 이내의 자
- 평가진행 : 자유발표(3분)·인터뷰(10분)·평가(2분)
- 평가방법 : 정책기획, 상황판단, 조직관리, 동기부여, 의사 소통, 리더십 등 총경에 필요한 역량 측정

03 평가 대상

- 역량평가서 작성·제출 : 승진심사 6배수 이내의 예정자
- 역량평가서 온라인 제출 : 역량평가서 제출자
- 역량평가서 서면평가 : 역량평가서 제출자
- 면접평가 : 승진심사 5배수 이내의 자

04 세부평가 절차

1단계 : 역량평가서(직무성과기술서 및 Vision 추진계획서) 작성·제출

- 주　관 : 인사담당관
- 작성 및 제출기간 : 20××. ××. ×× ~ ××. ××(××일간)
- 작성내용
  - 〈자 기 소 개〉 : 인적사항, 승진기록, 주요경력 및 역량개발 등
  - 〈직무성과 기술서〉 : 경정(승후 포함) 업무성과 중 대표적 추진업무(3개) 기술
  - 〈Vision추진계획서〉 : 총경 승진하여 보직예정인 본청·지방청 과장, 서장 직위의 주요정책 Vision과 Vision달성 추진 계획을 기술
- 작성요령 : '역량평가서(서식 5-12)'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개인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후 인사담당관실 메일 송부
- 역량평가서(직무성과기술서, Vision 추진계획서)는 업무포탈에 게시하여 동료검증 실시

  ※ 허위 또는 과장된 직무기술서의 단위추진업무는 불이익 처리

2단계 : 역량평가서 온라인 검증

- 주　관 : 인사담당관
- 기　간 : 20××. ××. ×× ~ ××. ××(××일간)
- 검증방법 : 온라인 공개를 통한 동료의견 평가
- 검증내용

  ① 직무성과기술서의 허위·과장 및 주도적 추진여부 등

  ② Vision 추진계획서의 창의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3단계 : 역량평가서 서면평가〈60점〉

- 주　관 : 인사담당관
- 평가기간 : 20××. ××. ×× ~ ××. ××〈기간 중 실시〉
  ※ 집행계획 별도수립
- 평가위원 : 별도 위원 구성(5 ~ 7명)
- 평가배점 : 직무성과기술서(36점) + Vision 추진계획서(24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검증결과 반영
    ※ 단위업무별 감점 조치

- 피평가자 최종점수는 위원 중 최상·최하위 점수를 배제하고 나머지 위원 평균점수 부여
- 최상 또는 최하위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명만 배제하고 나머지 위원들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 부여

- 세부 평가방법

❶ 직무성과기술서〈36점〉

1) 평가대상 : 직무성과기술서에 기술된 3개 단위업무 평가

2) 평가점수 : 총36점(1개단위업무당12점) … 3개단위업무×12점=36점

- 피평가자는 해당 계급(승후 포함)에서 수행한 3개의 단위과제를 기술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리, 3개 과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다만, 업무의 연속성과 동일성으로 인하여 과제분류가 곤란하여 1개의 대단위 업무 안에 3개의 소단위 업무를 기술한 경우에 각각의 차별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과제로 평가

---

3) 평가방법

- 단위업무별 ①업무 난이도(3점), ②단위업무 완성도(4점), ③적시성(2점), ④조직기여도(3점) 등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 본청과 소속기관, 기획업무와 현장 집행업무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위원들 개별적으로 평가하되,필요시 평가위원들간 단위업무별로 부여하는 평가등급 협의 가능
- 평가등급 내에서 배점은 위원별 자율적으로 하되, 정수로 평가

등급	배점	평가기준
수	12~10점	- 단위업무 성과가 탁월하여 조직발전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경우
우	7~9점	- 단위업무를 잘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양	4~6점	- 단위업무를 문제없이 완수하였으나, 성과 향상이 크지 않은 경우
가	3점미만	- 단위업무의 이행이 미흡하고, 조직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등

❷ Vision 추진계획서〈24점〉

1) 평가대상 : 2개 직위(과장·경찰서장)의 Vision 추진계획서 평가

2) 평가점수 : 총24점(1개직위 당12점) … 2개직위×12점=24점

- 피평가자가 총경으로 승진하여 본청·지방청 과장과 경찰서장으로 보직될 경우 추진할 2개의 Vision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리하므로 본청·지방청 과장과 경찰서장 2개 직위 Vision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청·지방청 과장으로서의 Vision 추진계획서와 경찰서장으로서의 Vision 추진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과장 2개 또는 경찰서장 2개를 작성한 경우과장 또는 경찰서장 Vision 추진계획서 1개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3) 평가방법

- 각 직위별 Vision 추진계획의 ①창의성〈4점〉, ②구체성〈5점〉, ③성과창출 가능성〈3점〉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 본청과 소속기관, 기획업무와 현장 집행업무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위원들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위원들간 단위업무별로 부여하는 평가등급 협의 가능
- 평가등급 내에서 배점은 위원별로 자율적으로 하되, 정수로 평가

등급	배점	평가기준
수	12~10점	- 새로운 제도 도입, 업무혁신 등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탁월한 성과창출 또는 조직발전 가능성이 높음
우	7~9점	- 새로운 제도·업무영역 확대·발전으로 성과창출 가능성 있음
양	4~6점	- 현행 제도·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약간의 업무발전이 예상
가	3점미만	- 업무·제도·조직발전 등이 예견되지 않고 현행 답습 수준

▶ 역량〈서면〉평가 점수 산정

- 역량평가서에 대한 온라인 검증자료를 제공하여 허위〈0점 처리〉, 과장 또는 보조〈-3점〉, 해양경찰과의 관련성 없음〈0점 처리〉 및 이행 불가능〈-3점〉 여부의 판단을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단위업무별·직위별 직무성과기술서 및 Vision 추진계획 평가점수에 위원회에서 정한 "0점" 및 "감점〈-3점〉"을 합산하되, 합산한 최저점은 "0점"보다 작을 수 없음
- 평가방법에 따라 평정점수를 합산하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4단계 : 면접평가〈40점〉

▶ 주　관 : 인사담당관

▶ 평가기간 : 20××. ××. *승진예정인원 확정시, 집행계획 별도수립

▶ 평가위원 : 별도 구성

-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총경 이상〉·외부전문가 5~7인으로 구성〈위원장 포함〉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은 50%로 구성
- 위원 중 국장급 이상 선임자가 위원장 직무 수행

▶ 평가배점 : 40점

▶ 평가방법 : 총경 승진예정자의 5배수 이내의 자

▶ 평가진행〈1인15분이내〉 : 자유발표〈3분〉 ▸ 인터뷰〈10분〉 ▸ 평가〈2분〉

※ 피 평가자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표·인터뷰 시간 준수(시간초과시 강제종료)

▶ 평가방법 : 자유발표·인터뷰를 통해 총경에 필요한 역량 측정

- 총경 소요(측정) 역량 : ①정책기획, ②상황판단, ③성과관리, ④조직관리, ⑤동기부여, ⑥의사소통, ⑦이해관계 조정, ⑧리더십

〈계층별 역량구조〉

계 층	소요 역량
실 무 자	기획력, 논리적 사고, 상황인식, 의사소통
과 장 급	정책기획,상황판단,성과관리,조직관리,동지부여,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리더십
국 장 급	전략적사고, 문제인식, 변화관리, 성과지향, 고객지향, 조정·통합

▶ 세부 평가방법

❶ 자유발표 및 인터뷰〈40점〉

자유발표·인터뷰 중 피 평가자 대상 총경급 소요역량(①~⑧)을 자연스럽게 측정

1) 자유발표〈3분〉 : 피 면접자가 인적사항, 주요경력, 직무성과 및 Vision 추진계획 등 본인 소개를 자유스럽게 설명

2) 인터뷰〈10분〉 : 피 면접자 대상 직무성과기술서, Vision 추진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위원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면접 평가

– 각 위원은 사전에 배부되는 "역량평가서"를 참고하여 인터뷰 질문

– 인터뷰는 피 평가대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 다만, 조직 현안사항 또는 공통되는 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가능

3) 평가·측정 요소 : ①정책기획, ②상황판단, ③성과관리, ④조직관리, ⑤동기부여, ⑥의사소통, ⑦이해관계 조정, ⑧리더십

4) 평가 방법 : 평가요소〈①~⑧〉별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의 5단계로 위원별 절대평가

5) 면접평정점 산정 : 위원별로 평가요소별 평점을 합산하여 최상·최하위 위원의 점수는 배제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 평정점을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피 평가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평가 점수는 0점 처리

05 역량평가 활용

▶ 최종점수 산정 : 서면평가〈60점〉 + 면접평가〈40점〉

- 개인별 서면평가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선순위 비율에 따라, 4개〈수·우·양·가〉 등급으로 점수 부여

등 급	수	우	양	가
비 율	20% 이내	20%초과 ~ 60%이내	60%초과 ~ 90%이내	90% 초과
등급 점수	10점	8점	6점	4점

※ 총경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의 사람 중 역량평가 포기·불참자는 "0점" 처리

- 역량평가 결과 활용 : 총경 심사승진위원회의 적성평가에 반영
  - 역량평가 결과(10점)와 승진심사위원회가 자체 평가한 적성점수(10점)를 합산(50%:50%)하여 최종 적성순위 산정
  - 최종 적성순위에 따라, 수〈20%〉·우〈40%〉·양〈30%〉·가〈10%〉로 환산하여 "적성" 점수에 반영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및 제21조(승진심사자료)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07 관련 서식

- (서식 5-14) 역량평가서〈직무성과기술서 및 Vision 추진계획서〉
- (서식 5-15) 면접〈인터뷰〉 평가서

서식 5-1

'강등'관련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 지침

검토 배경

- 강등된 자의 강등 기간 중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 근무성적평정·상훈점수 인정 등 승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이 많아 적정한 승진업무처리를 위한 기준 설정 필요성 제기

'강등'된 자의 승진소요연수·근속기간 산정

-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 평정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6조,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산정
  - 원칙 : 강등되기 이전일지라도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전 기간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 평정 기간에 산입
  - 제외 기간 : 강등에 따른 징계처분 기간(정직3월+승진임용제한기간 18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규정 제5조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간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규정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이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 18개월

– 시행규칙 제10조

③ 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5. 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 사례 1 : 경사 6년 근무, 경위 승진 4년 근무, 경사로 강등

- 경사 근무경력 10년(경사 6년 + 경위 4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21개월) 경과시 경위 근속·심사·시험 가능

● 사례 2 : 경사 3년 근무, 경위 승진 1년 근무, 경사로 강등

- 경사 근무경력 4년(경사 3년 + 경위 1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21개월) 경과시 심사·시험 가능

● 사례 3 : 경위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 2년 근무

- 경위 근무경력 6년으로 심사·시험 가능

● 사례 4 : 경위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 8년 근무

- 경위 근무경력 12년으로 경감 근속·심사·시험 가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규정 제9조

① 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강등시 경력 인정〉

구분	경 사	경 위	경 사 (강등)	경 위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재 승진시		경력 인정	경력제외	경력 인정
경위에서 경사 강등	경력 인정			

‘강등’된 자의 근무성적평정

● 사례 1 : 강등 후 소청·소송으로 정직·감봉으로 변경된 경우

- 근무성적평정 실시 前이면 원 계급으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강등된 계급으로 근평을 실시했으면 원 계급 해당연도 근무성적으로 사용 불가. 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준용하여 전년도 또는 전·후년도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해당연도 평정점으로 활용

● 사례 2 : 파면·해임 후 소청·소송으로 강등·정직으로 변경된 경우

- 근평 실시 전이면 강등 또는 정직 계급으로 근무성적평정 실시(단, 해당연도 9. 2 이후 강등 임용의 경우에는 2개월 미만 근무자로서 근무평정 미 실시)

※ 근평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준용하여 전년도 또는 전·후년도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해당연도 평정점으로 활용토록 하고 전·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 부여

‘강등’된 자의 상훈 점수

- 경찰공무원 상훈 점수는 당해 연도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 2단계 평가요소로 사용
  - 상훈 점수는 당해 계급에서 수여 받은 것에 한한다. 단,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용예정 계급의 “상”에 포함
  - 경사로 강등시, 강등 이전 경사에서 취득한 상벌 점수 인정. 경위로 승진시 이전의 경위에서 취득한 상벌도 경위 상벌 점수로 인정
  - 경위에서 경사 강등으로 인한 벌점 30점은 강등 당시 원계급인 경위로 재승진시 상벌 점수로 인정

    ※ ‘강등’에 상응한 상벌 점수를 강등 전 원계급에 사용(상벌상계도 동일)

- 사례 1 : ’07. 6. 1 경위로 임용된 후 ’10. 6. 1 강등된 경우
  - 강등 직전 경사에서 취득한 상점(경사 임용부터 ’07. 5.30까지)은 경사 강등 후에도 인정

    ※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상벌점수 적용기간은 당해 계급에 한한다.

- 사례 2 : ’09.5.1 경위로 임용, ’10.5.1 강등, ’13.11.1 경위로 승진
  - 강등 직전 경위(’09.5.1~’10.4.30)에서 수여 받은 상벌 점수와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한 이후의 상벌 점수 합산. 단 강등으로 인한 벌점 30점은 강등 당시 당해 계급인 경위로 재승진한 후 감점

‘강등’된 자의 심사승진시「경험한 직책」·「승진기록」관련

-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2단계 객관 5개 평가 항목 중 상위 계급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계급에서의 전문 분야(경험한 직책) 및 근속기간(승진기록)을 평가
  - 원칙 : 상위계급 승진자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 기능 및 기간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기간 계산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준용

    ※ 단, 이에 의하면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도 인정되므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8항은 제외하고 인정 필요

- 사례 : 경사 → 경위(승진) → 경사(강등),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계산
  - 경사(강등)에서 경위 재승진시 규정 5조 ⑦항 적용가능, ⑧항은 제외

‘강등’된 자의 가점 관련

-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2점) 활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

  - 원칙 : 계급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가점만 인정

    ※「승진업무처리지침」상 가점 평정 기준 가점 평정항목은 해당계급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이후에 취득한 가점에 한한다.

    ※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시점
    심사 :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시점, 시험 : 합격자 발표일자

  - 쟁점 : 국어·외국어능력 가점은 해당 점수를 취득한 유효기간(검정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동안만 인정하는데 강등된 자의 경우 강등된 계급에서 활용 가능한지

  - 가점 인정의 통일성 유지 및 당해 계급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시 사용되는 것을 고려,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언어능력 가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

근무성적평정표 (총경)

• 피평정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 평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분포비율
수 (47점 이상) 2할
우 (40점~46.75) 4할
양 (25점~39.75) 3할
가 (24.75점이하) 1할

1. 근무수행실적·능력·태도

평가요소 및 배점 / 평정기준 / 평정차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차 평정자 계급 성명
	① 직무의 양	② 직무수행의 정확성	③ 직무수행의 신속성	④ 지식 및 기술	⑤ 이해 및 판단력	⑥ 기획 및 창의력	⑦ 관리 및 지휘력	⑧ 성실성 및 규율준수	⑨ 친절 및 협조성	⑩ 적극성 및 책임성	2차 평정자 계급 성명
	담당직무를 어느정도로 많은양을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직무를 어느정도로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직무를 미결없이 어느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가	담당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판단을 내리는가?	담당직무수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가?	부하직원과 인화단결하고 민주적인방법에 의하여 통솔하고 있는가?	담당직무에 성실하고 상사의명령에 복종하고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상사·동료간 및 대민관계에 있어 인화 협조에 노력하고 있는가?	직무수행에 있어 왕성한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어느 정도인가?	3차 평정자 계급 성명
1·2차평정 점수	수 1.5 / 우 1.25 / 양 1.0 / 가 0.5	수 1.0 / 우 0.75 / 양 0.5 / 가 0.25	수 1.0 / 우 0.75 / 양 0.5 / 가 0.25	수 1.0 / 우 0.75 / 양 0.5 / 가 0.25	수 1.5 / 우 1.25 / 양 1.0 / 가 0.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0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0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0	수 1.5 / 우 1.25 / 양 1.0 / 가 0.5	수 1.5 / 우 1.25 / 양 1.0 / 가 0.5	평정점수
1차 (15)											
2차 (15)											
3차평정 점수	수 2.0 / 우 1.72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수 2.0 / 우 1.75 / 양 1.5 / 가 1.25	평정점수
3차 (20)											
기 타 (참고사항)											총 점

※ 평정요령은 평정요소별 해당란에 "○"표로 표시한다.

2. 성 격(피평정자에 특징적인 것, 4가지 이상 선택 "○" 표시)

요 소 별		1차평정	2차평정
⑪ 지도력	민주형		
	자유방임형		
	군림권위형		
⑫	근면성실		
⑬	안일무사		
⑭	솔선수범		
⑮	무책임		
⑯	인화단결		
⑰	파벌조성		
⑱	협조·타협적		
⑲	이기·독선적		
⑳	겸손·공손		
㉑	편견·아집		
㉒	순응적		
㉓	반발적		
㉔	자제적		
㉕	감정적		
㉖	적극적		
㉗	소극적		

3. 적 성

	1차평정			2차평정		
	적합	보통	부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㉘ 지휘관						
㉙ 참 모						
㉚ 기획요원						

4. 발전성

요소별		1차평정	2차평정
㉛	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㉜	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보통이다		
㉝	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이다		

5. 세평

㉞	아주 좋다		
㉟	보통이다		
㊱	나쁘다		

6. 물욕관계(청렴도)

㊲	문제될 것 없다		
㊳	함부로 물품을 받는 버릇이 있다		
㊴	대내외인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다		

7. 음주관계

㊵	전혀 마시지 않는다		
㊶	분별하여 마신다		
㊷	마시면 이성을 잃는다		

8. 이성관계

㊸	문제 될 것 없다		
㊹	항상 문제가 된다		

9. 가정관계

㊺	원만(건전)하다		
㊻	보통이다		
㊼	불건전하다		

10. 건강상태

㊽	건강하다		
㊾	보통이다		
㊿	허약하다		
(51)	질병중이다		

근무성적평정표 (경정이하)

• 피평정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평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제 1 평 정 요 소

	경찰업무발전 기 여 도	포 상	직장훈련	견문제출	근 태	계
배점	5	5	5	3	2	20
내용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하되, 부표1에 의한다	상벌점수를 상계하되, 부표 2에 의한다.	사격·체력검정 및 능력개발등을 평가하되, 부표3에 따른다.	견문제출, 견문 활용도에 따른 능력을 평가 하되, 부표4에 의한다.	근태사항을 평가하되, 부표5에 의한다.	제1평정소계
1차 평정						
2차평정 (확 인)						
3차 평정 (확 인)						
비 고						

※ 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 평정자는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
※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제 2 평 정 요 소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 력		직무수행 태 도		계	총계	단계별 평정자
배점	9.5		11		9.5		30	50	
내용 내용	• 담당직무의 양 • 직무수행 정확성 • 직무수행 신속성		• 직무지식 및 기술 • 직무의 이해력 • 창의및기획력 • 관리및통솔력		• 성실및준법성 • 친절및협조성 • 적극및책임성		제2평정소계	제1평정+ 제2평정	**1차 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차 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차 평정	3.5		4		3.5				
2차평정 (확 인)	3.5		4		3.5				
3차 평정 (확 인)	3.5		3		2.5				

※ 제2평정요소 분포비율 : 수 (20%) 29점 이상, 우 (40%) 26점 이상 29점 미만
양 (30%) 20점 이상 26점 미만, 가 (10%) 20점 미만

평가자료부

평 점 계		
업무기여도	첩 보	근 태

소속 : 00해양경찰서 0000과
계급 : 경 위　성명 : 홍 길 동 (弘 吉 東)

월별	경찰업무발전기여도	첩 보	평 점	근 태	평 점	확 인 자 / 기 록 자
18/11		정보과-000 (10.12.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12	• **기여도 : 00.000점**	정보과-000 (11. 1.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19/1	• **표 창** '17.10.26 해양경찰 청장(제00호) 5점 '18.12.23 해양경찰 청장(제00호) 5점 **계 10점**	정보과-000 (11. 2.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2		정보과-000 (11. 3.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3		정보과-000 (11. 4.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4	• **징계 : 없 음**	정보과-000 (11. 5. 5)	0.005			경정 0 0 0 / 경위 0 0 0
5		정보과-000 (11. 6.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6	표창점수 10점 **(5점)**	정보과-000 (11. 7.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7		정보과-000 (11. 8.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8	• **직장훈련 : 0.000점** 교육담당관-00(18.00.00)호	정보과-000 (11. 9.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9		정보과-000 (11.10. 5)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10		정보과-000 (11.11. 1)	0.000			경정 0 0 0 / 경위 0 0 0

기록자 계급 경위 박 길 동 (인)
확인자 계급 경정 이 길 동 (인)

근무성적 평정권자 지정

총 경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본 청	국·관	국장(관)	차 장	청 장
	직속기관	차장		
	파견자	기획조정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안전국장		
지방청		지방청장		
해경서장		지방청장		
교육원		원장		

총 경

소속(직위) \ 평정권자		1차	2차	3차
본 청	과장급	국장	차장	청 장
	직속기관계장(팀장)	과장	차장	
	국·관 계장(팀장)	과장(담당관)	국장(관)	
	비서실	차장	차장	
	파견자	인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단장	구조안전국장	
지방청	경정 과장 (특공대장·항공단장 상황실장)	지방청장	기능국장 (경비, 장비)	
	청문감사담당관	지방청장	차장	
	계 장(센터장)	과장(경비과장)	지방청장	
	서특단(과장·함장)	단장	지방청장	
	경정과장	원장	차장	
	계장(훈련단·함)급	과장	원장	
	연구센터	센터장	원장	
경찰서	과장·함장	서장	지방청장	
정 비 창		창장	장비국장	

경 감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본 청	국·관(계장)		계장(과장)	과장(국장)	국장
	직속기관(계장)		계장(과장)	과장(차장)	차장
	파견자		인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차장
중특단	팀원·팀장(지역대장)		팀장·지역대장(단장)	단장	구조안전국장
	잠수지원함		함장		
지방청	계장(센터장)		과장(구조안전과장)	지방청장	지방청장 *부장의견
	계 원		계(팀)장	과장	지방청장
	청문·항공·특공	담당관·단장·대장	지방청장	지방청장	지방청장
		계원(팀원)	담당관·단장·대장		
	부장소속 계장		과장	부장	지방청장
	부장소속 계원		계(팀)장	과장	지방청장 *부장의견
	서특단	과장	단장	단장	지방청장
		함장	경비작전과장		
		계장, 특수진압대(함정 소속)	과장(함장)		
해경서	과장		서장	서장	지방청장
	함장 (방제정장)		경비구조과장(해오과장)		
	파출소장		해양안전과장		
	계원(계장, 함정, 파출소 소속)		과장, 함장, 파출소장		
정비창	과장		창장	창장	창장
	계장		과장		
교육원(계장급)			계장(과장)	과장(원장)	원장
연구센터			팀장	센터장	원장

본청 경위 이하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국·관(비서실)	계장(비서실장)	과장(운영지원과장)	국장(차장)
직속기관	계장	과장	차장
파견자	인사운영팀장	인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차장실	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과장	차장

지방청 경위 이하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청문·항공·특공대				담당관·대장·팀장	지방청장·단장·대장	지방청장
課소속				소속계장	소속과장	지방청장
서특단	육상	본단 課(계장)		소속계장(과장)	소속과장(단장)	단장
		특수진압대		대장	경비작전과장	
	해상	1000톤급 이상 (경감 직위 부서장)		부서장(함장)	함장(단장)	단장
		500톤	부서장	함장	기능과장	단장
			경위 이하	부서장	함장	

지방청 경위 이하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課 소속	팀장	단장	단장
지역대	팀장	대장	
잠수지원함	부서장	참장	

교육원 경위 이하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課 소속(연구센터)	소속계장(팀장)	소속과장(센터장)	원장(센터장)
훈 련 함	부서장	함장	원장

※ 훈련함 내 항해·기관·통신부서를 제외한 기타 부서는 果단위로 편성하여 평정

정비창 경위 이하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계장, 정장	과장	정비창장	정비창장
계원	계장(정장)	과장(정비창장)	

지방청 경위 이하

소속(직위) \ 평정권자			1 차	2 차	3 차
육상	경찰서 課(계장)		소속계장(과장)	소속과장(서장)	서 장
	파출소 (출장소)	팀장(소장) 일근자	파출소장	해양안전과장	
		경위이하	팀장	파출소장	
해상	1000톤급 이상 (경감직위 부서장)		부서장(함장)	함장(서장)	
	250~500톤	부서장	함장	기능과장	
		경위 이하	부서장	함장	
	소형정 /예인·소방정	정 장	기능과장 (경비과장)	서장	
		경위 이하	정장	기능과장	
	형기정 /방제정	정 장	수사/방제과장	서장	
		경위 이하	정장	수사정보/방제과장	

※ 250~500톤 부서장은 부장(기관부서 이외, 통신 포함 부서원), 기관장(기관부서원)

〈유의사항〉

1.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동일한 계급인 경우에도 평정권 부여
2. 승진후보자가 평정권자로서 승진된 직위에 보직된 경우 승진자로 보고 평정권 부여
3. 건조감독관은 본청에서 평가(1차 함정사업계장, 2차 장비기획과장, 3차 장비기술국장)
4. 평가권자가 교대근무시 차별 평가 금지
5. 소속기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청 승인 후 시행

서식 5-4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배점
기본근무 점수 (12점)	·27일 이상 근무	월	1.0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	월	0.8
	·23일 이하 근무	월	0.6
업무수행 점수 (3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인명구조, 조난선박 등 구조 및 지원 업무 – 선박 안전관리, 각종 안점점검 등 예방활동	건	0.1
	·범죄 예방, 각종 해양범죄 단속·수사 및 감찰조사 업무	건	0.5
	·고소·고발·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처리	건	0.1
	·해상경비·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업무	회	0.1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회	0.1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	회	0.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회	0.1
	·각종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등 개발업무	건	0.1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업무 지원	회	0.1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시행·결재	회	0.1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업무	회	0.1

※ **비 고**

1.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에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승진일부터 산정한다.
2. 근무라 함은, 휴일·연가(휴가, 병가 등)·출장·파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직위해제·징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위 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점으로 하고,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4. 파견, 장기교육 대상자는 업무수행 점수를 3점으로 한다.
5. 그 밖에 경찰업무에의 발전기여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서식 5-5

포상 평가기준

상		벌	
훈격별	점수가점	징계·경고 구분	점수감점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표창	20 15 12 7 5	• 강등 • 정직 3월 • 정직 2월 • 정직 1월 • 감봉 3월 • 감봉 2월 • 감봉 1월 • 견책(영창·근신 포함)	30 25 20 15 10 8 6 4
•청의 장·통합방위본부장·각군 참모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군사령관의 표창	4	• 경고 및 주의 – 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군단장(교육사령관 포함)의 표창	3	· 불문경고 · 직권경고 · 주의 – 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	2 1 0.5
•101단장·기동단장·사단장·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정비창장·해양경찰연구센터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표창	2	· 불문경고 · 직권경고 · 주의 – 해양경찰연구센터장·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함정장	1 0.5 0.25
•지방검찰청지청장·여단장 표창 •함정장·연대장 표창	1.5 1	· 불문경고 · 직권경고 · 주의	0.5 0.25 0.1

※ 비 고

1. 군의 표창은 대간첩작전, 비상대비 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해당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해당한다.
3. 상과 벌의 적용기간은 해당 계급으로 한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평정점은 "상"의 점수합계에서 "벌"의 점수합계를 뺀 점수의 2분의 1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5. 종전의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은 각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서식 5-6

직장훈련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산	비 고
체력검정	8	• 연 1회 • 종목별 1등급 4등급(5점 ~ 2점)으로 구분 • 종목별 합산점수/종목 수	경정 이하만 해당하고, 체력검정의 평가종목 및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능력개발	7	• 경정 이하: 7×(취득점수/100)	경정 이하만 해당하고,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능력개발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평정점: 평가기준별로 평정대상자가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서식 5-7

근무수행태도 평가기준

구 분	감점점수	비 고
- 무단결근 - 근무지시 위반 - 경위서 - 소집불응	1회당 0.1점	1. 적용기간 :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2. 2점에서 감점점수를 뺀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점수를 0점으로 한다.

서식 5-8

견문제출 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배 점</th></tr>
<tr><td rowspan="2">평가</td><td>기본점수
(2점)</td><td>1. 평가방법(월별)
$\frac{1}{6} \times \frac{\text{실제제출건수}}{\text{기본제출건수}}$
2. 월 기본제출건수
가. 정보 외근근무자: 10건
나. 수사·형사·보안·외사 외근근무자: 2건
다. 그 외 근무자: 1건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평가한다.
다만, 월 0.16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td></tr>
<tr><td>평가</td><td>능력점수
(1점)</td><td>1. 능력점수 배점
<table>
<tr><th>구 분</th><th>특보·판단</th><th>중보</th><th>통보</th><th>기록·조사</th></tr>
<tr><td>정보 외근근무자</td><td>0.083</td><td>0.042</td><td>0.021</td><td>0.010</td></tr>
<tr><td>수사·형사·보안·
외사 외근근무자</td><td>0.083</td><td>0.083</td><td>0.083</td><td>0.042</td></tr>
<tr><td>그 외 근무자</td><td>0.083</td><td>0.083</td><td>0.083</td><td>0.083</td></tr>
</table>
2. 평가방법 = 실제제출건수 X 배점
※ 월 0.08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td></tr>
</table>

※ 비고
1.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한다.
3. 타 기관 파견자 및 휴직자 등은 기본점수로 평가하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능력점수를 평가

서식 5-9

서열명부(총경)

작성자 계급 : 성명 : (인)

순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 임 명	근 무 성 적					평정점	비 고 (차하급 임 명)
				1차	2차	3차	소계	순위		
1	00과 0 0 0	홍길동 (61.7.23)	01.07.20	14.00	15.00	20.00	49.00	3	49.50	94.12.25
2										
3		【 작 성 요 령 】								
4		◦ 위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고 성명 하단에 ( ) 한 후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								
5										
6		◦ A4용지 1매당 15명씩 작성								

※ 예시에 있는 홍길동의 평정점 49.50은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표에 따라 나온 최종 평정점임
※ 확인자 : 3차 평정권자.

서열명부(경정이하)

작성자 계급 : 성명 : (인)

순위	소 속	계급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성 적							총 점	현급임명 (차하급 임 명)
				제1평정 요소	제2평정요소							
					1차	2차	3차	소계	순위	평정점		
1	00과 0 0 0	경위	홍길동 (61.7.23)	27.321	7.500	7.500	4.875	19.875	3	19.750	47.071	01.12.25 (97.12.5)
2												
3		【 작 성 요 령 】										
4		◦ 위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고 성명 하단에 ( ) 한 후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										
5												
6		◦ A4용지 1매당 15명씩 작성										

※ 예시에 있는 평정점 19.750은 근무성적 평정분포 비율표에 따라 나온 최종 평정점임
※ 확인자 : 3차 평정권자

서식 5-10

경력 · 가점 평정표

평 정 대상자	소속		평정자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확인자	직위	
	현 계급 임명 연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력	구분	현 계급 재직기간	산입 또는 제외 기간	경력 평정기간	평정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기간	이수여부

구분		종류	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	평정점
언어능력	국어 검정점수			
	외국어 검정점수			
자격증				
전문교육	직무전문화교육			
	학위 취득			
			계	

※ 비고: 경력 평정 시 산입기간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적용기간을 기재한다.
1. 산입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5급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 재임용전의 경찰경력
2. 제외기간: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정직)

서식 5-11

가점평정 대상 기술서

작성자 계급 : 성명 : (인)

작성자 (본인)	소 속			확인자 (부서장)	소 속	
	계 급		현 계 급 임명일자		계 급	
	성 명	(인)			성 명	(인)

구 분		종류, 점수, 국가·기관, 학위명	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자	비고
언어 능력	국 어			
	외국어			
자 격 증				
전문 교육	학 위 취 득			

1. 국외연수 : '11. 4. 1 이전 국외연수자는 외국어 가점평가 란에 기술하고 외국어능력 가점과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외국어 검정능력 등 자격증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가점평정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
3. 학위취득 가점은 당해계급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취득 경우에 인정
4. 확인자는 자격증 등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함

서식 5-12

언어능력 가산점

구분	국어능력(0.3)			외국어능력(0.5)		
	1급	2급	3급	토익 870점 이상	토익 790점 이상	토익 730점 이상
평정점	0.3	0.2	0.1	0.5	0.3	0.2

비고

1. 국어능력 및 영어 등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평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의 영어능력평가시험이나 일본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 등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평정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 표의 토익취득점수에 대하여 부여하는 평정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5-13

자격증 등 가산점

구분			평정점
자격증 (0.5)	기계 · 전기 · 해양 · 안전관리 · 통신 · 전자 · 환경 · 항공 · 조선 · 화공 ·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 기능장, 해기사 2급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0.5
	해기사 3급,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0.4
	기계 · 전기 · 해양 · 안전관리 · 통신 · 전자 · 환경 · 항공 · 조선 · 화공 · 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해기사 4급, 응급구조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한정하고,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 · 연구 · 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0.3
	기계 · 전기 · 해양 · 안전관리 · 잠수 · 통신 · 전자 · 환경 · 항공 · 조선 · 화공 · 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해기사 5급, 응급구조사 2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말한다), 인명구조요원(「수상레저안전법」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말한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한정한다), 계기비행증명		0.2
	선박교통관제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0.1
전문 교육 (0.5)	학위취득	박 사	0.5
		석 사	0.3
		학 사	0.2

비고

1. 자격증가산점과 전문교육가산점은 각각 최대 0.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해당 계급 (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임용 전 신임교육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임용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된다.

서식 5-14

역 량 평 가 서

※ 본 역량평가서는 (총경)승진대상자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기재 시 해당부분 감점 등 불이익 처분)

인 적 사 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경찰배명	현 계 급	현 부 서	채용구분
	○○계장	홍 길 동	69. 10. 08	95. 04. 01	14. 12. 08	00. 00. 00	간부후보

종 합 평정점수	60점 만점	확 인	위원장

작 성 자 : 홍 길 동 (인)

1. 자기소개 (인사기록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승진기록		
계급	연도	임용과정
순경	85	특채
경장	90	시험
경사	95	심사
경위	98	시험
경감	01 01	시험
경정	06	시험

주요경력〈現계급〉			
년	월	직 위	기간
05	2	경비안전국 상황실장	1.0
06	2	운영지원과 복지계장	1.1
07	3	기획조정관실 법무팀장	1.0
08	2	태안 1507함장	0.11
09	1	동해 경비안전과장	1.1

역량개발〈現계급〉	
학위 취득	학사(○○대) - 2010. 2. 13
자격 사항	-워드프로세스 3급 : 0.2점

합계 점수	

2. 직무성과 기술서 (36점)

가. 작성자 본인의 당해계급 업무성과 중 대표 적인 업무성과 3가지를 기술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단위업무 : 조직의 전략목표 또는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담당하였던 단위업무명 기재
- 주요실적 : 단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활동을 기재

나. 평가자는 업무의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및 기여도 등을 감안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정

연번	단위업무	주 요 실 적	평가 요소	평점
1	단위업무명	1. 제목(휴먼명조, 12포인트, 장평100, 자간 -3, 글자 진하게) 가. 휴먼명조, 11포인트, 장평100, 자간 -3 - 중고딕,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2. 제목(휴먼명조, 12포인트, 장평100, 자간 -3, 글자 진하게) 가. 휴먼명조, 11포인트, 장평100, 자간 -3 - 중고딕,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글자체 및 크기 엄수, 사진┌도표 첨부 금지〉	업무난이도 (3점) 업무완성도 (4점) 적시성 (2점) 조직기여도 (3점)	/ (12점)

2. 직무성과 기술서

연번	단위업무	주 요 실 적	평가 항목	평점
2	단위업무명	1. 제목(휴먼명조, 12포인트, 장평100, 자간 -3, 글자 진하게) 가. 휴먼명조, 11포인트, 장평100, 자간 -3 - 중고딕,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글자체 및 크기 엄수, 사진┌도표 첨부 금지〉	업 무 난이도 (3점)	/ (12점)
			업 무 완성도 (4점)	
			적시성 (2점)	
			조 직 기여도 (3점)	
3			업 무 난이도 (3점)	/ (12점)
			업 무 완성도 (4점)	
			적시성 (2점)	
			조 직 기여도 (3점)	

3. Vision 추진계획서 (24점)

합계 점수	

연번	단위업무	주 요 실 적	평가 항목	평점
2	정책목표명 〈과장직위〉	1. 제목(휴먼명조, 12포인트, 장평100, 자간 -3, 글자 진하게) 가. 휴먼명조, 11포인트, 장평100, 자간 -3 - 중고딕,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2. 제목(휴먼명조, 12포인트, 장평100, 자간 -3, 글자 진하게) 가. 휴먼명조, 11포인트, 장평100, 자간 -3 - 중고딕,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글자체 및 크기 엄수, 사진┌도표 첨부 금지〉	창의성 (4점) 구체성 (5점) 성과창출 가능성 (3점)	/ (12점)
3	정책목표명 〈서장직위〉		창의성 (4점) 구체성 (5점) 성과창출 가능성 (3점)	/ (12점)

서식 5-15

면접(인터뷰) 평가서

※ 본 평가서는 (총경)승진대상자 면접 및 인터뷰 평가 시 평가위원 평가서입니다. 피 평정자는 「직무성과 기술서」와 「Vision 추진 계획서」및 조직정책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 대비하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경찰임용	현 계 급	현 부 서	채용구분
	○○계장	홍 길 동					

위 원	이 순 신	평정점수	40점	확 인	위원장

1. 평가항목 및 배점 (40점)

소요(측정) 역량	세 부 평 가 요 소	평 점
• 정책기획 역 량 (5점)		
• 상황판단 역 량 (5점)		
• 성과관리 역 량 (5점)		
• 조직관리 역 량 (5점)		
• 동기부여 역 량 (5점)		
• 의사소통 역 량 (5점)		
• 이해관계 조정역량 (5점)		
• 리 더 십 역 량 (5점)		

2. 기 타 〈특이사항〉

제 6 장

승 진

제1절 승진제도 일반 • 205
제2절 심사승진 • 214
제3절 시험승진 • 220
제4절 특별승진 • 224
제5절 근속승진 • 229

승진제도 일반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승진업무 처리지침,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지침

02 승진제도 일반

종류 및 대상계급

- 심사승진임용 : 경무관 이하 승진
- 시험승진임용 : 경정 이하 승진
- 특별승진임용 : 치안정감 이하 승진
- 근속승진임용 : 경감 이하 승진

승진인사 규모

-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인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계급별로 정함
    ※ 다만, 필요한 경우 경과별 또는 특수 분야별로 정할 수 있음
  -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은 결원요인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하고,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정원의 25% 이내,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정함
    ※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음

▶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 30% 이내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승진 예정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장은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소속기관별로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기관별 승진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승진임용 및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60%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를 시험승진 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승진임용 절차

▶ 총경 이상 : 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　　정 : 해양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감 이하 : 해양경찰청장 임용

임용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 해양경찰서장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03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

- 총 경 (→ 경 무 관) : 4년
- 경정·경감 (→ 총경·경정) : 3년
- 경위·경사 (→ 경감·경위) : 2년
- 경장·순경 (→ 경사·경장) : 1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 직위해제 ·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함

  • 휴직기간

  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병역휴직
  ③ 법정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④ 국제기구 등에 임시채용된 기간
  ⑤ 유학휴직 기간 중 5할의 기간(최대 1년) ⑥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전부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

  • 직위해제 기간

  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다만, 금품비위, 성범죄 등 주요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①징계 및 ②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함(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참조)

  • 5급 공채시험합격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를 산입
  • 사법연수생 수습기간은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 강등된 경우에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산입

관련 Q&A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어떻게 하는지?

- 해당 계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한 경우의 처리는?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함 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진임용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도달일 이후에 실시함

징계 및 강등 처분자에 대한 승진소요 산정방법은?

- '15. 3. 1 경감 임명 甲이 '16. 5. 1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우선, 감봉 2월 + 제한기간 12월 = 총 14개월은 소요연수 계산시 제외 경감의 승진소요연수는 3년이므로, 36개월 + 14개월 = 총 50개월이 甲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결국 甲은 '19. 5. 1이 되어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하므로 '20년도 시험 및 심사의 대상이 됨
- '14.7.1 경정으로 승진임용한 丙이 '15.7.1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18개월과 3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은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시 제외(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경감의 승진소요연수는 3년이므로, 36개월 + 18개월 + 3개월 = 57개월이 丙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이나,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12개월)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합산되므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8항) 결국 丙은 '19. 4. 1이 되어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하므로 '20년도 시험 및 심사의 대상이 됨

관련 Q&A

유사 사례

1. 경사에서 3년 근무, 경위로 승진하여 1년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된 경우
   → 경사 근무경력 4년(경사 3년 + 경위 1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21개월) 경과 시 심사·시험 가능
2. 경사에서 3년 근무, 경위로 승진하여 3년 6개월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
   → 경사 근무경력 6년 6개월(경사 3년 + 경위 3년 6개월)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21개월) 경과 시 경위 근속·심사·시험 가능
3. 경위에서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2년 근무한 경우
   → 경위 근무경력 6년으로 심사·시험 가능
4. 경위에서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6년 근무한 경우
   → 경위 근무경력 10년으로 경감 근속·심사·시험 가능

04
승진임용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

-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

  ※ 단,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미 경과자
  -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18. 9. 18, 개정)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합산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 다만, '18. 9. 18 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한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개정 전)

-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강등 18개월 /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관련 Q&A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법은?

- 정직 2월의 경우 : 2개월 + 18개월 = 20개월 미경과
- 감봉 1월의 경우 : 1개월 + 12개월 = 13개월 미경과
- 감봉 3월 처분기간 중에 정직 2월을 받은 경우에는 감봉 처분 종료일 후 정직처분 기산 : 3개월 + 12개월 + 2개월 + 18개월 = 총 35개월 미경과
- 휴직기간 중에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휴직 복직일 후 3개월 +12개월 = 15개월 미경과
- 시보기간 중에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정규임용일 후 2개월 +12개월 = 14개월 미경과
- 강등의 경우 : 3개월(직무정지기간) + 18개월 = 21개월 미경과

사례별 기간 산정 방법은?

- '17.2.1 경사로 승진임용한 甲이 '18.3.1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한기간 6월은 승진소요연수 계산 시 제외
  경사의 승진소요연수는 2년이므로, 24개월 + 6개월 = 총 30개월이 甲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결국 甲은 '19. 8. 1이 되어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하므로 '20년도 시험 및 심사의 대상이 됨

- '15.3.1 경감으로 승진임용한 乙이 '16.5.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우선, 감봉 2월 + 제한기간 12월 = 총 14개월은 소요연수 계산 시 제외
  경감의 승진소요연수는 3년이므로, 36개월 + 14개월 = 총 50개월이 甲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결국 甲은 '19. 5. 1이 되어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하므로 '20년도 시험 및 심사의 대상이 됨

제한기간의 계산

- 감봉·정직의 경우 처분기간 종료 후, "정직 18월, 감봉 12월"이 경과하여야 함

  ※ "감봉 2월"의 경우 처분종료일은 처분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계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 가능

관련 Q&A

견책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계산 방법은?

- '18. 12. 31자로 견책처분 된 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가산되므로 만 6월이 되는 '19. 6. 30까지이고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되는 일자는 '19. 7. 1부터임
-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하므로 '19. 7. 1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함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작성대상 : 총경 이하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계급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 시 경과·직무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음

〈 계급 · 경과별 명부작성 기준 〉

구 분	명부작성 기준
총 경	경과·성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로 작성
경 정	① 해양·수사·정보통신·특임경과를 통합 작성 ② 항공경과
경 감 이 하	①해양·수사·정보통신·특임경과를 통합 작성 ※단, 경감은 본청, 직속기관, 지방청별로 별도 구분 작성 ②항공경과

요소별 배점비율

- 근무성적평정(65%) + 경력평정(35%)
  - 100점 만점으로 작성하되, 가점평정대상자의 경우는 1.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총점 101.5점)하여 작성
  - 근무성적은 3년간(해당 연도 50%, 전년도 30%, 전전년도 20%)의 합으로 평가. 다만, 경장·순경은 2년간(해당 연도 60%, 전년도40%)의 합으로 평가 총점은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기재
  -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해가 있을 경우 전년도 평정점 또는 전년도와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하되,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작성권자

-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소속기관 제외) 소속 경찰공무원 명부
  -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 명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명부
- 지방청장·교육원장·정비창장
  - 지방청(경찰서 제외)·교육원(연구센터 제외)·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명부
  - 소속기관(경찰서 또는 연구센터)의 경위 명부
- 경찰서장·연구센터장·중특단장
  - 소속 경사 이하 명부

작성 기준일

- 총경·경정 : 매년 11월 1일
- 경감 이하 : 매년 1월 1일

효력발생일

-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력 발생
-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삭제한 경우에는 조정 또는 삭제일부터 효력발생

▶ 동점자의 순위결정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년 근무성적의 환산점수 우수자, 경장·순경은 2년)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 명부의 조정

- 작성기준일 이후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 조정·삭제
- 조정사유 ① 전출·전입자가 있는 경우
  ②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③ 경력을 다시 평정한 경우(정정 도장 날인, 정정사유 기재)
- 삭제사유 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② 퇴직자가 있는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 교육훈련 미 이수자라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사람은 승진대상자에 포함(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외대상이 아님을 유의)
- 승진대상자 명부의 인원과 미달자 명부의 인원을 합한 인원이 소속기관의 현재원과 동일하여야 함
- 명부 작성일 현재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전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하되, 명부상 전체 성적순과 관계없이 최후 순위에 승진후보자 사이의 성적순, 제한자 사이의 성적순으로 등재

※ 명부의 란 외에 제한사유 및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

▶ 승진대상자 명부 5배수 포함여부 공개

-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5배수 포함여부는 작성권자 기준으로 업무포털 인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

※ 승진예정인원 확정 후 통지, 전체 명단 및 전 직원 공개는 금지

06
승진대상자 및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작성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작성대상 및 승진후보자 등재 시점

- 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승진심사 의결일자)
-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합격자 발표일자)
- 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특별승진심사 의결일자)

➤ 명부작성 방법

- 경과 구분 없이 계급별로 작성
- 각각 심사와 시험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 다만, 경정 이상은 심사와 시험성적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작성

➤ 명부의 조정 및 제출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함

➤ 승진임용 : 심사(60%)와 시험(40%) 승진비율에 따라 임용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임용권자가 아닌 차장, 기획조정관, 인사담당관이 작성, 날인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 휴직 중인 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
-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근무성적과 경력이 모두 동일한 자가 있음에도 명부 작성권자에 의한 명시적인 선순위자 결정 없이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여 명부 작성한 사례

07 관련 서식

➤ (서식 6-1) 승진대상자 명부

➤ (서식 6-2) 승진후보자 명부

심사승진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장 승진심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02 승진심사대상

대 상 :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시험승진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대상으로 승진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 경정 이상 : 전국 단위 승진대상자명부 순위
  - 경감 이하 :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명부 순위
-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할 수 있음

제 외

- 신임교육과정 또는 해당 계급의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본교육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경우

03
승진심사 위원회

구분 / 소속	경과 통합(해양·수사·정보통신·특임)					항공 경과
	총경←경정	경정←경감	경감←경위	경위←경사	경사 이하	
본 청	본 청 (중앙)	본 청 (보통)	본 청			본 청
교육원 정비창			교육원 / 정비창			
중특단			본 청		중특단	
지방청 경찰서			지방청	지방청 / 경찰서		

구 성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위원장(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 포함 3명 이상의 위원
    ※ 경무관 계급의 승진심사 시 "갑·을"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위원장(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 위원은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위원회 소집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해양경찰청장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

기 능

- 승진대상자를 승진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 우수자 순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심사 완료시,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결과보고
  - 승진심사의결서,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승진심사종합평가서
  -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탈락자)의 명부
  -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운영 방법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운영함
-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둠
-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서기는 간사 보조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 위원, 간사, 서기 등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서약서" 작성·제출
- 간사는 승진심사 시작 전에 승진심사수칙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지
-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 금지

심사장소의 보안

-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심사장은 위원 등이 도착할 때까지 위원 등에게 공개를 금함
- 승진심사위원 및 간사,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됨

승진대상자 명부	+	심사대상자 확정	=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 **대 상** 계급별·경과별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근무성적평정 65점 – 경 력 평 정 35점 – 가 점 평 정 1.5점 • **작성기준일** – 총경·경정: 매년 11월1일 – 경감 이하: 매년 1월1일		승진대상자 명부상 순위를 기준으로, 승진 예정 인원의 5배수 안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심사 위원회 심사대상자로 확정		• **1단계 : 부적격자 배제** • **2단계 : 6개 항목 평가** ① 경험한 직책 ② 승진기록 ③ 근무성적 ④ 상 벌 ⑤ 기관장의 평가·추천 ⑥ 적 성 – 2배수 확정 • **3단계** – 심사위원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로 최종 선발

승진심사절차

- 1단계 심사
  - 승진심사대상자 중 심사기준에 의거 부적격자 배제하여 2단계 심사 회부
- 2단계 심사
  - 심사자료(심사조서, 인사기록카드 등)를 기초로 심사요소별 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수·우·양·가로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의 배점표에 따라 그 평가 성적을 집계한 종합평가서를 작성,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

〈 경무관 승진심사 기준 항목 : 100점 만점 〉

구 분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근무성적	상 벌	기관장 평가·추천	적 성
수	20점-16점 이상	15	25	5	15	20
우	16점미만-12점 이상	12	22	4	12	15
양	12점미만- 8점 이상	9	19	3	9	10
가	8점미만	8	16	2	6	5

〈 총경 이하 승진심사기준 항목 : 100점 만점 〉

구 분		수	우	양	가	비 고
객 관 (80)	1. 경험한 직책	최고점 15점 기준				실점수 반영
	2. 승진기록	10	9	8	7	
	3. 근무성적	최고점 40점 기준				실점수 반영
	4. 상·벌	15	12	9	6	
주 관 (20)	5. 기관장 평가·추천	10	8	6	4	
	6. 적 성	10	8	6	4	

※ 총경 계급의 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적성" 평가 시 "역량평가" 점수 반영

3단계 심사

- 제2단계 심사에서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제3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 임용예정자를 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최종 선발(다만, 득표 결과는 과반수 이상으로 함)

경찰기관장의 평가·추천

▶ 평가·추천의 대상 및 방법

- 승진대상자 전원을 평가대상으로 평가·추천(서열 명시)
- 추천대상자가 2명 이하인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 자료(근무성적, 경력 등)에 의해 계급별 분포비율에 맞게 적용(단, 추천권자 순위 변동 금지)

▶ 평가·추천자

기관별 \ 현 계급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장·순경
본청	청장	차장	국장 (직속기관 : 차장)		과장
교육원 (연구센터, 함정)		교육원장	교육원장 (연구센터장)		과장 (연구센터장, 함장)
지방청 (서특단)		지방청장			과·단·대장
		지방청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과장·함장
경찰서		지방청장	서장		과장·함정장 파출소장
정비창		창장			과장
중특단		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평가·추천권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추천함

① 상위직급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리더쉽
② 현장경험, 정책수립 및 업무 추진능력
③ 조직 구성원과의 융화 및 신망
④ 헌신적인 업무자세와 책임감
⑤ 개인 인품 및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 평가방법

- 평가는 4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하되, 반드시 분포비율을 준수함

가. 상 위 권 ———— 20 %
나. 중상위권 ———— 40 %
다. 중하위권 ———— 30 %
라. 하 위 권 ———— 10 %

승진임용예정자 확정

-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에 기록
  -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
  - 종합평가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 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승진임용예정자명부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진임용후보자를 최종 확정
  ① 의 결 서
  ②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③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 승진심사위원회 1차 탈락자 명단
    - 승진심사위원회 2차 탈락자 명단
    - 승진심사위원회 3차 탈락자 명단
  ④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⑤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승진심사결과 보고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1. 승진심사 예정자 명부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

승진심사 자료

① 승진심사 계획서 ② 승진대상자 명부 ③ 개인별 인사기록
④ 근무성적 평정표 ⑤ 승진심사표 ⑥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시험승진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장 승진시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인원 비율)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5장 승진시험

02 시험승진제도

대상 및 요건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사람
  ※ 기준일 : 시험실시연도의 1월 1일
-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일 것
  ※ 해당 계급에서의 신임교육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인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

승진 예정 인원

-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40%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시험실시 원칙

- 계급별 실시 원칙. 단, 필요한 경우 경과별·특수분야별로 실시가능
-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실시하고,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
- 일시·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03
시험과목

승진 시험과목

(단위 : %)

경과별 / 계급별	해양, 수사, 정보통신, 특임경과			항공경과	
	시험 과목		배점비율	시험 과목	배점비율
경정	제1차 시험	· 행정법 · 국제법	30 30	· 행정법 · 국제법	30 30
	제2차 시험	· 행정학	40	· 행정학	40
경감	· 행정학 ·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 해양경찰 실무(Ⅱ, Ⅲ, Ⅳ)		35 35 30	· 행정학 ·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 항공법규	35 35 30
경위	· 형법 ·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2과목		35 35 30	· 형법 · 형사소송법 · 항공법규	35 35 30
경사	· 형법 · 해사법규 ·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1과목		35 35 30	· 형법 · 해사법규 · 항공법규	35 35 30
경장	· 형사소송법 · 해사법규 · 해양경찰실무(Ⅰ)		35 35 30	· 형사소송법 · 해사법규 · 항공법규	35 35 30

과목별 범위

- 해양경찰실무
  - 함정실무(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수준), 파출소실무(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범죄수사규칙,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감사·대변인 실무, ② 관리운영, ③ 경비안전, ④ 정보수사
-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 · 재무 · 환류행정
-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
- 해사법규는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고 시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함
- 항공법규의 범위는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포함)

04 합격자 결정

원 칙

-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함

관련 Q&A

승진시험 합격자는 시험 점수로만 선발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점수가 포함되나요?

- 승진시험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
- [시험성적 60%]+[근무성적*(최근 2년) 40%]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결정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05 시험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시험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위에 의함
-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

06 관련 서식

- (서식 6-3) 경찰관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적순)

특별승진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경찰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장 특별승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6장 특별승진

02 특별승진 대상

대상계급 및 범위

특진계급	공 적 내 용	법적근거
치안정감 이하	전투, 대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사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38조
	명예퇴직자(단, 주요 징계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외)	
경정이하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경감이하	행정 능률향상·예산절감 등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국가안전을 해하는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전시·사변·비상사태에서 진압 유공자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의 발생 시 인명구조, 재산보호자	
경위이하	특별경비부서에서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특별승진의 제한사유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미 경과자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대상자
- 기본교육 미 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심사에 회부

  ※ 다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적용 배제
-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하고,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적용 배제

- 명예퇴직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사태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헌신 분투하여 그 공이 특히 현저한 사람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의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한 사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승진제한사유 적용 배제

- 전투·대간첩작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03
특별승진 구분

수시 특진

- 대상 공적
  - 천재지변·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 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유공, 살인·강도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 유공 등

〈 수시 특별승진 관련근거 〉

-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3호 :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37조제3항 :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호)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 범인 검거 등
  5호)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 보호

- 선발 방법
  - 본청 기능 → 특별승진 건의(청장)·대상자 선발 → 위원회 추천
  - 소속기관장 → 본청 소관 기능 → 건의(청장)·대상자 선발 → 위원회 추천

행정발전유공 특진

- 대상 공적
  -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 선발방법
  - 경감과 경위는 특별승진 규모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본청 통합 심사하고, 경사와 경장은 지방청별 인원 배정 후 자체 계획 수립 실시*

* 연 2회 이하로 상·하반기 또는 해양경찰의 날

04 승진심사 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경위 이상 계급으로의 특별승진(통합)심사, 본청 소속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심사
  - 위원장(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 포함 3명 이상의 위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속기관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심사
  - 위원장(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 위원은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통상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로 선발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찬·반 투표 실시

심사 및 선발절차

- 준비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승진심사 의결서
  - 공적 증빙자료
- 현지 확인 또는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 명부 등재순위는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작성
  -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부에서 제외

▶ 선발절차

〈 행정발전유공 특별승진 〉

① 인원배정	② 대상자 추천	③ 공적조사및 공적공개 (이의제기)	④ 공적심사 위원회 (외부위원 1/3)	⑤ 특별승진 심사위원회
본청→지방청 특진인원 배정	본청·지방청 자체계획 수립	추천자 취합 및 공적검증	면접·참관인 참여	최종 선발

※ 공적심사의 사실여부 확인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발전유공 특별승진 〉

① 공적발생 특별승진 건의*	② 해양경찰청장 승인	③ 대상자 선발 → 위원회 추천	④ 특별승진심사 위원회 의결
본청 소관 기능		본청 소관 기능	최종 선발

※ 본청 소관 기능 및 소속기관장은 수시 특별승진 건의 시 인사담당관과 사전 협의

05 관련 서식

▶ (서식 6-4) 특별승진 추천자 명단 및 주요 공적

▶ (서식 6-5) 특별승진 추천 대상자 공적기술서

▶ (서식 6-6) 공적조서

▶ (서식 6-7) 공적사실 확인서

▶ (서식 6-8) 특별승진 추천에 따른 동의서

▶ (서식 6-9) 특별승진 추천자 선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근속승진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훈령 제47호)

02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승진임용 요건

- 근속기간
  - 순경 → 경장 근속승진 : 해당 계급 4년 이상 근속자
  - 경장 → 경사 근속승진 : 해당 계급 5년 이상 근속자
  - 경사 → 경위 근속승진 : 해당 계급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경위 → 경감 근속승진 : 해당 계급 10년 이상 근속자
- 선발기준

구 분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근속승진기간	10 년	6년 6개월	5 년	4 년
심사기준일	매년 1월 1일(1회)	매월 1일 (12회)		
심사대상	최근 3년 근무성적	최근 3년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 평균 37.5점 이상		
선발요건	근무성적 평정점 60점, 경력 평정점 4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 100/30 이내 선발	근속승진기간 경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근무성적 37.5점 이상자 전원 선발		
심사기관	본청, 지방청, 교육원, 정비창 * 중특단은 본청 통합심사	소속기관별 선발 ※중특단(경사→경위) 본청통합심사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 반영점수 산정방식]

- 근무성적(60) : (전년도 1년 50% + 1년~2년 30% + 2년~3년 20%) × 1.2
- 경　력(40) : 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 × 0.119

[동점자 순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징계 및 휴직 관련

- 정직(강등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 감봉, 승진제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일반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근속) 기간에서 제외

  ※ 육아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이행 휴직, 공무상 휴직의 경우 기간 산입

징계기록 말소 효과

- 강등·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말소되었더라도 기존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서 정직(강등의 직무정지) 기간과 승진제한 기간을 제외

관련 Q&A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제도에 의하여 말소된 직위해제기간의 근속승진 기간 포함 여부?

직위해제 기간은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도는 징계를 받은 사실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록만을 말소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 기간은 기왕의 처분 효력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됨

징계기록 사면 효과

- 사면일 이후로 기존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정직기간과 승진제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 사면된 징계로 인한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관련 Q&A

'18. 1. 1일 기준 경위 근무기간 10년인 자가 '17.11.1일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경감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승진제한 기간(18월+2월)과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기간(10년)의 잔여기간 2개월이 '19. 9. 1이 되어야 경과하므로 '20. 1월 근속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 기간에 2개월(정직기간) 제외 산정

승진임용 시기

-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 매년 1월 1일

  ※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근속승진심사 시 대상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 매월 1일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

- 청 장 : 소속 직원, 중앙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 중앙특수구조단장에게 소속 경위 계급에 대한 임용권이 없어, 해양경찰청장이 통합심사

- 교육원장, 지방청장, 정비창장 : 소속 경위 이하
- 경찰서장, 중특단장, 연구센터장 : 소속 경사 이하

기타 특례

-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경사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에 미달되어도 근속기간 6년 6개월이 경과하면 우선 근속승진 가능
- 3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최근 일정 기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에 미달하여도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기간이 경과하면 근속승진 가능

  ※ 경장·경사 계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최근 2년간, 경위 계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

업무절차

① 대상자파악 지시	② 대상자보고	③ 근속승진심사	④ 근속승진 심사 결과 보고	⑤ 승진임용 발령
본청→지방청	지방청→본청	본청 및 소속기관	지방청→본청	본청 및 소속기관

유의사항

정원 관리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봄

  ※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퇴직 또는 다른 기관에 전출, 전직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
- 바로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상위 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하여야 함

기타 사항

- 근속승진의 경우 일반승진과 달리 상위 계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근속승진할 수 있으므로 일반승진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 심사·특별승진심사에서 장기 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됨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승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급으로 신규채용이나 승진이 가능함

- 근속승진자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임용사항' 란에 「근속승진」으로 표기

04 관련서식

- (서식 6-10)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심사 의결서
- (서식 6-11)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 (서식 6-12) 경위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
- (서식 6-13) 근속승진 심사결과 보고

서식 6-1

시보임용경찰공무원 감찰조사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조정자 (서명 또는 인)

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 정 점						비고
정기	조정				근무성적			경력	가점	계	

※ 비고: 근무성적 기재방법

1. "근무성적"란 윗줄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다만, 경장 · 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를 합산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 적습니다.
2. "근무성적"란 가운뎃줄 : 왼쪽 란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의 점수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경장 · 순경의 경우 왼쪽 난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의 점수 순으로 적습니다.
3. "근무성적"란 아랫줄 : 왼쪽 란부터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경장 · 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습니다

서식 6-2

승진대상자 명부

순위	소속	계급	경 과	성명	비고

승진대상자 명부

응시계급

순위	응시번호	응시지역	직별	소 속	성 명	비고

특별승진 추천자 명단 및 주요 공적

경감 특진 후보자

연번 (직제순)	부서	대상자	임용일 (해당기간)	주요 공적	비고
1	본청 ○○국 ○○과	(사진) 경위 ○○○ '00生	순경공채 배명일 '00.00 (0년0월) 현계급 '00.00 (0년0월) 현부서 '00.00 (0년0월)	■ ○○ 등 ○○업무에 기여 – – * 언론보도 내역 등 특이사항 ■ – – ■ – – [검정, 맑은고딕, 10pt, 장평90, 자간0, 줄간격160, 3~4꼭지, 반페이지 內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00.00.00 견책 (교통사고) 사면(말소) '00.00.00 '00.00.00 모범공무원 (총리이상기재

경위 특진 후보자

연번 (직제순)	부서	대상자	임용일 (해당기간)	주요 공적	비고
1	본청 ○○국 ○○과	(사진) 경사 ○○○ '00生 순경 공채	배명일 '00.00 (0년0월) 현계급 '00.00 (0년0월) 현부서 '00.00 (0년0월)	■ ○○ 등 ○○업무에 기여 – – * 언론보도 내역 등 특이사항 ■ – – ■ – – [검정, 맑은고딕, 10pt, 장평90, 자간0, 줄간격160, 3~4꼭지, 반페이지 內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00.00.00 견책 (교통사고) 사면(말소) '00.00.00 '00.00.00 모범공무원 (총리이상 기재)

특별승진 추천자 명단 및 주요 공적

경사 특진 후보자					
연번 (직제순)	부서	대상자	임용일 (해당기간)	주요 공적	비고
1	본청 ○○국 ○○과	(사진) 경장 ○○○ '00生 순경 공채	배명일 '00.00 (0년0월) 현계급 '00.00 (0년0월) 현부서 '00.00 (0년0월)	■ ○○ 등 ○○업무에 기여 – – * 언론보도 내역 등 특이사항 ■ – – ■ – – [검정, 맑은고딕, 10pt, 장평90, 자간0, 줄간격160, 3~4꼭지, 반페이지 內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00.00.00 견책 (교통사고) 사면(말소) '00.00.00 '00.00.00 모범공무원 (총리이상 기재)

경장 특진 후보자					
연번 (직제순)	부서	대상자	임용일 (해당기간)	주요 공적	비고
1	본청 ○○국 ○○과	(사진) 순경 ○○○ '00生 순경 공채	배명일 '00.00 (0년0월) 현계급 '00.00 (0년0월) 현부서 '00.00 (0년0월)	■ ○○ 등 ○○업무에 기여 – – * 언론보도 내역 등 특이사항 ■ – – ■ – – [검정, 맑은고딕, 10pt, 장평90, 자간0, 줄간격160, 3~4꼭지, 반페이지 內 작성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00.00.00 견책 (교통사고) 사면(말소) '00.00.00 '00.00.00 모범공무원 (총리이상 기재)

서식 6-5

특별승진 추천대상자 공적기술서

소속	부서	계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배명일	현 계급	현 부서
ㅇㅇ청 ㅇㅇ서	ㅇㅇ과 ㅇㅇ함	경사	ㅇㅇ담당	홍길동	'00.00.00 (세)	'00.00.00 (0년0월)	'00.00.00 (0년0월)	'00.00.00 (0년0월)
공적요지	ㅇ – – * ㅇ – – ㅇ – – 【 작성시 유의사항 】 – 1쪽 내, 서식 변경 없이 작성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주요내용 기재)							
소속기관 (부서)장	소속 : (서장 등 기관장, 본청·지방청 과장) 계급 : 성명 : (인)							

공적조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경찰공무원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200자 내외)					
ㅇ - - *					
(15) 추천훈격	특별승진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소속부서장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소속기관장)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월일	(22) 이 력	(23) 년월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월일	(26) 내 용	(27) 년월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 6-7

공적 사실 확인서

● 대 상 자

소속 :　　계급 :　　성명 :

● 공적확인 결과

제 출 공 적	확 인 결 과
ㅇ공문내용, 일자, 등록번호 등 상세기재	- 공적 확인 시 계획서, 관련 표창, 보도자료, 채택된 개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공적별 주공, 공동공적 여부를 반드시 명시 ※『위 내용 상위 없음』, 『내용 같음』 등 형식적인 공적확인서 작성 지양

● 특진 시 예상반응

● 승진임용 제한·특진추천 제한 여부

기 타 사 항	확인 결과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해당여부	해당없음
2. 동일공적으로 과거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선발, 정부포상 수여 여부	
3. 공적의 진위여부 등 다툼이 있는지 여부	

○○○○. ○○. ○○.

조사자 :　　계급 :　　성명 :　　(인)

확인자 :　　계급 :　　성명 :　　(인)

※ (본청) 조사자는 감찰팀 內 조사자, 확인자는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조사자는 청문감사계장, 확인자는 청문감사담당관(기획운영과장)

서식 6-8

특별승진 추천에 따른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동의내용

위 본인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 공적이 공개됨에 따라 철저히 사실에 근거하여 공적을 기재할 것과, 허위·과장 공적 기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 ○ ○ (서명)

서식 6-9

○○청 특별승진 추천자 선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일 시	○○○○. ○○ . ○○ . ( ), : ~ :	장 소	
토의 내용 요 지	ㅇ 정기 특별승진 추천자 경감 · 경위 선발		
의결 사항	• 특별승진 공적에의 해당 여부(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7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경과 및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 심사결과 – –		

참석대상위원	명	참석자	직 위	구 분	계 급	성 명	서 명
참 석	명			위원장			
불 참	명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서 기			

서식 6-10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심사 의결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내 용	경사 근속승진 임용예정자를 경장 홍 길 동 등 00명으로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서식 6-11

(순경 · 경장)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자 : (인)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무성적평정점			비고
					00년	00년	평균점	
1								
2								
3								
4								
5								

※ 근무성적평정점란에는 왼쪽부터 최근 2년 전 성적, 최근 1년 전 성적, 평균점 순으로 기재(해당 연도 근무성적은 제외)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자 : (인)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무성적평정점			비고
					00년	00년	평균점	
1								
2								
3								
4								
5								

※ 근무성적평정점란에는 왼쪽부터 최근 2년 전 성적, 최근 1년 전 성적, 평균점 순으로 기재(해당 연도 근무성적은 제외)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자 : (인)

순위	소 속	계급	성 명	경찰 최초 배명일	경위 계급 배명일	평 정 점						비고
						근무성적				경 력	합 계 (총점수)	
						계	00년	00년	00년			

※ 근무성적란 기재방법(해당 연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제외)

1. 상단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30%,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를 합산한 점수에 1.2를 곱한 점수를 기재
2. 중단 : 우측란부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50%,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30%,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의 20%의 점수를 기재한 다음 그 좌측에 우측 3개란 점수의 합산점수 순으로 기재
3. 하단 : 우측란부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2년 전 3년 이내 근무성적을 기재한 다음 그 좌측에 우측 3개란 점수의 합산점수 순으로 기재

※ 경력란 산정방법(40점 만점)

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 × 30/100) × 0.119

※ 합계(총 점수)란 기재 방법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계 × 1.2) + 경력 평정점을 기재

서식 6-12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

작성자 : (인)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 ○○. ○○. **현재**

구 분	총 대상 인원	승진 대상 인원	결격 인원	결 격 자					비 고
				징계	휴직	직위 해제	기본교육 미 이 수	기타	
계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경위근속 기 간 (연, 월)	비고
				○○ 년도	○○ 년도	○○ 년도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경위근속 기 간 (연, 월)	비고
				○○ 년도	○○ 년도	○○ 년도		

(경사·경장) 근속승진 대상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경위근속 기 간 (연, 월)	비고
				○○ 년도	○○ 년도	○○ 년도		

(　　) 근속승진 대상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경위근속 기 간 (연, 월)	비고
				○○ 년도	○○ 년도	○○ 년도		

서식 6-13

근속승진대상자 심사결과 보고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 ○○. ○○. **현재**

구분	총 대상 인원	근속승진 대상 제외인원						근속승진 대상인원		
		계	휴직	직위 해제	징계	교 육 미이수	기타	계	근속승진 임용인원	근속승진 탈락인원
계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경감 근속승진 예정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경위근속 기 간 (연, 월)	경사이하 근속기간 (연, 월)	비고
				○○ 년도	○○ 년도	○○ 년도			

경위 근속승진 예정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비고
				○○ 년도	○○ 년도	○○ 년도	

(경사·경장) 근속승진 예정자

연번	소 속	성 명	현계급 배명일	근 무 성 적		비고
				○○ 년도	○○ 년도	

제 7 장

포 상

제1절 공무원 포상 • 253
제2절 퇴직공무원 포상(정부포상) • 265
제3절 모범공무원 • 270
제4절 기 장 • 272
제5절 특별승급 • 274
제6절 상벌상계(발령) • 278

공무원 포상

01 관련 근거

-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해양수산부 표창규정(해양수산부예규)
- 해양경찰 표창규칙(훈령)

02 정부 포상

포상 대상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거나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 특별한 업적으로 타의 모범이 된 기관

포상 시기

- 정기 포상
  - 해양경찰의 날(9.10)
  - 모범공무원 :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배정받아 연 2회 추천(6·12월)
- 수시 포상
  - 공적발생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수시 실시

포상규모 협의

▶ 협의기간

- 포상수여 예정일 90일 전까지 포상규모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협의요청 기간을 지키지 않은 계획포상의 경우 전년 대비 10% 이상 포상규모 감축

- 포상수여 예정일 60일 전까지 협의서 통보(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
- 포상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추천제한 사유 조회,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 후보자 추천(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

▶ 협의 요청서의 주요내용(예시)

- 포상배경 및 타당성
- 포상후보자의 명단, 공적개요 및 과거 포상실적
- 포상 분야의 성과 및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 업무평가결과, 후보자의 역할 및 공적내용, 관련 기구도표 및 업무분장 등

- 행사계획, 기타 고려요소
- 공적심사기준

-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시 제출
- 성과 및 포상의 중요도 감안하고 분야 종사자 수, 파급효과 등 종합적 고려

  ※ 훈·포장의 경우에는 포상규모 협의단계에서 추천예정자의 공적개요 자료 제출

훈격별 비율

▶ 특정한 사업수행 유공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훈·포장'과 '표창'의 비율을 각각 '20 대 80'의 비율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위 훈격 인원을 하위 훈격 인원보다 적게 책정함

- 다만, 포상의 성격·공적내용·기타 제반사항 등의 사유로 상기 훈격 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음전 또는 같인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수공기간 및 계급별 훈격

훈 격	훈 장					포 장	대통령·총리표창
	청조 (1등급)	황조 (2등급)	홍조 (3등급)	녹조 (4등급)	옥조 (5등급)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계 급 별	장관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이 하	전계급	

정부포상 수여(행사) 기준

- 전수권자에 의한 포상의 직접 수여
  - 훈·포장은 상훈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수권자가(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직접 수여
  - 전수권자의 사정 또는 수상자의 형편(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전수권의 위임하여 수여
-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포상의 영예와 수범효과 제고
  - 품격 있는 수여식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수여식에서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 증서 또는 공적의 낭독, 사진 촬영, 다과회 개최, 관련자 참석 등
  - 수여식에서는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되, 행사 진행상 부득이하게 일부만을 수여할 경우에는 나머지 수상자의 수여를 위한 수여식을 별도 개최
- 정부포상의 간접 전달 지양
  -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등으로 부득이 하게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에 대하여는 전수권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전달
  - 우편·택배 등 간접전달은 금지

- 해외거주 교민에 대한 포상 수여 및 전달
  - 행사초청 교민은 가능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수여 대상자로 선정
  - 해외거주 교민은 포상시기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특사 등이 주재국 방문시 친수(전수)되도록 함

    ※ 교민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 권장
  - 기타 해외거주 교민에 대해서는 지역 공관장이 직접 전수하도록 함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상행사의 운영
  -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직접 수여하는 포상행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와 행사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정부포상 절차

후보자 취합 (내부취합 및 외부공모)	➡	포상규모 협의 및 후보자 先 추천 (본청→행안부)	➡	공개검증 및 제한사유 조회	➡	공적심사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본청→행안부)	➡	부적격 검토 및 포상 확정·수여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 대면회의 개최여부, 사면회의 시 사유를 명시
-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사본 1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필요사항 추가입력)
-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사본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사본 1부(외국인은 영문공적조서 1부 추가 제출)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영문 citation 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문공적 개요서 제출
- 상훈시스템으로 추천자료 작성 제출(시스템에서 제출버튼 클릭)
-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결과,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각 1부

-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협회·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
- 범죄경력 및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하여 의뢰
- 기타 서류(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기타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포상행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인사기록요약서·공적조서(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한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자체 보관

03
추서

추서 대상

- 정부포상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추천일 현재 사망한 자

추서 요건

- 위험성이 현저한 직무(간첩·범인검거, 화재진압 등) 수행 중 또는 천재지변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다가 사망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단, 공적이 현저히 탁월하고, 그 공정에 비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추천 가능
- 본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이 완료된 후에 포상추천 가능
- 생전에 이미 동일 종류의 훈장을 받은 경우
  - 단,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여 상위 등급의 훈장을 추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훈격 결정

- 생전의 업적, 사회적 지위, 계급, 수공기간, 기서훈,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사후 조치 및 관리

- 서훈 확정 및 포상증서 수여
  - 법령절차에 따라 서훈 확정(추서 후 1개월 이내)
    ※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행정안전부로 추천→차관·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 포상증서 수여(추천기관장 직접전수)
- 사후관리
  - 서훈 확정 후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훈의 추천권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04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포상 시기

- "해양경찰의 날" 정기표창 원칙
  ※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수시표창 실시

포상대상

-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내외국인, 단체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와 단체

결격사유

-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제외)
  ※ 해양수산부 운영방침에 따라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자는 추천 제한

-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결격사유는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준수

업무절차

포상협의	추천대상자 취합·자체심사	전체공적심사	표창수여
– 본청인사운영팀 – 해수부운영지원	– 추천:해당국·관 – 취합:본청인사 (수여 20일 전 통보)	– 해수부운영지원	

추천시 구비서류

- 자체공적심사 의결서 및 장관표창 추천자 세부 현황
- 공적조서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표창시기

- 정기표창 :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12월 23일)
- 수시표창
  - 기능별 업무유공자 선발 시
  - 각종 훈련·대회·교육 수료자 중 성적(실적) 우수자 선발 시
  - 그 밖에 표창권자의 수여 필요 시

05
해양경찰청장 이하 표창

표창권자 및 포상규모

- 해양경찰청장 : 소속기관 정원의 10% 이내
- 교육원장·지방청장 : 소속기관 정원의 20% 이내

※ 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우수자 상장 별도 운영가능(과정당 2매 기준)

※ 중부청장은 서특단 정원의 40% 추가발급 가능

- 경찰서장·정비창장·중특단장·연구센터장 : 소속기관 정원의 35% 이내
- 250톤급 이상의 함장 : 소속 함정 정원의 20% 이내

시행절차

- 정기 표창 :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 추천·심의를 거쳐 수여
- 수시 표창
  - 표창 건에 대한 대상자를 매월 20일까지 인사부서로 추천하여야 하며, 매월 1회 또는 격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여

표창규모 협의	→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부서 ↔ 인사 부서		추천 부서 표창권자 결재		추천 부서 ↔ 인사 부서		인사 부서 (매월 말)

※ 즉상 추천 시 인사부서와 반드시 수여규모 등 협의하되, 즉시성이 필요하거나 표창권자 직접 수여 시 집행 후 심사 가능

표창심사기준

- 자격기준
  -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실적)이 있는 사람
  - 표창 추천일 현재 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무경찰의 경우 6월)

    ※ 단, 소속기관장 표창의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름
- 제한사유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처분유형 / 추천 훈격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강등)
해양경찰청장 표창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방청장·교육원장 표창	4개월		8개월	12개월
서장 등 총경급 기관장	2개월		4개월	6개월
함장 표창	1개월		2개월	3개월

※ 단,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를 범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위 제한기간의 3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추천 제한

• 전 표창 수여일로부터 현 표창 추천일까지 동종동급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표 창	재 표창 제한기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이상의 훈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수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청장표창 추천 가능
지방청장 · 교육원장	지방청장·교육원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수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지방청장·교육원장 표창 추천 가능
서장 등 총경급 기관장	서장 등 총경급 기관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수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총경급 기관장 표창 추천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흠결이 있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제외대상의 예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범인 검거, 인명구조, 조난선박 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자
-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2조제5호의 상장 수여의 경우
- 장기근속유공 표창의 경우
-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상 장

▸ 수여 대상

• 해양경찰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

▸ 수상 시기 : 교육 수료 및 각종 대회 종료 시

감사장

▸ 수여 대상

• 경찰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

▸ 제외 대상

• 각종 비위·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추천

– 해당 기능에서 제외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

표창 종류별 업무절차

▸ 정기 표창(기념일 표창 포함)

기본계획수립·하달	→	기능별세부계획 수립·시행	→	대상자 선발·추천	→
인사담당관실		해당 국·관 및 소속기관		국·관 및 소속기관 → 인사담당관실	

공적심사	→	표창수여
인사담당관실		친수 및 전수

▸ 수시 표창(상장·감사장 포함)

공적발생	→	대상자 추천	→	취합 후 보고	→	공적심사
본청 각 기능 및 소속기관		해당 국·관 및 대변인 → 인사담당관실		인사담당부서에서 청장님 일괄 결재		인사담당관실

※단, 소속기관장은 공적대상자 발생 시 본청 소관 기능의 사전 검토 후 추천

유의사항

▸ 공적심사 방법(각 국·관, 소속기관)

- 국·관, 지방청별 표창 가능 공적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심사 시 활용
- 기본업무에 대한 표창 및 중복표창 발생치 않도록 실질적 공적심사
- 타인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하거나,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행태 근절
- 주 공적자 및 보조 공적자를 구분하여 포상훈격의 조정
- 공적조서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표창추천

- 매월 말일까지 추천

- 공적심사
  - 수여 제한기간, 이중 표창 여부, 공적내용 등 심사를 통해 표창수상자 결정
  - 공적심사는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 표창수여
  - 공적심사 의결 후 표창 대상자 명단 하달
  - 소속기관장은 표창 발급(인쇄) 및 부상품 전수

06 관련 서식

- (서식 7-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서식 7-2) 공적조서(개인, 단체)
- (서식 7-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서식 7-4)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 (서식 7-5) 주요공적요약서
- (서식 7-6) 정부포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 검증자료
- (서식 7-7) 자체공적심사 의결서
- (서식 7-8) 민간인 이력서
- (서식 7-9)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 7-10) 수시표창 건의 양식

퇴직공무원 포상(정부포상)

01 관련근거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포상의 종류

- 훈 장 : 근정훈장
- 포 장 : 근정포장
- 표 창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03 대상 및 시기

- 포상 대상
  - 장기간(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포상 시기
  - 정년퇴직 : 퇴직일(6월말, 12월말)
  -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 6월말(전년 7월 ~ 전년 12월 중 퇴직)
    12월말(전년 1월 ~ 전년 6월 중 퇴직)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다만,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과실 등으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 등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천할 수 있음

※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의원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포상 추천은 인사발령 이후에 추천하여야 함

04 포상 훈격

훈 격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이상	28년이상	25년이상
직 급 별	장관급 이상	치안 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이하	全계급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前직위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 가능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이후에는 훈격 조정 불가

05 추천 기한 및 제한

추천 기한

- 소속기관 및 해당기능→ 해양경찰청장(인사담당관) : 매년 3·9월
- 해양경찰청장(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장관(상훈담당관) : 매년 4·10월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해당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추천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 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06 재직기간 산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공무원 재직기간
-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병역 의무복무기간
-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공무상질병(부상)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국제기구 등 고용휴직, 국외유학 휴직(휴직기간의 1/2, 최대 1년), 육아휴직(자녀 1명당 1년 이내, 단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 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
  - 기타 청원휴직(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제외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제2항에 따름
-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
- 최종 합산 시 12월=1년, 30일=1월, 15일 이상=1월로 계산

07 훈·포장 재교부 및 증명서 발급

재교부

- 훈·포장증 및 표창장 분실·파손
  - 훈·포장증과 표창장은 재교부하지 아니함

  ※ 단,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여증명서 발급 가능
- 훈·포장(메달) 및 표창장, 수장의 분실·훼손
  - 소요되는 제작비 신청인 부담으로 재교부 가능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수여증명원·재교부승낙서 발급 신청절차

- 수여증명원 또는 재교부 승낙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본　인 :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　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각 1부
  - 대리인 : 위임장,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우편·팩스로 신청
  - 방문 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를 우편·팩스로 제출

08
제출서류 (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사본 1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필요사항 추가입력)
-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사본 1부
-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사본 1부
- 상훈시스템으로 추천자료 작성 제출(시스템에서 제출버튼 클릭)
-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결과,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각 1부
-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협회·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퇴직공무원에 한함)
- 기타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포상행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

※ 범죄경력 및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의뢰

모범공무원

01 관련 근거

-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 모범공무원 포상계획(행정안전부)

※ 매년 5월경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에서 부처별 인원배정·통보

02 대상 및 요건

- 5년 이상 재직한 경감이하 경찰관 및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
  - 관련분야 핵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 청렴·성실한 자세로 봉사와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추천기관 잘못으로 부적격자 추천될 경우 모범공무원 규모협의시 벌칙(전체규모 10% 이상 감축) 부여 가능

03 선발인원 및 특전

- 선발인원은 상·하반기 인원을 일괄배정하고, 추천은 반기별 구분 실시
  - 대상자 선발은 하위직과 여성공무원, 소수직종 및 소속기관 격무부서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 소속 기관별 선발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적격자 선발 추천
- 모범공무원 선발 시 특전
  -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총 180만원)
  - 국무총리 명의 모범공무원증 및 표장(메달) 수여

04 업무 절차

- 추천기한 : 상반기 6월초, 하반기 12월초
- 포상일자 : 상반기 6월말, 하반기 12월말
- 추진일정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수립·통보	[행정안전부]	(4월초, 10월초)
↓		
"모범 경찰공무원 선발계획" 수립·하달	[본청 인사]	(4월초, 10월초)
↓		
대상자 선발·추천(→해양경찰청장)	[실·국·관, 소속기관]	(4월중, 10월중)
↓		
취합·추천(→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	(5월초, 11월초)
↓		
모범공무원증 수여		(6월말, 12월말)

05 제출서류 (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 해당부처 감사부서 '비위 및 징계사실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 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부 업무연락 등을 통해 확인 후 확인결과 제출
- 추천자 명부 1부
- '19년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현황 1부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인사기록 요약서 및 공적조서 등은 추천기관 자체 보관

기 장

01 관련 근거

- 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훈령)

02 수여권자 및 대상

- 수여권자 : 해양경찰청장
- 수여대상
  - 경찰지휘관장 : 경정 이상 경찰기관의 장
  - 경찰근속기장 : 10년 이상 근속자
  - 경호 및 경비기념장 : 중요 경비업무 수행 시 투절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

03 기장 종류

종 류	지휘관장	평생장	충성장	봉사장	성실장
문 양					
대 상	경정 이상 경찰기관장	40년 근속자	30년 근속자	20년 근속자	10년 근속자

04 기장 패용방법

기장 패용시기

-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해양경찰의 날, 종무식, 시무식, 승진 임용식 등 공식행사 시 패용
- 근무복 또는 기동복 패용은 지휘관의 특별한 패용 지시가 있을 때 패용

기장 패용 기준

- 기장은 순서에 따라 좌측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 축소약장을 패용할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수장과 국무총리수장은 오른쪽 가슴위에 패용

- 기장은 본인이 수여받은 것만 패용하되,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임용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해당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

  ※ 훈·포장의 허위 패용시 벌칙(상훈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장 패용 순서

- 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 경찰기장 및 기타 기념장의 순서로 패용함을 원칙

05 관련 서식

- (서식 7-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의 종류
- (서식 7-12) 경찰공무원기장 패용 방법 등
- (서식 7-13) 경찰공무원의 제식
- (서식 7-14) 기념장수여 대상자 명단
- (서식 7-15) 기념장 수여 대장

특별승급

01 관련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02 적용범위 및 요건

-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 적용 경찰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경감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직원 중
  - 해양에서의 인명 및 재산 등 긴급구조 실적 우수자
  - 국정과제 추진 성과 우수자
  -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형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03 승급의 제한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사람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승급 불가
-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모범공무원,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통리 표창)을 받은 사람
- 추천일로부터 5년 이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징계기록 말소여부 불문)

감경제한 비위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음주운전
-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04 인원 규모

- (기 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결정
- (인 원) 관서별 별도 인원배정 없이 지침에서 정한 특별승급 대상 정원의 2% 이내에서 해당 연도 인건비 예산 감안 선발

05 기본 방침

- 현장대응 분야 및 업무실적 우수자 적극 발탁
  - 해양에서 인명 및 선박구조 우수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추진 동력 확보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 행정발전 동모 및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 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 기능별 적정인원 배정
  - 특별승급은 개인적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이 명확한 경우에 실시

    ※ 특별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의 업무실적과 중복되지 않을 것
  - 기능별 현원 기준으로 특정기능에 편중되지 않게 배정하되 부서별 업무 및 기피부서 등 감안 배정
-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 실적 공개검증, 심사위원의 대표성 확보 등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실시

06 특별승급 절차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 (설 치) 본청, 지방청 및 교육원에 특별승급위원회 설치
  - 중특단 및 정비창은 본청에서 일괄 심사
- (구 성) 3인 이상 7인 이하〈위원장 총경·4급 이상, 위원 경정·5급〉
  - 위원 중 1/3은 외부위원 위촉

선발절차

- (시 기) 부서장은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 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시 추천

  ※ 부서장 :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 본청 직속부서는 차장 결재 후 추천

- (대 상)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실적은 긴급구조 실적 우수자, 국정과제 추진 및 정부혁신 업무 우수자, 행정발전 유공,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업무행태 개선 등 승급의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을 정도

- (절 차)

실적 발생시 대상자 추천 (수시)	➡	공적 조사 및 공적 공개 (3일 이상)	➡	소속 기관장 결재 후 대상자 추천	➡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수시)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1일), 승급발령
각 부서장		조사(소속감찰) 공개(소속인사)		본청국별 소속기관별		본청 주관		본청 (인사)

- (조 사) 대상자 선발 전 업무실적 조사 실시
  - 특별승급은 장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인 점을 감안 엄정한 실적 검증
  - 감사담당관 주관 개인별 제출 실적에 대한 사실 조사 후 감찰공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선발위원회에 제출
  - 일상적 업무실적이나 특별승급 요건에 미달된다고 판단 시 배제
  - 허위 실적 제출 확인 시 관련자 문책 조치

- (검 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공적 공개 및 이의신청
  - 추천자의 공적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 검증 실시

    ※ 공개 검증 시 공적내용과 다르거나 이의가 접수된 경우 재조사 실시

  - 이의신청 기간은 기관별 1일 이상 부여,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하고 심사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

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해당 공무원 승급자에게 통보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결정 후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승급 발령
  - 특별승급일이 해당 공무원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

특별승급 취소

- 해당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특별승급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승급 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승급자가 동일한 공적으로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일 기준으로 특별승급 발령을 취소

제출 서류 (국, 관, 과 및 소속기관 → 인사담당관실)

- 공적기술서
- 대상자 공적 요약서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 공적조서 각 1부
- 청문감사 공적확인서 각 1부
- 소속 과(대)장 공적확인서 각 1부
- 추천 대상자 각서 각 1부
- 특별승급 심사의결서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
- 특별승급 추천 의결자 공적요지
- 이의 신청서 및 이의 신청 확인서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상벌상계(발령)

01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징계령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상벌상계제 실시 규칙(해양경찰청 예규)

02 적용 범위

- 적용범위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5급 이하)

  ※ "상"이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또는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표창

  ※ "벌"이란 「경찰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등에 의한 징계,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경고, 주의 또는 시말서

03 상계 방법

- 상과 벌은 "상벌평점기준표"에 따라 각각 점수로 평점하고 그 상벌의 점수를 가감하여 상계
- 상벌은 각각 해당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여 상계 가능

  ※ 다만, 경찰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경고·주의 또는 상은 해당 승진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봄
- 하나의 상으로 벌을 상계하고 남은 점수는 다시 다른 상의 점수에 가산하여 다른 벌과 상계함
- 벌을 받은 자가 그 벌이 상계되기 전에 다시 다른 벌을 받은 후 상을 받은 때에는 그 상과 상계될 수 있는 벌을 먼저 상계
- 경고·주의·시말서 처분을 표창으로 상계 시 본인의 신청 필요

04 상벌상계 발령

-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상벌을 상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상계되는 상 또는 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상계발령 실시
- 발령권자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소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장
- 상벌상계 발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상벌상계 발령 시 다른 인사발령의 경우에 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

  ※ 경고·주의처분 상계 시 상벌상계발령은 하지 않고 감찰담당의 통지서로 함
- 인사기록카드의 "㉑징계형벌" 란에 아래와 같이 상·벌 사항 기록

(예1)

	년 월 일	계 급	종 류	사 유	발 령 기 관
㉑ 징계형벌	20××. ×.×	순 경	견 책	직 무 태 만	○○ 해양경찰서장
	20××. ×.×	〃	상기징계처분을 20××. 1. 10 해양경찰경찰청장 표창 제00호에 의거 상계 (상계 후 나머지 점수 1점)		○○ 해양경찰서장

(예1)

	년 월 일	계 급	종 류	사 유	발 령 기 관
㉑ 징계형벌	20××. ×.×	경 감 〃	감봉3월 견 책	근무지 이탈 위 신 실 추	○○ 해양경찰서장
	20××. ×.×	〃	20××.10.10일자 감봉 3월을 20××.10.20 국토부장관표창 제500호 20××.12.30 해양경찰청장표창 제150호에 의거 상계		○○ 해양경찰서장

- 상벌상계 기록은 흑서, 상계된 징계기록의 "종류" 란에 아래와 같이 청색인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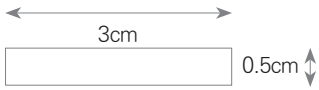

- 인사기록카드 상벌상황 정리 후 인사담당이 확인날인(사유 기재 말미)

05 상벌상계의 효과 및 유의사항

- 각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에 상계된 징계, 경고·주의는 벌로 평가하여 논하지 아니함
-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등 불이익한 전보를 하지 아니함
- 벌 받은 것을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고, 그 공적이 인정된 경우 징계처분이 집행 중인 경우에도 공적에 상응한 포상 수여
  ※ 다만, 정기표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해양경찰 기관의 장은 포상운영에 엄정을 기하여야 하며 징계상계를 위하여 포상권을 남용하거나 과분한 훈격의 포상을 해서는 아니 됨

06 관련 서식

- (서식 7-16) 상벌평점 기준표
- (서식 7-17) 처분 상계신청서(직권경고, 주의, 시말서)
- (서식 7-18) 통지서

서식 7-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7-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 자)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성　별			(5) 국　적 (외국인의 경우)		
(6) 주　소					
(7) 직　업			(8) 소　속		
(9) 직　급		(10) 직　위		(11) 대외직명*	
(12) 근무기간			(13) 공적분야		
(14) 공적요지(50자 내외)					
※ 공적사항에 있는 실적위주(미사여구 기재 지양)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 소　속			(18) 직　위		
(19) 직　급			(20)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내용작성 시 (1,000자 이상)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② 법인 번호	없음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연락처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⑪ 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00자 이상)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금지

서식 7-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생년월일	(만 세)		
	한자		6) 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년 월 일)	
8) 일 반 직	~ (년 월)			13) 교 원	~ (년 월 일)	
9) 별 정 직	~ (년 월)			14) 군 인	~ (년 월 일)	
10) 기 능 직	~ (년 월)			15) 군 무 원	~ (년 월 일)	
11) 고 용 직	~ (년 월)			16) 기타(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 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7-4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배명일 현계급	상벌사항	공 적 개 요
1	인천서	경위	홍길동) (00.00.00)	'13.09.12 '19.03.23	청장(18.1) 표 창	○ ○ ○
2	남해청					
3						
4						
5						

서식 7-5

주요공적요약서

「해양경찰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주요 공적

훈격	2019년			2018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재직기간)	주요공적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재직기간)	주요공적
훈장	홍길동 00.00.00	○○○○ ○○ 00년	■ – ○○~ * – – *기포상내역(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장						
대표						
국표						

※ 작성방법
-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핵심이 되는 공적이 잘 드러나도록 기재
  (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 실적수치 등 사용,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 후보자의 기포상 내역(국무총리표창 이상),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함

서식 7-6

정부포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 검증자료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 공적
1	해양경찰청	경위	이00	공개 공적은 3개 항목 이내로 작성
2	00지방 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경사	한00	
3	○○해양 경찰서	경사	김00	

서식 7-7

자체공적심사 의결서(ㅇㅇ국 · 청 등)

일 시		장 소	
의 안			
심의안전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자체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청장표창 자체공적심사 : 00명		
의결사항	○ 00000000 유공에 대하여 서식00의 추천순위 1~00번 까지를 장관표창 추천하기로 심의·의결함 ○ 00000000 유공에 대하여 서식00의 추천순위 1~00번 까지를 청장표창 추천하기로 심의·의결함		
이견내용			

참석위원	명	참석자명단	구 분	소속·직위	계 급	성 명	서 명
참 석	명		위원장				
불 참	명		위 원				
			위 원				
불참내역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서 기				

서식 7-8

민간인 이력서(예시)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만 세)
	한 자			

경력사항(수공기간 내)

합 계	년 월 일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위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사 자 : (서명)

서식 7-9

청장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서(피추천인 작성용)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동의내용

위 본인은 청장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음주운전 등)에 해당되어 청장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 경징계 및 불문경고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 ○○. ○○.

(피추천인 성명) O O O (서명)

서식 7-10

수시표창 건의 양식

화재선박 ○○호 상황대응 및 구조관련 표창 건의

'19. 7. 00. 14:00 ㅇㅇ시 ㅇㅇ앞 해상에서 침수된 어선 00호(9.77톤)에 대한 상황대응 및 인명구조 관련 표창수여 건의 계획임.

개 요

- '19. 7. 00(토) 00:00경 ㅇㅇ시 ㅇㅇ앞 해상에서...
  - 접수경로 : 행인 → 119상황실 → 00서 상황실

진행현황

- 00:00 구조대 비상출동 및 인근함정 00함 현장 이동지시(ETA 00:00)
  - 현지기상...
- 00:00 함정직원 비상소집, 00항공단 헬기 지원요청...

주요조치(구조세력)

- 함정, 헬기, 구조단정 악기상 속 출동...
- 00구조대 현장 도착, 잠수장비 착용 코 입수...

건의사항

- 신속히 현장에 도착 해상입수 및 즉각적인 응급구조 조치로 생명을 구한 구조대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청장표창 ____매 수여 건의 드립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의 종류

훈장의 약장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태극무공훈장 | 을지무공훈장 | 충무무공훈장 | 화랑무공훈장 | 인현무공훈장

청조근정훈장 | 황조근정훈장 | 홍조근정훈장 | 녹조근정훈정 | 옥조근정훈정

보국훈장 통일장 | 보국훈장 국선장 | 보국훈장 천수장 | 보국훈장 삼일장 | 보국훈장 광복장

포장의 약장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무공포장 | 근정포장 | 보국포장 | 방위포장 | 예비군포장

정부포상의 수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지급)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해양경찰 공로장의 중장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라 지급)

해양경찰청장

경찰 기장 등

지휘관장 | 평 생 장 | 충 성 장 | 봉 사 장 | 성 실 장

해양경찰창설60주년 | 말라카기념장 | G20경비기장 | 핵안보경호유공 | 여수엑스포경비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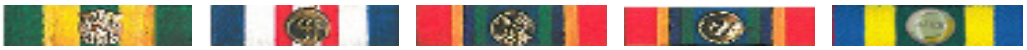

로마교황경호기념 | 86아시안게임 | 88올림픽 | 장애자올림픽 | ASEM경호경비

2002월드컵 | APEC경호경비 | IMF,IBRD경비 | 평창동계올림픽

경찰공무원기장 패용 방법 등

기장 패용 시기

-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해양경찰의 날, 종무식, 시무식, 승진 임용식 등 공식행사 시 패용
- 근무복 또는 기동복 패용은 지휘관의 특별한 패용 지시가 있을 때 패용

기장 패용 기준

- 기장은 좌측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 패용시에는 축소 기장을 사용할 수 있음

  ※ 단, 대통령수장과 국무총리수장은 오른쪽 가슴위에 패용

- 기장은 본인이 수여 받은 것만 패용하되,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임용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공무원기장에 준하여 패용하고, 그 순위는 경찰공무원기장 다음으로 한다.

  ※ 훈·포장 허위 패용시 벌칙(상훈법)에 따라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기장 패용 순서

- 기장의 패용 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 경찰기장(근속기장 등), 기타 기념장의 순서로 패용함을 원칙

3개 패용의 경우

1	2	3

4개 패용의 경우

	1	
2	3	4

5개 패용의 경우

	1	2
3	4	5

6개 패용의 경우

1	2	3
4	5	6

서식 7-13

경찰공무원의 제식

(앞면)

9cm

6cm

제　　호

경찰공무원기장수여증

기 장 명 :

소　　속 :　　생년월일 :

계　　급 :

성　　명 :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5-4A
※ 중앙에 기장 정장도면 삽입

90㎜×60㎜
(인쇄용지 특급) 80 g / ㎡)

(뒷면)

주의사항

1. 기장패용 시에는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할 것
2. 이 증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재교부 받을 것

서식 7-14

기념장수여 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개요	비 고

서식 7-15

기념 수여 대장

● 인적사항

수여번호	수여일자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서식 7-16

상벌평점기준표

상		벌	
훈격별	점수가점	징계·경고 구분	점수감점
● 훈장	20	● 강등	30
● 포장	15	● 정직 3월	25
● 대통령 표창	12	● 정직 2월	20
● 국무총리 표창	7	● 정직 1월	15
● 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 및 검찰총장 표창	5	● 감봉 3월	10
		● 감봉 2월	8
		● 감봉 1월	6
● 청의 장·통합방위본부장·각군 참모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군사령관의 표창	4	● 견책(영창·근신 포함)	4
● 101단장·기동단장·사단장·해양경찰서장·경찰서장·해양경찰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표창	2	● 직권경고 및 주의	
		– 해양경찰청장	
		● 불문경고	2
		● 직권경고	1
		● 주의	0.5
		● 시말서	0.1
● 지방검찰청지청장·여단장 표창	1.5	– 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	
		● 불문경고	1
		● 직권경고	0.5
		● 주의	0.25
		● 시말서	0.1
● 함정장·연대장 표창	1	– 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불문경고	0.5
		● 직권경고	0.25
		● 주의	0.1
		● 시말서	0.1

※ 비고

1. 군의 표창은 대간첩작전, 비상대비 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해당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해당한다.
3. 상과 벌의 적용기간은 해당 계급으로 한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평정점은 "상"의 점수합계에서 "벌"의 점수합계를 뺀 점수의 2분의 1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서식 7-17

(직권경고, 주의, 시말서) 처분 상계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직권경고, 주의, 시말서)
처분 상계 신청서</td><td rowspan="2">결
재</td><td>담 당</td><td>팀 장
(계 장)</td><td>담당관
(과 장)</td><td>청 장
(서 장)</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소 속</td><td colspan="2"></td><td>계 급</td><td></td></tr>
<tr><td>성 명
(한 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처분일자</td><td colspan="3"></td><td>처분기관</td><td></td></tr>
</table>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제 실시 규칙」 제4조제5항과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 직권경고(주의, 시말서) 처분기록을 아래 표창으로 상계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 장 제○○호 (○○년. ○○월. ○○일)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첨 부 : 표창장(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서식 7-18

통지서

통 지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귀하가 받은　　년　　월　　일자 ○○○장 직권경고(주의·시말서)의 벌점은 귀하에게 수여된
　　년　　월　　일자 ○○○장 장려장(표창) 제　　호로 상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기관장　직인

제 8 장

보 수

제1절 보수제도 • 305
제2절 호 봉 • 307
제3절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 324

보수제도

보수체계

- 연봉제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개인별 경력, 직무, 성과등급에 따라 연봉수준 차이
  - 성과급적 연봉제
    - 기본연봉 :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연액
      ※ 다만, 5급(상당)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실적를 토대로 개인별 차등 지급
- 호봉제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봉　급 :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　당 :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
  - 성과급 :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부서별 또는 개인별+부서별 차등 지급

용어의 정의

- (보수) 봉급〈연봉〉 + 기타 각종 수당
- (승급)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연봉) 매년1. 1~12.31까지 1년 동안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
  ※ 기본연봉 :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
  ※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
- (연봉월액)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 보수 항목별 구성

- 수 당(14종)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 ~ 50%, 연 2회)
    - 정근수당가산금(월 5 ~ 13만원, 추산가산금 포함)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 ~ 172.5%, 연 1회 이상)
  -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 자녀 :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 /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자녀의 학비, 분기별)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월 8만원)
    - 육아휴직수당(기본급의 50%,70 ~ 120만원)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근무자(월 3 ~ 6만원), 국외
  -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종사자, 월 4 ~ 6만원)
    - 특수업무수당(기술, 교육 등 4개분야)
    -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 군법무관 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 초과근무수당등(2종)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 실비변상등(4종)
  -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연 2회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 직급보조비
    - 13.5 ~ 75만원

호 봉

01 호봉 관리

관련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범위

-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연구·지도직 포함)

※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또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 및 승급 관련부분이 적용되지 아니함

호봉 관리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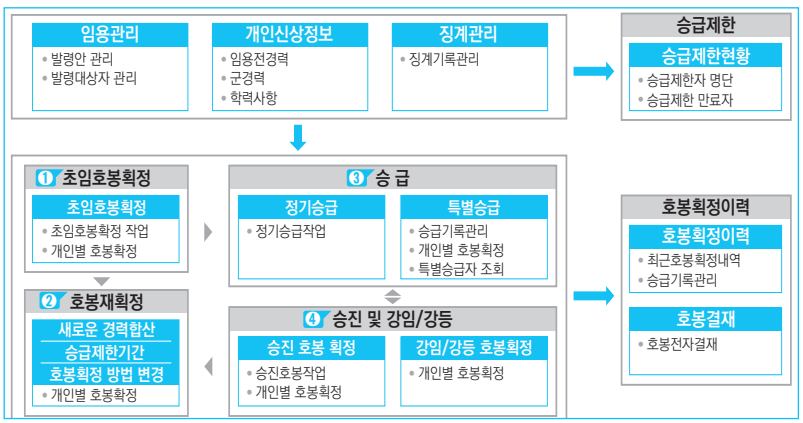

① 신규발령자의 초임호봉획정 및

② 새로운 경력합산, 유사경력합산, 승급제한기간산입 등의 호봉재획정 작업

③ 정기승급대상자의 정기승급 작업과

④ 승진자 또는 강등자의 호봉획정 작업

개 괄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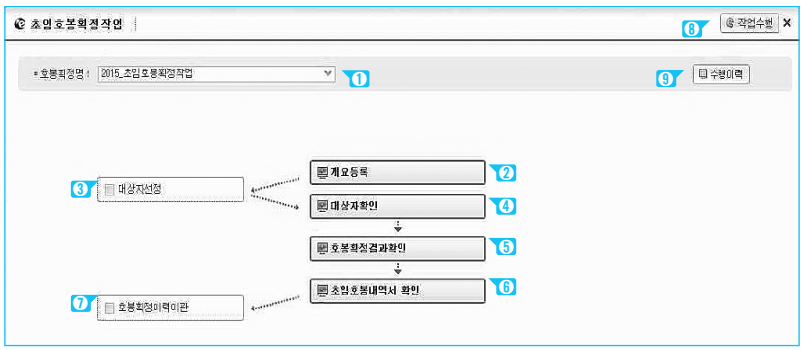

① **호봉획정명** : 초임호봉획정명을 선택하면 이전에 획정 내역과 새로 진행되는 획정의 작업판을 보여준다.

② **개요 등록** : 초임호봉획정 작업판의 개요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대상자선정** : 초임호봉 획정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선정의 Check 박스를 ☑ 하고, 작업판의 "작업수행"을 클릭하면 호봉획정결과가 승급기록 관리로 이관되고 작업수행일자 및 시간이 기록된다.

④ **대상자확인** : 대상자선정 작업 후에 생성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⑤ **호봉획정결과확인** : 대상자의 초임호봉획정 작업을 수행하고 획정된 호봉을 확인한다.

⑥ **초임호봉내역서확인** : 획정된 내역을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하고 온나라에 결재를 상신할 수 있다.

⑦ **호봉획정이력이관** : 호봉획정이력이관 Check박스를 ☑ 하고, 작업판의 "작업수행"을 클릭하면 호봉획정결과가 승급기록 관리로 이관되고 작업 |수행일자 및 시간이 기록된다.

⑧ **작업수행** : 작업판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에 배치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수행" 버튼을 실행한다.

⑨ **수행이력** : 작업수행의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

개요등록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개요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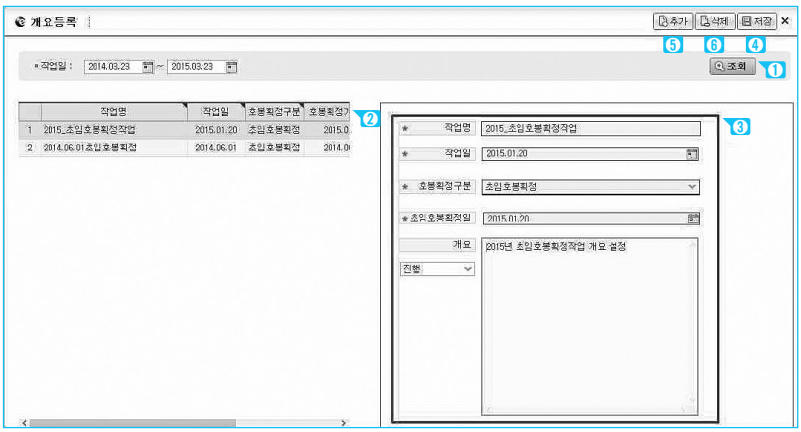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선정

1) 초임호봉획정 작업을 위한 기준정보를 등록한다.

2) 초임호봉획정일은 채용된 인력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등록한다.

① **조회** : 작업일 기준으로 개요를 조회한다.

② **개요목록** : 조회기간(작업일)에 해당되는 초임호봉획정 개요가 조회되고, 작업일을 클릭하면 우측에 상세내역이 조회되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완료된 작업의 리스트를 확인한다.

③ **개요세부내역** : 작업명, 작업일, 호봉획정구분, 초임호봉획정일, 진행상태, 비고를 보여준다.

- 작업명 : 정기승급 작업명을 입력(예 : 2015.01.01.초임호봉(본청))
- 작업일 : 시스템일자 자동입력(수정가능)
- 초임호봉획정일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의 채용일 입력
- 진행상태 : 추가입력시 "진행"으로 표시되며, 호봉획정결과를 이관시 "완료"로 변경됨

④ **저장** : 세부내역을 수정 및 신규로 등록할 경우 저장 버튼을 통해 작업을 수행한다.

⑤ **추가** : 개요를 리스트에 추가하고 세부내역을 작성한 후에 저장버튼을 통해 개요를 등록한다.

⑥ **삭제** : 개요를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저장버튼을 통해 개요를 삭제한다.

대상자선정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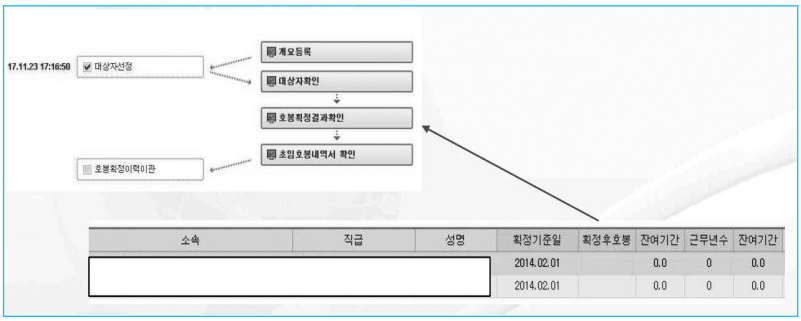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선정

1) 대상자선정에 ☑체크한 후 "작업수행"버튼을 클릭한다.

2) [임용사항직접입력]의 채용일과 [개요등록]시 입력한 최초임용일이 동일한 대상자가 선정된다(호봉제, 연봉제 포함).

대상자확인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대상자확인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확인

1) 초임호봉 대상자를 확인한다.

2) 대상자 선정 작업 후에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 삭제 및 인쇄작업을 수행한다.

1 **조회** : 호봉획정명, 급여구분, 대상자구분을 선택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초임호봉획정 대상자를 조회한다.

2 **삭제**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단, 삭제 작업을 진행한 후에도 저장 작업을 수행하여야 정상적으로 삭제 처리됨).

3 **저장**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 리스트에 수정 및 삭제를 하였을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변경한다(저장 작업을 수행하여야 정상적으로 반영됨).

4 **인쇄** : 공통 인쇄 모듈을 통해 초임호봉획정 대상자를 인쇄한다.

호봉획정결과확인(초임호봉)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호봉획정결과확인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선정

1) 초임호봉 획정작업을 수행한다.

2) 초임호봉 대상자의 초임호봉 획정작업을 수행한 후 획정 내역을 확인하고 인정경력을 수정한 후 인정경력을 토대로 호봉산정을 수행한다.

1 **조회** : 호봉획정명을 기준으로 초임호봉획정 대상자를 조회한다.

2 **초임호봉획정내역**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의 획정 내역을 확인한다.(획정내역을 더블 클릭시에 [초임호봉획정내역표] 화면으로 이동)

3 **전체선택** : 초임호봉획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초임호봉획정내역 리스트 맨 끝의 '획정'체크박스에 체크한다.

4 **전체해제** : 초임호봉획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초임호봉획정내역 리스트 맨 끝의 '획정'체크박스에 체크가 해제된다.

5 **초임호봉획정작업** : '초임호봉획정작업'버튼을 클릭할 경우 초임호봉획정 내역 리스트 맨 끝의 '획정'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대상자의 초임호봉획정작업을 수행한다.

6 **호봉내역서확인** : 호봉획정 작업을 수행한 후에 [초임호봉획정내역표] 화면으로 이동하면 인정계급과 획정 내역을 보여준다.

7 **인쇄** : 공통 인쇄 모듈을 통해 초임호봉획정 대상자를 인쇄한다.

초임호봉획정내역표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호봉획정결과확인

① **조회** : 획정일과 획정구분을 기준으로 초임호봉획정 내역을 조회한다.

② **학력사항조회** : '학력사항조회'버튼을 클릭할 경우 [인사기록/기록관리/일반기록/개인기본정보조회] 화면에 있는 대상자의 학력사항 탭을 보여준다.

③ **인정경력을토대로호봉산정** : 초임호봉획정내역에서 호봉환산율/근무연수환산율 또는 인정계급을 수정한 후에 '인정경력을 토대로 호봉산정'작업을 수행할 경우 수정사항이 반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초임호봉획정을 다시 수행한다.

④ **저장** : 수정된 데이터를 '저장'버튼을 통해 적용시킨다.

초임호봉내역서 확인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초임호봉획정작업/초임호봉획정내역서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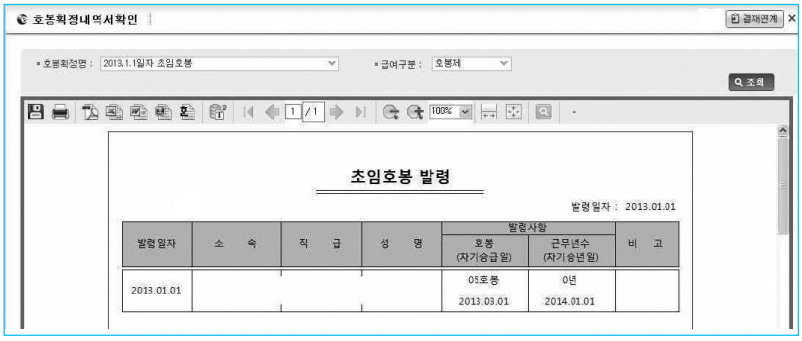

▶ 초임호봉획정 호봉획정결과확인

1) 초임호봉 획정 내역서를 보여준다.

2) 호봉획정결과확인(초임호봉) 화면에서 획정 완료된 초임호봉 획정 내역서를 리포트 형태로 보여주며 온나라 결재연계를 수행한다.

호봉획정이력 이관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정기승급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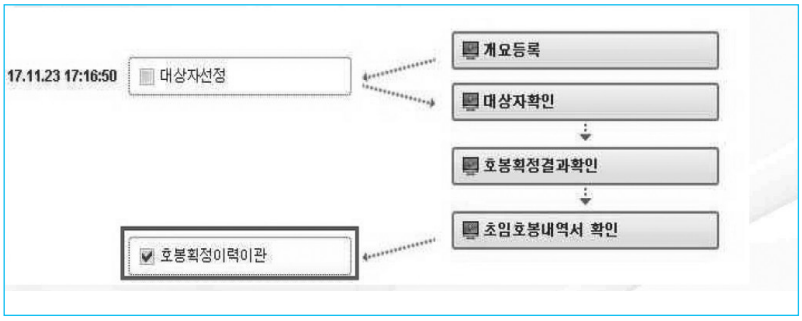

▶ 초임호봉획정 호봉획정이력이관

1) 호봉획정이력이관에 체크한 후 "작업수행"을 클릭하면 호봉획정결과가 승급기록에 이관되며, 급여에 반영되고 이관된 결과는 【승급기록관리】 화면에서 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최근 호봉획정이력이 급여에 반영).

2) 전체 인원에 대한 확인은 【최근호봉획정내역】화면에서 가능하나, 변경은 불가하다.

개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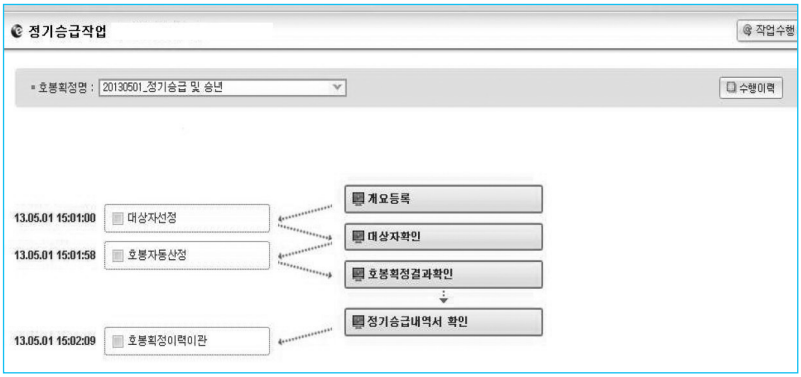

개요등록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정기승급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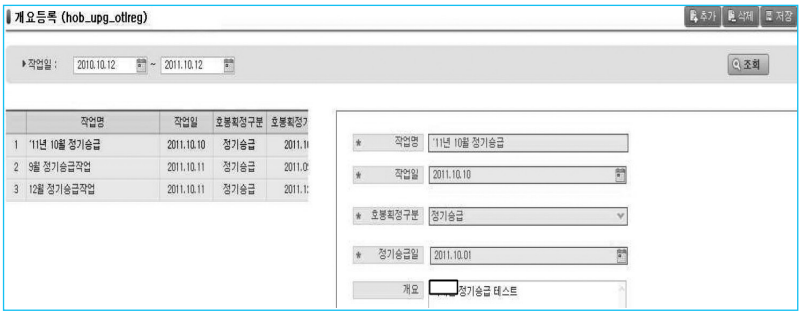

▶ 정기승급 수행을 위한 개요를 등록한다.

1) 정기승급 작업명, 정기승급일등 작업수행을 위한 정보를 등록한다.

2) 등록된 정기승급일로 승급 및 승년 대상자가 선정된다.

- 승진호봉획정작업, 초임호봉획정 수행작업은 작업방법이 유사함

대상자선정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정기승급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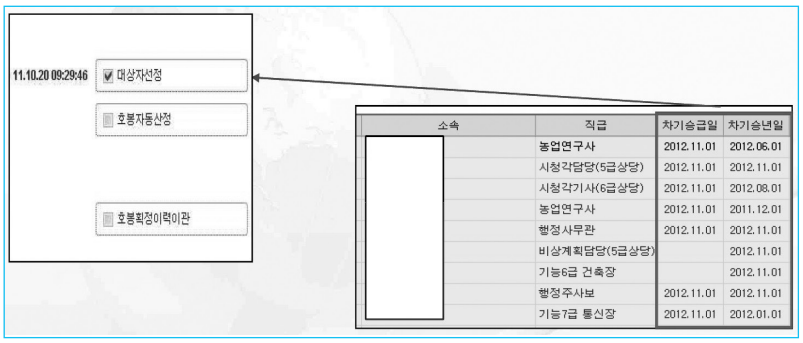

➤ 정기승급 대상자선정

1) 대상자선정에 체크한 후 "작업수행"버튼을 클릭한다.

2) 차기 승급일 또는 차기 근무연수가 동일한 대상자가 선정된다(호봉자, 연봉제 포함).

3) 휴직, 징계 등으로 인한 승급제한자는 대상자선정 시 제외된다(승급제한자 조회화면에서 학인가능).

호봉자동산정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정기승급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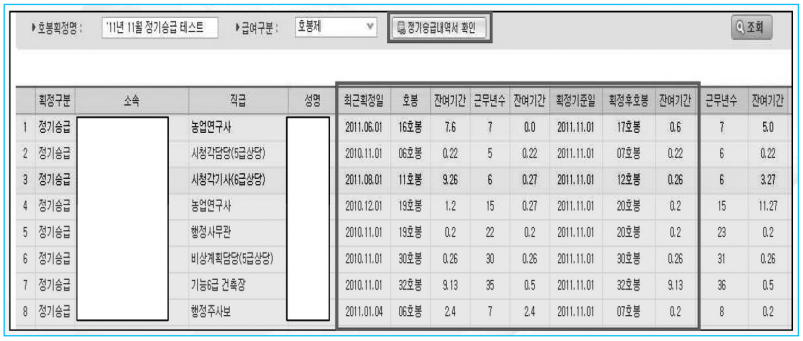

➤ 정기승급 호봉자동산정

1) 정기승급 또는 정기승년 획정작업을 수행한다.

2) 최고호봉, 휴직 중, 징계 중이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정기승급내역서 확인】버튼 클릭시 리포트형식으로 승급 및 승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호봉획정이력 이관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정기승급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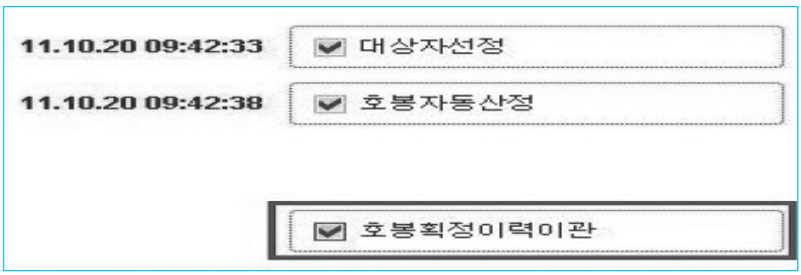

▶ 정기승급 호봉획정이력 이관

1) 호봉획정이력이관에 체크한 후 "작업수행"을 클릭하면 호봉획정결과가 승급기록에 이관되며, 급여에 반영되고 이관된 결과는 【승급기록관리】 화면에서 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최근 호봉획정이력이 급여에 반영).

2) 전체인원에 대한 확인은 【최근호봉획정내역】화면에서 가능하나 변경은 불가하다.

승급기록관리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호봉획정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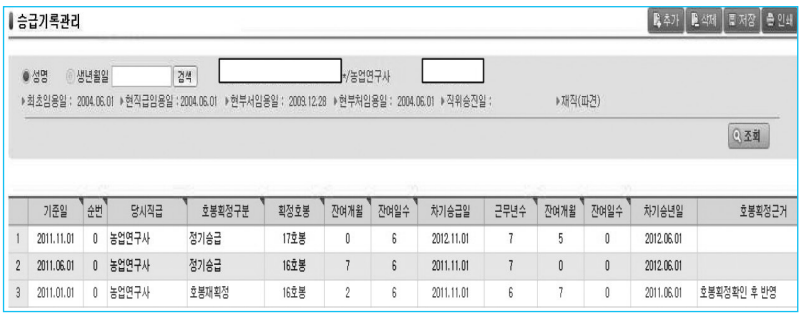

	기준일	순번	당시직급	호봉획정구분	획정호봉	잔여개월	잔여일수	차기승급일	근무년수	잔여개월	잔여일수	차기승년일	호봉획정근거
1	2011.11.01	0	농업연구사	정기승급	17호봉	0	6	2012.11.01	7	5	0	2012.06.01	
2	2011.06.01	0	농업연구사	정기승급	16호봉	7	6	2011.11.01	7	0	0	2012.06.01	
3	2011.01.01	0	농업연구사	호봉재획정	16호봉	2	6	2011.11.01	6	7	0	2011.06.01	호봉획정확인 후 반영

▶ 획정결과 이관결과 확인

1) 획정 후 이관된 결과를 개인별로 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획정된 결과를 담당자가 수정 또는 신규로 추가한 자료는 청색폰트로 표기된다.

승급제한자 조회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호봉획정이력

	소속	직급	성명	호봉	제한시작일	제한종료일	제한사유
1		농촌지도사		06호봉	2010.09.27	2011.11.09	휴직
2		농촌지도관		11호봉	2011.10.11		휴직
3		농촌지도사		15호봉	2011.10.11		휴직
4		시청각기사(6급상		32호봉	2011.04.01		최고호봉

➤ 승급제한자 명단조회

1) 기준일로 승급제한자(휴직자, 징계처분 중인자, 징계처분 후 승급제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최고호봉 등)의 명단을 조회한다.

2) 징계 관련 내용은 기록관리 〉 징계관리 〉 징계기록관리에서 확인

연구관승급심사 대상자관리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정기승급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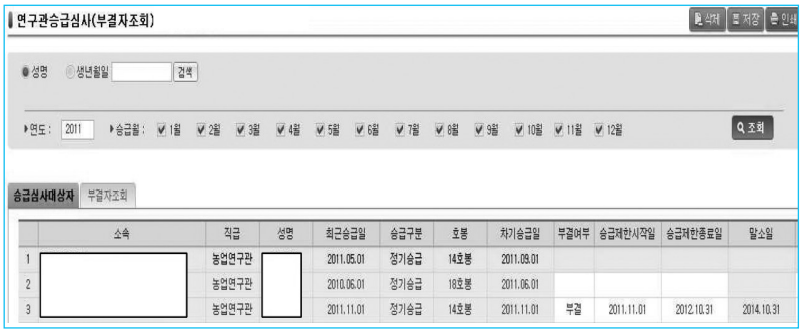

	소속	직급	성명	최근승급일	승급구분	호봉	차기승급일	부결여부	승급제한시작일	승급제한종료일	말소일
1		농업연구관		2011.05.01	정기승급	14호봉	2011.09.01				
2		농업연구관		2010.06.01	정기승급	18호봉	2011.06.01				
3		농업연구관		2011.11.01	정기승급	14호봉	2011.11.01	부결	2011.11.01	2012.10.31	2014.10.31

➤ 연구관승급심사 대상자관리

1) 선택된 연도, 승급월로 해당 호봉이 10, 14, 18, 22, 26호봉 대상자를 조회한다.

2) 부결여부 항목에 '부결'로 선택된 대상자는 차기 승급일로부터 1년 동안 승급제한자로 관리된다(다만, 승급은 제한되나 승년은 제한대상이 아님).

개 괄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개인별호봉획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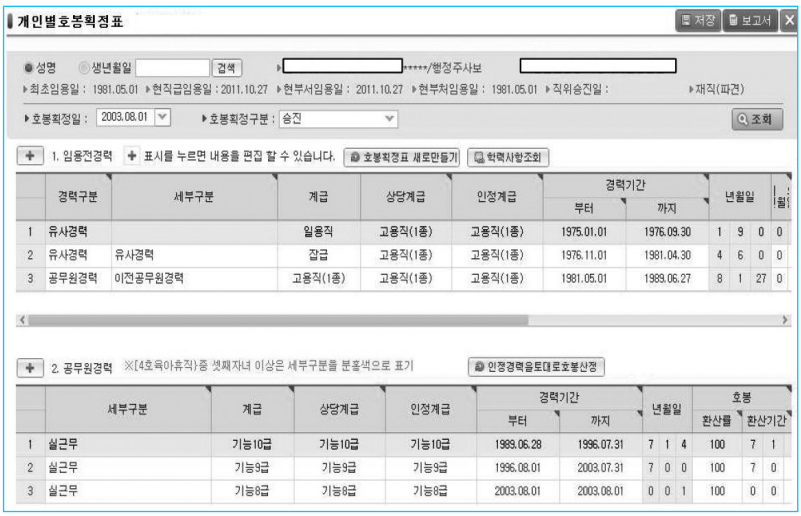

초임호봉획정-호봉획정일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개인별호봉획정표

▶ 호봉획정시기

1) 공무원경력을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

2) 유사경력을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

4) 재 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 획정

5) 징계자의 경우 승급제한 종료일 다음날 호봉재획정(규정에는 없으나 차기 승급〈승년〉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초임호봉획정-임용전 경력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개인별호봉획정표

➤ 임용전 경력

1) 유사경력, 군경력 표시(유사경력에 등록된 상당계급에 맞는 인정계급 자동 세팅, 미등록시 최초임용계급으로 자동 세팅)

2) 인정경력 또는 환산율 변경가능(유리한 경력 반영 시 주로 활용)

3) 제외기간 입력가능

4) 임용전 경력 임시로 추가 가능

5) 중복된 기간이 존재할 경우, 경고 메시지 출력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석사·박사학위 취득 법정연수는 추가 입력관리 또는 입용전 경력에 입력

초임호봉획정-공무원경력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개인별호봉획정표

➤ 공무원경력

1) 공무원경력

2) 인정경력 또는 환산율 변경가능(유리한 경력 반영 시 주로 활용)

3) 공무원경력 임시로 추가 가능(권장사항 아님)

4) 중복된 기간이 존재할 경우, 경고 메시지 출력

5) 공무원경력이 단절된 경우 이전 공무원경력은 임용전 경력에 표시됨

초임호봉획정-호봉획정결과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개인별호봉획정표

3. 호봉획정결과 [호봉획정결과반영]

호봉획정일	계급	호봉	잔여기간	차기승급일	근무년수	잔여기간	차기변동일
2003.01.01	연구사	03호봉	6.0	2003.07.01	0	6.0	2003.07.01

4. 이전호봉획정결과

호봉획정일	계급	호봉	잔여기간	차기승급일	근무년수	잔여기간	차기변동일
2003.01.01	연구사	03호봉	6.0	2003.07.01	0	6.0	2003.07.01

호봉획정결과

- 임용전 경력, 공무원경력을 계급별로 합하고, 호봉 계산규칙에 따라 산정된 결과가 조회되며, 결과조회는 수정할 수 없음

이전호봉획정결과

- 호봉획정일에 가장 가까운 최근에 작업한 호봉획정결과가 조회됨

호봉획정표 반영

- 【호봉획정결과】를 클릭할 때 호봉획정결과가 급여에 반영되고, 결과는 호봉획정이력/승급기록관리에서 확인 가능

초임호봉획정-주요버튼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개인별호봉획정표

▸호봉획정일 : 2003.08.01 ▸호봉획정구분 : 초임호봉획정 [조회]

[+] 1. 임용전경력 [+] 표시를 누르면 내용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호봉획정표 새로만들기] [학력사항조회]

	경력구분	세부구분	계급	상당계급	인정계급	경력기간 부터	경력기간 까지	년월일			월
1	유사경력		일용직	고용직(1종)	고용직(1종)	1975.01.01	1976.09.30	1	9	0	0
2	유사경력	유사경력	잡급	고용직(1종)	고용직(1종)	1976.11.01	1981.04.30	4	6	0	0
3	공무원경력	이전공무원경력	고용직(1종)	고용직(1종)	고용직(1종)	1981.05.01	1989.06.27	8	1	27	0

호봉획정표 새로만들기

1) 임용전 경력, 임용사항 직접입력, 병역사항, 징계사항으로부터 호봉에 필요한 경력들을 가져 온다.

2) 【호봉획정표 새로만들기】를 클릭하면 메시지 창이 팝업되고「작성」,「재작성」,「취소」를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작　성 : 기존의 호봉획정 결과를 삭제하지 않고 신규 작성
- 재작성 : 기존의 호봉획정 결과를 삭제하고 재 작성
- 취　소 : 현재의 팝업창을 닫음

호봉관리 잔여기간 주의사항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군 의무복무로 휴직한 후 2010년 10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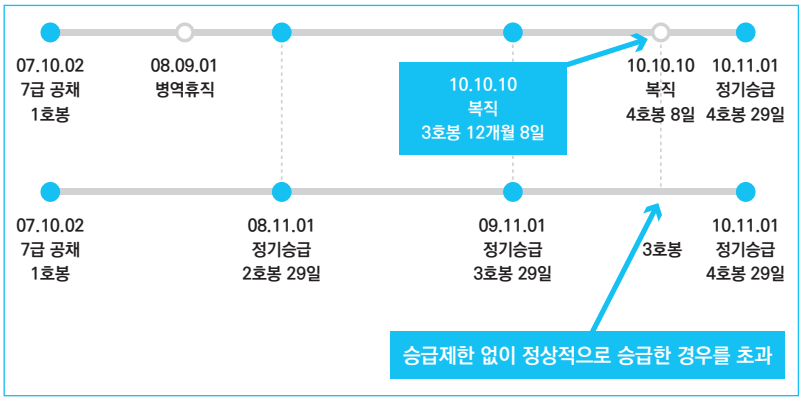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재획정(승급)
  - 호봉재획정시기 : 2010. 10. 10(복직일)
  - 승급대상기간 : 3년 8일(2007. 10. 2 ~ 2010. 10. 9)
  -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3년 8일 = 4호봉, 잔여기간 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복직일(2010. 10. 10.)에 3호봉(잔여기간 12월 8일)으로 승급시킴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주의!!

-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에 인정받는 최대 1년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보다 늦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하여 복직 시 승급이 가능하도록 호봉 및 차기 승급일 조정 필요

개 괄

메뉴 경로 : 인사기록/호봉관리/호봉획정이력/승급기록관리

	기준일	순번	당시직급	호봉획정구분	획정호봉	잔여개월	잔여일수	차기승급일	근무년수	잔여개월	잔여일수	차기승년일	
1	2019.01.15	0	행정주사	호봉정정	02:호봉	2	18	2019.11.01	2	2	18	2019.11.01	호
2	2019.01.05	0	행정주사	승진	02:호봉	2	8	2019.11.01	2	2	8	2019.11.01	호
3	2018.11.01	0	행정주사보	정기승급	03:호봉	0	4	2019.11.01	2	0	4	2019.11.01	호
4	2018.10.01	0	행정주사보	유사경력합산	02:호봉	11	3	2018.11.01	1	11	3	2018.11.01	호
5	2018.08.31	0	행정주사보	초입호봉획정	01:호봉	0	0	2019.09.01	0	0	0	2019.09.01	호

▶ 초임호봉획정 호봉획정결과확인

1) 공무원개인별로 호봉획정내역을 관리한다.

2) 획정된 내역을 변경하거나 신규호봉내역을 직접 추가할 수 있다.
단, 직접입력 또는 수정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3) 내역은 급여시스템에 반영된다.

관련 Q & A

정기승급, 승진호봉획정, 개인별호봉획정 결과와 '승급기록관리' 메뉴

- 정기승급 또는 승진호봉획정 작업 후 '호봉획정이력이관', 개인별호봉획정 작업 후 '호봉획정결과 반영'을 하게 되면 모두 '승급기록관리(이력수정)' 화면으로 그 결과가 보내진다.
- 보내진 결과는 차후 정기승급 작업의 대상자선정시 차기승급일과 차기승급연일을 참조하여 추출할 때 사용된다.
- 결국 모든 호봉획정결과는 '승급기록관리(이력수정)'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므로 가장 간단한 호봉획정 방법이다.

승진호봉획정작업의 대상자선정시 (자료없음) 에러가 발생

- 승진호봉획정작업의 대상자선정 작업시 승진호봉획정대상자(자료없음) 이라는 에러가 발생할 경우는 호봉획정개요에서 작성한 승진일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로 이 때는 '임용사항직접입력' 메뉴에서 해당 승진일자로 승진임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승진 임용이 있어도 위의 에러가 발생할 때에는 호봉작업권한기관이 타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자에 대한 작업을 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다. 위의 에러는 발생하지 않으나 호봉획정대상자에 인원이 누락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 또한 임용사항 직접입력의 처음 임용사항의 비고란에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르고 저장하면 나타난다.

개인별호봉획정표의 사용

- 개인별호봉획정표는 호봉의 모든 사항에 관해 인사담당자가 호봉획정대상자 개개인별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호봉의 수많은 예외사항들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임. 개인별호봉획정표는 〈1.임용전경력〉, 〈2.공무원경력〉 모두 각 번호 앞의 '+' 버튼을 사용하여 임용등의 사항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임용전경력'과 '임용사항직접입력'의 임용사항을 '새로만들기'버튼을 이용 생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생성된 임용전경력과 임용사항에 관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변경하고 '인정경력을 토대로 호봉산정'버튼을 클릭하여 그 결과를 〈3.호봉획정결과〉에서 확인한다. 획정한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호봉획정결과 반영'버튼을 클릭 결과를 이관하고 이관된 결과는 '승급기록관리(이력수정)'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개인별호봉획정표는 과거나 미래의 호봉에 관한 내용도 획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호봉획정일과 호봉획정구분을 정확이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시작시점 이후만 재산정'버튼은 〈2.공무원경력〉의 란의 맨 오른쪽 칸에 있는 '시작시점'을 표시한 후 그 이후 임용에 관해서만 호봉을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새로이 임용을 참조하여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 '새로만들기'버튼을 클릭하면 '작성'과 '재작성'두 개의 버튼이 나타나는데 '작성'은 현재 작업중인 호봉획정일 직전 호봉획정한 자료(최근호봉획정자료)를 참조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재작성'은 임용전경력과 임용사항을 신규로 생성하는 차이가 있다.

특별승급 후 특별승진하여 기존 특별승급 호봉을 빼야할 경우

- 특별승급 작업을 하면 향후 호봉획정 작업시 특별승급한 호봉을 계속 상속받아 호봉이 가산되어 나타나므로 특별승급건과 동일한 건으로 특별승진을 할 경우 기존 특별승급한 호봉획정 내용을 '승급기록관리(이력수정)'화면에서 삭제하고 승진과 관련된 호봉획정 작업을 하면 특별승급시 추가되었던 호봉이 빠진 상태로 획정됨. 특별승급한 호봉획정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개인별 호봉획정 작업시 지속적으로 특별승급한 호봉이 포함되므로 호봉 산정시 주의해야함. 특별승급 후 특별승진의 경우 특별승급한 이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특별승급 작업방법

- 개인별호봉획정표를 사용하여 특별승급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호봉획정구분을 '특별승급'으로 하고 '새로 만들기'버튼을 클릭하여 호봉관련 데이터를 생성한 후 〈2.공무원경력〉 란의 해당 계급 경력의 특별승급회수 칸에 특별승급한 회수를 기재하고 '인정경력을 토대로 호봉산정'버튼을 클릭하여 호봉 결과를 생성함. 생성된 결과가 올바를 경우 '호봉획정결과 반영'버튼을 사용하여 결과를 이관하여 작업을 마침

06 관련 서식

➤ (서식 8-1) 유사경력에 관한 지침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01 관련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02 지급 시기 및 대상 등

지급시기

-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한 후 지급
  - 단, 해양경찰청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급대상

-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 산출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지급대상 포함
  -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청 또는 지방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산출
  - 전년도 중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자로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

    ※ '19년 11월 1일 승진임용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

지급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미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잘못된 계산식으로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위반자, 초과근무 승인권자(성과상여금에만 적용, 성과연봉은 미적용)
-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성과상여금에만 적용, 성과연봉은 미적용)
  - 다만,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 강등은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강등된 직급 적용

관련 Q & A

역(曆)에 의한 계산방법

-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연가(총 3일)를 사용하였을 경우, 3월 6일까지 근무하고 3월 7일부터 휴직하여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총 3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근무(총24일)하고 1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특별휴가(총90일)를 사용하고 4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근무(총 36일)하고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근무기간이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이므로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함

03
세부 지급계획

지급방법 및 단위

- (지급방법) 부서성과평가 및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
  - 총경(4급) 이상 : 부서성과평가(80%) + 근무성적평정(20%)
  - 경정(5급) 이하 : 부서성과평가(50%) + 근무성적평정(50%)

- (지급단위) 기관별, 계급·직급·직렬별 구분하여 평가 및 지급
  - 본 청 : 경정 및 5급 이상, 소속 경감 및 6급 이하
    (관리운영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 포함)
  - 지방청·교육원·중특단 : 경감 및 6·7급, 소속 경위 및 8급 이하
    (관리운영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 해양수산부 소속 직무파견자 포함)
  - 경찰서 : 경위 및 8급 이하 (관리운영직, 시간선택제 포함)

    ※ '19년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처리기준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급등급 및 지급률

- 등급별 인원 결정(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다만, 평가대상 현원이 1인 → A, B, C등급 중 1개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2인과 3인 → S, A, B, C등급 중 각각 1개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 → S등급 1개, A등급 1개, B등급 2개 부여

- 경감 이하 및 6급상당 이하 공무원(성과상여금)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25%	35%	40%
지급률(지급기준액 기준)	172.5%이상	125%	85%

- 경정 이상 및 5급상당 공무원(성과연봉 대상)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25%	35%	40%
지급률(지급기준액 기준)	8%	6%	4%

- 4급상당 이상(성과연봉 대상)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지급기준액 기준)	8%	6%	4%	0%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성과연봉 대상)

구 분	매우 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인원비율	20%이하	예산범위 내 자율 설정		10%이상
지급률(지급기준액 기준)	18%	12%	8%	0%

고위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 ('미흡+매우미흡')의 인원은 평가대상자 대비 10%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함
- 상위등급('우수')과 중위등급('보통')은 기관 예산범위 내 자율 설정
- 단,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 ~ 2명인 경우 매우우수 등급이 1명 이하로 함

지급기준액

성과연봉 대상자

(단위 : 천원)

1급, 치안정감	2급, 치안감	3급, 경무관	4급, 총경	5급, 경정
139,516	125,840	113,873	104,837	88,417

※ 과장급 직위가 없는 복수직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460천원 적용

※ 고위공무원 '나'등급의 경우 95,480천원 적용

성과상여금 대상자

(단위 : 원)

경 찰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3,758,200	3,396,600	3,030,800	2,549,700	2,232,400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
	3,525,600	2,997,500	2,490,000	2,117,200	-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	-
	4,681,500	3,331,900	2,323,100	-	-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	-	-
	4,478,000	3,262,100	-	-	-

※ 실지급액 : 조정지급기준액×지급률×(편성예산÷소요예산)

04
성과급
평가방법

평가방법

직급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부서성과평가	근무성적	총 계
경무관·4급 이상	80%	20% (직무수행능력평가)	100%
총 경	80%	20%	100%
경정·5급 이하	50%	50%	100%

※ 부기관장(차장), 고위공무원단은 성과(직무수행능력)평가에 따라 등급 결정

※ 해수부 소속 직무파견자, 시간선택제(일반직)는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근무성적

- 경무관·4급 이상 : 직무수행능력평가를 20점으로 반영
  (S-20점, A-16점, B-12점, C-8점)
- 총 경 : 근무성적평정을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경정(5급) 이하 : 근무성적평정을 5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일반직은 근무성적 2회 평균점수 반영(해수부 파견직원 포함)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 점수부여 기준〉

사 유	점수부여 기준
공무상 질병 휴직자	직급별 지급대상자 평균 점수의 100%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급별 지급대상자 평균 점수의 90%
국내·외 교육파견(공로연수 포함) 장기병가(15일 초과) 기타 휴직	직급별 지급대상자 평균 점수의 80%
직위해제 대기 등 무보직	직급별 지급대상자 평균 점수의 70%
기 타 (신규임용 등)	직급별 지급대상자 평균 점수의 50%

※ 해양경찰청 성과평가 계획의 부서성과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배점기준 준용

▶ 성과평가 : 부서성과평가 결과 반영

▶ 동점자 처리기준(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 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에 순위 결정

▶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단위별(소속기관 등)로 계급별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성과급운영위원회 개최(심의)

- (설 치) 인사위원회실
- (구 성) 위원장 : 기획조정관 / 간사 : 인사운영팀장
  위 원 : 계급별, 분야별 대표자 9명
- 주요임무
  - 성과급 지급계획 심의·확정,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 (설 치)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 (구 성)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7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
  소속기관장이 지정

구 분 / 소 속	심사위원회 관할		
	경정·5급 이상 연구직, 전문경력관	경감, 6급, 7급 연구직, 전문경력관 해수부 소속 파견자	경위 이하 8급 이하
본 청	본 청	본 청	
교육원		교육원	
중특단		중특단	
지방청/경찰서		지방청	지방청/경찰서

※ 각 기관별 관리운영직, 시간선택제 포함

- 주요임무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성과급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확정 의결
  -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등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성과급 이의신청 및 재심사

- 지급등급결정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등급을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최하위등급(미지급)은 그 사유를 설명
-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이의제기 기간은 성과상여금 지급전 7일 이상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

순위명부 작성

① 지급계획 작성 → ② 성과급운영위원회 → ③ 지급계획 확정 → ④ 성과급심사위원회 →
⑤ 성과등급 통보 → ⑥ 이의신청(7일) → ⑦ 재 심사 → ⑧ 성과급 지급

관련 Q & A

위원회 운영방법은?

- 해양경찰청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설치

12.31자 퇴직자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나요?

-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인 경우, '19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파견자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 기관별 지급대상인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 가능
- 다만,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봄

연봉대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공무원으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받는 행위

06 관련 서식

- (서식 8-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서식 8-3)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서식 8-4) 성과상여금 심의의결서
- (서식 8-5)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 (서식 8-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 (서식 8-7) 이의신청서
- (서식 8-8)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 (서식 8-9) 표준설문조사 항목
- (서식 8-10) 설문조사 결과보고

유사경력에 관한 지침

1. 동일분야 인정기준

●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100%)

-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후 동일한 직렬(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근무경력

●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100%)

- 직종별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하 경채, 종전 특채)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 기타, 현행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분야 경력'에 상응하는 경력도 인정 가능

(예1) '민간근무 경력자'등 각 직종별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특채)시 임용 예정 직위별(직무별)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예2) 임용되는 직렬(직류)과 동일분야에서 근무 중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이 경우 상당계급 적용방법 : 자격증 취득 전 경력(근무연수 적용), 자격증 취득 후 경력(자격증 경력 인정)

2. 상당계급 적용기준

●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100%)

- 전문성 우대 등 차원에서 자격증·박사학위 기준 상당계급 적용

※ 상당계급(예시) : 변호사·의사(5급), 세무사·기사(7급), 임상병리사·기능사(9급)

●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상당계급)

-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연수'기준으로 상당계급 적용. 단, 민간경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직책(직위)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참고)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상당계급 적용기준〉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기능직공무원	기능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경찰·소방공무원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3.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

- 비정규직(상근) 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100%)
- 비정규직(상근)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보수지침에 따라 운영
- 비정규직 3월미만 근무한 경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과의 형평성 고려

「상근」의 개념

-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Full-time으로 근무

※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경력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동일분야, 정규직·상근 여부 등 경력인정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사자가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호봉경력 인정 곤란

4.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본청, 지방청, 중특단, 교육원, 정비창)

- 구 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위원장1, 위원 4이상, 간사1)
  - 위원장 : 호봉업무 담당 과장
  - 위 원 :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 또는 담당급 / 간사 : 호봉담당자

- 기 능
  -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기준
  - 개인별 호봉 재획정 시마다 반드시 개최 원칙
  -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만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가능
  - 초임호봉 획정 시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생략 가능

※ 유사경력합산이 아닌 호봉 재획정의 경우(승급 제한기간 산입, 휴직·정직·복직 등) 심의회 개최 불필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19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군무원)·별정직	1 급	6,470,400
	2 급	5,835,600
	3 급	5,280,900
	4 급	4,659,100
	5 급	4,100,800
	6 급	3,525,600
	7 급	2,997,500
	8 급	2,490,000
	9 급	2,117,200
전문경력관	가군	4,681,500
	나군	3,331,900
	다군	2,323,100
연 구 직	연구관	4,478,000
	연구사	3,262,100
지 도 직	지도관	4,321,800
	지도사	3,051,900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1급	4,944,600
	우정2급	4,614,500
	우정3급	4,315,000
	우정4급	4,072,000
	우정5급	3,729,200
	우정6급	3,525,600
	우정7급	2,997,500
	우정8급	2,490,000
	우정9급	2,117,20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1 급	6,677,900
	2 급	6,145,400
	3 급	5,602,400
	4 급	4,973,800
	5 급	4,292,100
	6 급	3,674,600
	7 급	3,116,700
	8 급	2,580,900
	9 급	2,197,100

구 분		지급기준액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6,470,400
	치안감·소방감	5,835,600
	경무관·소방준감	5,280,900
	총경·소방정	4,787,700
	경정·소방령	4,231,400
	경감·소방경	3,758,200
	경위·소방위	3,396,600
	경사·소방장	3,030,800
	경장·소방교	2,549,700
	순경·소방사	2,232,400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6,470,400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5,835,60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280,9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624,300
	별표 12 적용자	4,815,3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019,300
	별표 12 적용자	4,190,1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548,800
군 인	소 장	6,584,700
	준 장	6,160,700
	대 령	5,328,300
	중 령	4,856,700
	소 령	3,838,400
	대 위	2,772,400
	중 위	1,878,300
	소 위	1,878,300
	준 위	4,031,900
	원 사	4,016,100
	상 사	3,057,000
	중 사	1,998,200
	하 사	1,466,800

서식 8-3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19. 1. 25)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의결사항	'19년도 성과상여금 운영계획을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19년도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 "별첨"

년 월 일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

서식 8-4

성과상여금 심의의결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19. 1.25)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의결내용	● 동점자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순위 결정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 – '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 "별첨"
년 월 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서식 8-5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소속 ('19.12.31기준)	계급 (직급)	성명	근무성적평정 (환산점수)	부서성과점수 (환산점수)	총점	비율	등급	지급 여부	현소속
1	00지방청	경위						S	지급	
2	00경찰서	6급						A	지급	
3								B	미지급 (감봉)	
4								C	미지급 (2월 미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확인자 : 기획운영과장　　(인)

작성자 : 인 사 담 당　　(인)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8-7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서식 8-8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서식 8-9

표준설문조사항목(예시)

1.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2.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가 위 1번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부합 ② 부합 ③ 보통 ④ 무관 ⑤ 전혀무관

3.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공서열 ② 보직·근무부서 ③ 근무실적 ④ 직무능력·태도 ⑤ 기타( )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공정 ② 공정 ③ 보통 ④ 불공정 ⑤ 매우불공정

5. 올해 결정된 귀하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대하여 어느정도 수긍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수긍 ② 수긍 ③ 보통 ④ 수긍불가 ⑤ 절대수긍불가

5-1. 위 5번 질문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표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 ② 특정보직·부서 우대 ③ 정실에 따른 지급 ④ 지급후 재분배 ⑤ 평가기준·방식 미비

6. 성과상여금 확대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7.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의 단위는 개인과 부서가운데 무엇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별지급 ② 부서별지급 ③ 두가지 병용

8.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간의 차등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줄여야함 ② 적당함 ③ 현재보다 확대

9.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공직문화 개선	성과평가 기준·방법 개선	기관장, 관리자의 추진의지	지급대상 범위·지급률 조정	평가자·피평가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10. "공직사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11. 기타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

12. 개인별 속성

① 성별 ② 임용시기 ③ 승진시기 ④ 본인의 성과상여금 등급 ⑤ 직종 및 계급

설문조사결과보고

1. 관련 근거

- 조사기간 : ○○○○ . ○○. ○○. ~ ○○. ○○.(○일간)
- 조사방법 : 전자설문/ 설문지 배부
- 조사인원 : ○○○명[응답자 : ○○○명(%)]

※ 응답자 특성

- 성별 : 남 ○○명 / 여 ○○명
- 연령 : 20세부터 5년단위로 표시
- 공무원경력 : 5년 단위로 표시, - 현직급 승진시기 : 5년단위로 표시
- 직종 : 직종별 인원 기입(일반직 ○○명, 별정직 ○○명, 기능직 ○○명 등)
- 계급별 인원수 : 1급 ○○명, 2급 ○○명, ……

2. 설문조사 결과

- 1~10번까지 항목별 결과 기입

<table>
<tr><th colspan="2">매우찬성</th><th>찬성</th><th>보통</th><th>반대</th><th>매우반대</th></tr>
<tr><td colspan="2">명(%)</td><td rowspan="2">명(%)</td><td rowspan="2">명(%)</td><td colspan="2">명(%)</td></tr>
<tr><td>명(%)</td><td>명(%)</td><td>명(%)</td><td>명(%)</td></tr>
</table>

3. 성과상여금제도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답변)

건의사항 내용

- 건의사항내용을 그대로 기술
-

제 9 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1절 휴　직 • 347
제2절 직위해제 • 355
제3절 면　직 • 360
제4절 명예퇴직 • 368
제5절 고충처리 • 376

휴 직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 경찰공무원법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 공무원임용령 제7장 휴직,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휴직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02 휴직사유

휴 직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직권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72조)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거	제1호	제3호	제4호(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5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의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 1년 이내 (1년범위 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복무기간	• 3월 이내(일반직) •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경찰직)	복무기간
재직 경력 인정 여부	• 승진연수 제외 (공무상질병은 산입) • 경력평정 제외 (공무상질병은 산입) • 승급 제한 (공무상질병은 예외)	• 승진연수 산입 • 경력평정 산입 • 승급 산입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 제한	• 승진연수 산입 • 경력평정 산입 • 승급 산입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가능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비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청원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건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친생자, 양자 포함)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간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2년 이내)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총 3년)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1년 이내
재직 경력 인정	• 승진연수 산입 • 경력평정 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 5할산입 (1년 범위 내) • 경력평정 5할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산입 • 경력평정 산입 (첫째는 최초 1년 산입, 단 부부 각각 6월 이상 휴직 시 전부 산입, 둘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 산입) • 승급산입 (최초 1년)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비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출산휴가 별도 신청 가능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최초 1년)	• 간호대상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휴직사유의 입증서류 첨부		• 자기개발 휴직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사용 가능

직권휴직(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 5 호
봉 급	일 반	• 1년 이내: 봉급 70% • 1년 초과: 봉급 50% •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연봉제	• 1년 이내: 연봉월액 60% 지급 • 1년 초과: 연봉월액 40% 지급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수 당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등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청원휴직(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종 류	고용 휴직	유학 휴직	연수 휴직	육아 휴직	가사 휴직	해외동반 휴직	자기개발 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봉 급	지급 안함	봉급의 50% 지급(2년 이내) 연봉월액 40% 지급(2년 이내)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수 당	지급 안함	50% 지급 (2년 이내)	지급 안함	50% 지급(1년 이내)* (첫 3개월은 80%) 상한 : 120만원 (첫 3개월은 150만원) 하한 : 7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만원)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 육아휴직수당으로 산정(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50%)한 금액의 15%에 대해서 수당지급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04 복 직

-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휴직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복직을 명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의 휴직은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른 30일 이내 복귀신청시 당연복직 조항은 휴직복귀자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휴직기간을 당연히 30일 연장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 질병휴직중 복직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4에 의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아 치료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휴직자가 작성한 복직원만을 근거로 복직발령
- 행방불명된 직원에 대해 휴직을 명하면서, 동인이 휴직발령 전 무단결근 등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휴직사유 소멸일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 휴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
- 2년간 유학휴직한 자가 1년 9개월간 휴직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재차 1년 5개월간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총 5년 2개월간 유학휴직을 허용함
-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에는 교육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휴직발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휴직신청서상의 휴직기간(1년) 그대로 휴직 발령함

05 휴직자 인사관리

발령기준일

- 복직원을 받은 날(30일 이내 제출)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
- 복직원 제출일, 제대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의한 복직발령 전일까지는 같은 법 제72조의 휴직 기간으로 봄

관련 Q & A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는?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질병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제한 등 복무관리

-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않음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둠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3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
  - 휴직자는 임용권자에게 반기별로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25호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보고(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자기개발휴직은 매 분기별)
  - 필요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대상자 본인은 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 휴직자는 복무상황점검 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
- 임용권자는 휴직 전에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휴직 기간 중 휴직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각각 1월15일과 7월15일까지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24호 서식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 ○○부 소속공무원은 첫째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2년 간 육아휴직을 하였으나 휴직 중 자녀를 미동반하여 10회에 걸쳐 총 50일간 해외여행을 다녔고, 인사부서에서도 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청 소속공무원은 3년간 유학휴직 후 학업을 마쳤음에도 30일간 복직하지 아니하였고 인사부서에서 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해당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처리하지 아니함

06 업무 절차

개요

① 직권휴직 : 휴직사유 발생 청원휴직 : 본인 신청	➡	② 휴직여부 판단	➡	③ 휴직 발령
휴직 신청시 관련서류 구비		임용(제청)권자		임용권자
④ 휴직자 실태점검 - 분기 또는 반기	➡	⑤ 직권휴직 : 복직여부 판단 청원휴직 : 본인 신청	➡	⑥ 복직 발령
휴직 목적 외 사유 해당시 휴직검증위원회 개최하여 심사		복직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제출		임용권자

관련 Q & A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의미는?

-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 또는 국내학교의 학제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부터 사용 가능하며, 휴직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하여야 함(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가능)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함
- 따라서 진단서상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이후 언제든지 휴직 가능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함

질병휴직자 복직관리 부적절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 2,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에 의하면 질병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09. 6. 30. 우측 소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질병휴직(휴직기간 : '09. 4. 3 ~ '09. 6. 30) 중이던 △△서 경장 ○○○가 복직을 신청하자,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질병의 치료정도 및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후 복직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휴직자가 작성한 복직원만을 근거로 '09. 7. 1. 복직발령
- '10. 5. 25. 좌측 경골 골절의 사유로 질병휴직 중이던 △△서 경사 ○○○의 경우에도 병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휴직자가 제출한 복직원대로 '10. 6. 7. 복직발령

제출서류

- 질병·가사휴직 : 의사의 진단서(가사휴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
- 행방불명휴직 : 법원 결정서
  - 경찰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함

    ※ 일반직공무원 행방불명휴직기간 3개월
- 유학·해외동반휴직 : 대학 입학허가서(해외동반휴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 의사의 진단서(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고용·연수휴직 : 해당기관 요청·승인 공문
- 자기개발휴직 : 자기개발계획서

휴직발령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9. 0. 0. ~ 2020. 0. 0, 0년)

복직발령의 경우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복직을 명함
00000지방해양경찰청 00과장에 보함

2019. 0. 00. 자.

기타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복직을 명함
00000(부서명) 근무를 명함

2019. 0. 00. 자.

직위해제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 공무원보수 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02 요 건

제도취지

-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해제요건(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2호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월 이내대기발령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연구과제는 즉시 부여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함
  - 3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 3호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5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총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무보직기간 총 1년 이상 등

- 6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종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였으나 '19. 12. 22 법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해 재량권 부여
- 제2호와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함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 후 직위부여

관련 Q & A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판례)

- 직위해제처분은 비위사건을 징계하는 처분과는 다르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함(대판 '72. 4. 26, 72누3)

직위해제 법적성격(판례)

- 직위해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이고, 징계는 직원이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는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며,
- 또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대판 '92. 7. 28. 91다30729)

03 보 수 (공무원보수 규정 제29조 및 48조)

사 유	제2호	제5호	제3호·제4호·제6호
봉 급	80% 지급	70% 지급 (단,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된 경우 40% 지급)	50% 지급 (단,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된 경우 30% 지급)
연봉제	70% 지급	60% 지급 (단,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된 경우 30% 지급)	40% 지급 (단,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된 경우 20% 지급)

04 인사 관리

-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첨부)
  -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직위해제(제2호사유) 인사발령통지서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과 대기근무를 명함)
  - 기타의 직위해제 인사발령통지서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자의 각 사유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제3호 직위해제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및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산입
  - 제4호 직위해제 :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 산입
  - 제6호 직위해제 : 징계 및 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

05 직위해제 절차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

직위해제 사유발생 → 직위해제 (3월 이내) → 교육훈련 또는 특별연구과제 부여

대기 명령

- 직위부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있는 경우)
- 직권면직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없는 경우)

※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 구 → 직위해제 → 징계의결 → 직위부여 (감봉이하)

※ 정직의 경우 정직처분 후 복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검찰기소 (약식명령 제외) → 직위해제 → 법원판결 → 직위부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 직위해제 (임용권자) → 조사·수사 종료 → 직위부여* (불기소처분, 무효 또는 취소 확정시 등)

※ 조사·수사 종료 후 기소 또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3호 또는 4호로 다시직위해제 가능

부적정한 인사운영사례

직위해제 제2호(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운영 부적정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사유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직위해제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의 성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 '09. 7. 24 △△서 공업주사 ○○○과 △△서 공업주사보 ○○○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사유(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직위해제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동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비상조명등 납품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직위해제 규정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였고
- △△서장은 공업주사 ○○○을 직위해제 후 약 20일이나 지난 '09. 8. 14 경무기획과장(現 기획운영과장) 전결로 '대형 해양오염사고(중질유 1천톤 이상) 대비·대응을 위한 방제대책 수립'이라는 연구과제를 부여하였고, '09. 10. 23 ○○○을 복직시키면서 연구과제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제2호 직위해제 사유에 따른 직위해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

06 관련 서식

- (서식 9-1) 인사발령통지서
- (서식 9-2)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면 직

01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 1급 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은 제외

02 당연 퇴직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퇴직대상

- 당연퇴직 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 제1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제2호 :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제3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4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제6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7호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5857호, 2018.10.16.)에 따라 법 시행일인 '19. 4. 17부터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되,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57호, 2018.10.16.)에 따라 '19. 4. 17부터 시행

-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기타 당연퇴직 사유 (경찰공무원법 제24조)

- 사망, 임기만료, 연령정년도달, 계급정년 도달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시 당연퇴직

퇴직발령시 유의사항

당연퇴직일

- 민사·형사 사건은 판결 확정일(소취하시 취하일), 징계처분은 처분서 도달일
-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퇴직발령

정년퇴직일

- 정년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 6월 30일자 퇴직
- 정년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 12월 31일자 퇴직

  ※ 정년도래일은 해당 공무원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공무원 임용 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당연무효로서 당초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당연무효의 통지·확인 성격)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조치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발령조치

  ※ 근무기간 중 기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아니함(보수규정 제25조)

첨부서류

-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시, 법원의 판결문(사본) 등 증빙서류
-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인사발령예문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00월 00일자로 당연퇴직

03 의원 면직

-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의원면직 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서 첨부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4

- 면직절차
  - 소속부서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서 제출
  - 비위와 관련여부 조사를 위해 자체 감찰부서, 감사원, 대검찰청 등을 통해 비위여부 확인. 단, 비위사실이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 면직확인서(확인자 : 청문감사관), 보안서약서 작성
  - 확인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면직발령하고, 비위사실 발견시 면직발령 보류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의원면직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 목적 :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
-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
- 의원면직의 제한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됨.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이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 결정

첨부서류

- 사직원
- 퇴직자 보안서약서

인사발령 예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0. 00.자

03 직권 면직

제도취지

-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 경찰공무원법 제22조(직권면직)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면직요건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 휴직기간 만료, 휴직사유가 소멸 후에도 복귀불응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면직
- 직위해제되어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직절차(원칙)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 직권면직(임용권자)

-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직무수행능력 부족·성실성 결여(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2호)
  - 직무수행시 위험을 유발하는 성격·도덕적 결함(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 대기명령 받은 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5호)

직제·정원 개폐 및 예산감소 등으로 인한 과원 시 직권면직

직권면직 사유발생 →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의견청취) → 직권면직 (임용권자)

- 직권면직기준 설정
  -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직권면직기준 및 면직대상자 결정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면직 기준 및 면직대상자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위 원) 면직대상자의 상위계급 공무원으로서 5~7명 이내

    ※ 상위계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4명 이내 가능
- 최종적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처분

첨부서류

- 징계위원회 동의서
- 직권면직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할 서류

인사발령 예문

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04
징계 면직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
- 경찰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제27조(징계의 절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면직대상

-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

면직절차

-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처분 징계의결서를 통지 받음
-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 처분을 제청

  ※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함
- 중징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서 사본에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정계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함

첨부서류

- 징계위원회동의서
- 직권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징계대상자 통보서류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본

인사발령 예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해임)에 처함

05 시보 임용경찰관 면직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정규임용심사)

▶ 면직대상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 근무평정요소 중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 면직절차

-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부적격 판단시 의결서 통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 의결서를 근거로 면직발령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

관련 Q & A

면직시기(판례)

-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함(대판 '85. 12. 24, 85누531)

▶ 인사발령 예문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06 관련 서식

▶ (서식 9-3) 퇴직자 보안서약서

▶ (서식 9-4) 징계등 사유 설명서

명예퇴직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임용규칙 제11장 명예퇴직제도

02 적용 범위

- 목적
  -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사회진출기획 부여 및 경제적 보상
  - 공직사회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활성화
- 대상
  - 치안정감 이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 대상이 아님
- 요건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인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

  – 공무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계산
  –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 (예산상 제약) 각 기관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부족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과 장기 근속자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명예 전역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자라 하더라도 명예퇴직일 전에 상기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은 취소됨

03 신청시기 및 절차

① 시행계획하달	② 신청	③ 접수	④ 자체심사(결격여부 등)
본청 인사	신청자(자필작성)	소속부서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⑤ 자체심사 결과취합	⑥ 심사·결정	⑦ 심사결과 통보	⑧ 퇴직/수당 지급
기능별 소요인력 파악	해양경찰청장	본청 인사 → 소속기관	소속기관

정기 명예퇴직(연 6회, 2개월 단위로 실시)

- 명예퇴직예정일 : 매 짝수월 말일
- 신청 기간 : 매 홀수월 1~15일

수시 명예퇴직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희망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수시로 신청 가능
  -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특수경력직공무원(3년 이내) 또는 임기제공무원(즉시)에 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유예된 자가 퇴직하는 경우

-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9-5)와 "명예퇴직원"(서식 9-6)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04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나, 퇴직·사망 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 잔여기간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추천 및 결정의 우선순위는
  ① 상위계급 ② 장기근속 ③ 해당 계급 장기재직 ④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순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 각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의 결격 여부와 서류 등을 확인 후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

본청에 송부할 구비서류
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2. 명예퇴직원(자필작성)
3. 심사위원회의결서

  - 해양경찰청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를 심사·결정
  -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05
수당 지급

지급액 산정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 잔여월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부터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퇴직일을 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 당시 공무원보수 규정상 해당 봉급표의 월봉급액으로 하고, 연봉제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퇴직 당시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금액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 연봉제 적용대상 총경 이상(4급 이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
    - 연봉월액의 78%의 68.54%(성과연봉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 경정(5급 상당) 공무원 월봉급액 :
    - 연봉월액의 84%의 67.5%(성과연봉 제외)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하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해등급	가산지급액
1 ~ 4급	월봉급액의 4배
5 ~ 8급	월봉급액의 3배
9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
-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산정

▶ 유예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용된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시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지급기관 및 수령권자

▶ 지급기관

- 명예퇴직수당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음

▶ 수령권자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대상자
제1호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1호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호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2호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임용된 경우
제3호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산정기준
제1호·제1호의2 ·제1호의3	- 명예퇴직수당 전액
제2호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제3호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정산금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 대상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경우

  ※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준 :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함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의 확인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

※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

-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함)를 발부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

환수금의 이자계산
이자 계산 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이자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07 조기 퇴직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2항 및 제5항
-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임용규칙 제92조

▶ 적용대상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임기제 제외)

※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 재직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

▸ 요건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퇴직자

▸ 제외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해당자

▸ 지급액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정년 혹은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업무처리절차

① 사유 발생	② 수당지급 계획수립 (지급대상 및 인원 등)	③ 수당지급 신청접수	④ 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⑤ 조기퇴직수당 지급
해양경찰청장	본청 인사	소속기관장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08 관련 서식

▸ (서식 9-5)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서식 9-6) 명예퇴직원

▸ (서식 9-7)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서식 9-8)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고충처리

01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 경찰공무원법 제25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인사 고충상담 및 처리지침('18. 11. 16.)

02 고충처리제도

의의

-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비교

① 심사대상에 있어서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주요 대상인 반면, 고충은 개인에 대한 신분보다는 근무조건·처우·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신상문제를 그 대상으로 함

②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 소청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고충은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

③ 심사결과의 효력에 있어서 당해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나,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 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

사유

-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작업도구·시설안전·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관한 차별대우
  - 기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과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됨

03 고충 상담

신청 및 처리 절차

- 「해양경찰청 인사 고충상담 및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충상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가능
  ❶ 소속부서, 계급, 성명, 생년월일
  ❷ 신청취지 및 이유, 필요조치
  ※ 익명처리 희망시 소속부서, 계급, 성명, 생년월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 요구 가능

담당부서	고충상담 내용	신청방법
고충상담 전담부서	제도질의, 승진, 전보 등	전자메일로 수신인 "인사고충"지정 발송

- 고충상담을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실시
- 인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아닌 고충상담은 관련부서에서 처리
  - (운영지원과) 성희롱·복지·복무
    ※ 우리청 → 업무포털 → 소통마당 성희롱상담 배너 구축 운영 중
  - (감사담당관실) 갑질·따돌림
    ※ 해양경찰청 청렴고충신문고 운영 중(PC 및 앱)

고충 상담원 지정 및 근무자세

- 상담원은 고충상담 사안별, 고충상담 전담부서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
- 상담원의 근무자세
  -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 업무에 임하고
  -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 상담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
  -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
- 상담 중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감사(감찰) 부서로 즉시 이관 조치
- 상담원은 고충상담 처리대장(서식 9-10)을 작성 보관

04 고충 심사

청구 대상 및 시기

- (대 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및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관할
- (시 기) 정기 고충심사는 매년 정기인사 전에 실시하고, 수시 고충심사는 휴직·병가·연가·유연근무 등을 통한 고충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청구 가능

청구 사유

-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

  * 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대에 한정
- 치매, 거동장애 등 간호가 필요한 노부모 봉양
- 한부모(배우자 이혼·사별), 특수학교 재학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
- 해양경찰청 부부공무원의 비선호* 지역에서의 근무 희망

  * 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대에 한정

청구 자료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구 분		고충내용	증빙자료
질병	본인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중증질환	- 국(공)립 병원장 명의 진단서 및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 신체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노부모 봉양		- 치매, 거동장애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봉양 증빙서류
자녀 양육		- 지체장애 특수학교 등 전학 불가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양육 곤란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부부공무원		- 비선호지 근무 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심사 관할

- 해양경찰청 고충심사위원회
  - 본청·교육원·중특단·정비창, 타 지방청 간 전보에 관한 고충
- 지방해양경찰청 고충심사위원회
  -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 간 전보에 관한 고충
- 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 소속 경찰서 부서 간 전보에 관한 고충

위원회 구성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 이상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민간위원 자격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위원장은 인사, 감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
-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 1/3 이상 포함

회피 및 기피

➤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 할 수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고충심사 절차

① 심사 청구	② 사실조사	③ 심사 결정	④ 결과 처리
신청자(자필작성)	소속기관장	소속부서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심사 청구

-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충심사 청구서(서식 9-11)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실 조사

-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청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허위·과장) 및 가·부결시 예상되는 주변 여론 등 감안,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고충청구 조사서(서식 9-12)를 작성하여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

※ 청구인 또는 관계인 대상 진술 청취 및 문답하는 경우, 청취서·문답서 작성 제출

심사 결정

- 고충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고충심사를 결정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음

  ※ 심사일 5일 전까지 고충심사위원회 일시 및 장소 통지
- 당사자가 심사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
- 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
- 고충심사 결정의 유효기간은 정기전보 기준 1년으로 한정

심사 결정

- 위원회는 고충심사 결정에 대하여 고충심사 결정서(서식 9-13)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날인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
-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고충심사 결과 통지서(서식 9-14)를 통보하고,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에 재심 청구 가능

관련 Q & A

고충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가능 여부?

-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행정상 쟁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87. 12. 8. 87누658)

회피 및 기피

- 질병은 4대 중증질환 해당여부 또는 기타 질병의 경우 병의 경중, 진료기록, 향후 치료기간, 전보에 따른 치료 및 간호의 애로사항 등 종합적으로 판단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 노부모 봉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해당여부, 동거여부 및 지역 내 친·인척 거주여부 등 전보 및 잔류 불가피성을 판단
- 자녀양육은 고충이 있는 본인에게 양육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부부공무원은 교류인사 대기 인원 등 희망관서 선호도 고려 판단
- 휴직(질병·육아·가사),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고충 해소 가능 여부
- 고충청구 조사내용, 총 재직기간, 징계에 따른 문책발령 여부 등 감안

준용규정

- 해양경찰청 인사 고충상담 및 처리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소청절차규정」을 준용

04 관련 서식

- (서식 9-9) 고충상담 신청서
- (서식 9-10) 고충상담 처리대장
- (서식 9-11) 고충심사 청구서
- (서식 9-12) 고충심사 조사서
- (서식 9-13) 고충심사 결정서
- (서식 9-14) 고충심사 결정 통지서

서식 9-1

인사발령통지서

계급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서식 9-2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 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 유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9-3

퇴직자 보안 서약서

퇴직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 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약집행관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식 9-4

징계 등 처분 사유설명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 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 유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9-5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 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 직급 · 계급 · 직무군(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소속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서명 또는 인)	연금담당관 (서명 또는 인)	감사담당관 (서명 또는 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 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 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급
신청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서식 9-6

명예퇴직원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의 68.54%[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한다.

서식 9-8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적용대상「국가공무원법」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3. 법 제74조의2제3항 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74조의2제3항제2호 해당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사람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의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times \frac{\text{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서식 9-9

고충상담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부 서	계 급	생년월일	성 명
고충상담 신청이유	- 고충심사청구는 고충심사 청구서[서식 9-11] 작성 별도 신청 - 고충상담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 익명 희망시 신청이유를 상세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리 불가				
필요조치	- 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사 조치사항 기재				
청구방법	● 청구서 작성 후 업무포털 → 전자메일 → 수신인에 인사고충 지정 발송 ● 익명 희망시 업무포털 → 알림마당 → 인사고충 배너 이용(시스템 구축 후)				

서식 9-10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연번	인적사항 (익명시 미기재)				신청일자	신청이유 (요약정리)	조치일자	조치사항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서식 9-11

고충심사 청구서

<table>
<tr><td rowspan="6">인적사항</td><td>소 속</td><td>부 서</td><td>계 급</td><td>직 별</td><td colspan="2">성 명</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최초임용</td><td>현계급임용</td><td>현지역 전입</td><td colspan="2">고충청구 이력</td></tr>
<tr><td rowspan="2">00.00.00</td><td rowspan="2">00.00.00</td><td rowspan="2">00.00.00</td><td rowspan="2">00.00.00</td><td>00년</td><td>부결</td></tr>
<tr><td>00년</td><td>부결</td></tr>
<tr><td>(00세)</td><td>(00년0개월)</td><td>(00년0개월)</td><td>(00년0개월)</td><td>00년</td><td>가결</td></tr>
<tr><td></td><td></td><td></td><td></td><td>00년</td><td>가결</td></tr>
<tr><td rowspan="6">가족사항</td><td>관 계</td><td>성 명</td><td>연 령</td><td>거주지</td><td colspan="2">동거여부</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고충요지</td><td colspan="6">- 질병 고충은 그간 치료를 위한 기간 및 횟수를 명확히 기재</td></tr>
<tr><td rowspan="2">희 망</td><td>원소속</td><td>전출·잔류 여부</td><td colspan="2">전출 희망관서</td><td colspan="2">비 고</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비 고</td><td colspan="6"></td></tr>
</table>

서식 9-12

고충청구 조사서

대 상 자	고충조사내용	비 고
00서 00과 경위 홍길동	**고충요지의 사실여부 확인** ● 고충요지 ● 사실여부 확인 사항 ● ● ● ● **조사자 의견** ● 허위·과장 여부 ● 고충 가·부결시 예상되는 주변 여론 등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식 9-13

고충심사 결정서

일 시	2000.0.0(수) 00:00 ~ 00:00	장 소	
의 안	'00년도 정기 고충청구사항에 대한 심사		
의결내용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사대상 : 0명 ● 심의결과 : 가결 ____명, 부결 ____명(명단 별첨) ● 심사기준		

참석대상	6 명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서 명
참 석 자	0 명			위원장			
불 참 자	0 명			위 원			
불참내역				"			
				"			
				"			
				간 사			

서식 9-14

고충심사 결과 통지서

소 속	계 급	성 명

주 문	상기인의 고충처리를 가결 / 부결 한다.
이 유	인사 고충처리 지침 『고충심사기준』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20××. ××. ××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 청장의인

해양경찰청 00과
경사 홍 길 동 귀하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